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vention System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황지태 · 이천현 · 임정호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핵심 화두에는 '고위권력층의 부패 문제'와 함께 '민간부패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부패척결을 위한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가 10여 년 간 제자리걸음에 머물거나 최근 들어 후퇴하지까지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고위 권력층의 부패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던 권력형 비리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오랜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등 반부패에 대한 관심의 핵심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해 '민간부패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고 그만큼 그에 관한 연구결과도 많지는 않은 편이다.

민간부패는 갈수록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공직부패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 각종 통계에서도 민간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징표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민간부패는 공공지출의 방비를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표의 표출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에 기존 공직부패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영역을 포함한 종합적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민간부패에 관한 연구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보고, 그 일환으로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의 문제를 다루었고,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추세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연구이기는 하나, 본 연구가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로드맵 5대 분야 중 민간부야 반부패 노력 확대의 정책화 자료로 활용되는 등, 향후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들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황 지 태

목 차

| | |
|---|-----------|
| 국문요약 | 1 |
| 제1장 서 론 · 황지태 | 3 |
| 제1절 연구의 목적 | 5 |
| 제2절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 지표 | 6 |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9 |
| | |
| 제2장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 문제 · 황지태 .. | 11 |
| 제1절 한국의 민간부패 정의와 분류 | 13 |
| 1. 민간부패의 정의 및 집계·처리 | 13 |
| 2. 우리나라 민간부패 규제의 단적인 사례 | 16 |
| 3.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법률체계 | 21 |
| 제2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의 문제 | 22 |
| 1. 배임수증재죄 통계 | 22 |
|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통계 | 22 |
| 나. 경찰청 『범죄통계』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통계 | 24 |
| 다.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배임수증재 통계 | 26 |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민간부패 통계 | 28 |
|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경찰청 『범죄통계』의 관련 통계 | 29 |
| 나.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관련 통계 | 31 |
| 3. 기타 여러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통계 | 37 |
| 제3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집계·측정 문제 해결방안 모색 | 39 |
| 1.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 요약 | 39 |
| 2.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39 |

가. 장기적 해결방안 40
나. 중·단기적 해결방안 41

Ⅲ 제3장 |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 추세 · 임정호 43

제1절 UN, European Council, OECD 등 국제협약의 변화추세 45

1. UN 반부패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45

가. 의의 45
나. 가입 당사자 46
다. 구성 47
라. 내용 50
마. 소결: 총칙적 규정 및 절차적 규정의 집대성 58

2.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59
가. 의의 59
나. 가입 당사자 59
다. 개정 연혁 62
라. 구성 및 내용 63
마. 소결 70

3. OECD 협약: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71

가. 의의 71
나. 가입 당사자 71
다. 구성 및 내용 73
라. 소결: 한정된 적용대상 중심의 규정체계 76
마. 협약의 이행 관련 통계 77

4. 검토: 3개 주요 국제협약의 규정사항 비교 79

제2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영국 뇌물법 검토 82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 | |
|--|-----|
| (FCPA: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 82 |
| 가. 의의 | 82 |
| 나. 구성 및 내용 | 83 |
| 다. 소결: 한정된 대상과 광범위한 적용영역의 딜레마 | 86 |
| 2. 영국 뇌물법(The Bribery Act 2010) | 87 |
| 가. 의의 | 87 |
| 나. 내용 및 구성 | 87 |
| 다. 소결: 유기적 체계의 구비와 광범위한 장소적 적용범위 | 99 |
| 제3절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의 최근 경향: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있어서 제3자(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최근 개정) | 100 |
| 1. 의의 | 100 |
| 2. 국제협약으로부터의 시사점 | 100 |
| 3.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 101 |
| 4. 결어 | 101 |

| 제4장 |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 이천현 ... 103

| | |
|-----------------------------|-----|
| 제1절 민간부패 처벌규정 | 105 |
| 제2절 민간부패 처벌규정과 정비방안 | 106 |
| 1. 형법과 형사특별법 등 | 106 |
| 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 | 106 |
| 나.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한 가중 처벌 | 108 |
| 2. 상법 | 111 |
| 가. 내용 | 111 |
| 나. 한계와 개정방안 | 112 |
| 3. 행정법령상의 처벌규정 | 112 |
| 가.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한 민간부패 | 113 |
| 나. 의료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 120 |
| 다. 민간영역에서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 125 |
| 라. 사법분야 등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 131 |

- 마. 건설, 제조업 등 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34
- 바. 스포츠·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37
- 사. 금융·보험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39
- 아. 담합행위와 처벌 143
- 자. 교통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44
- 4. 소결 147
- 제3절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방안 148**
 - 1. 민간부패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8
 - 가. 민간부패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148
 - 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 150
 - 2.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방안 151
 - 가. 공익신고 대상 확대 151
 - 나. 공익 신고기관 확대 155
 - 다. 인센티브 강화 159
 - 라. 공익신고 처리방식 규율방식 개선 163
 - 마.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제재 보완 164
 - 바.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제재 보완 166
 - 3. 소결 167

| 제5장 | 요약 및 결론 · 황지태·이천현·임정호 169

-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171
- 제2절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2
 - 1.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172
 - 2.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외국공무원 관련 입법 173
 - 3. 민간부패 처벌규정 정비방안 및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 방안 174

참고문헌 177

Abstract 184

표 차례

| | |
|---|----|
| 〈표 1-1〉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나타난 과거 및 현재의 배임수증재죄와 증수뢰죄 접수인원 비교 | 7 |
| 〈표 1-2〉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전체 및 민간부문) | 8 |
| 〈표 2-1〉 UNODC의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상의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범죄 정의 | 14 |
| 〈표 2-2〉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협회의 민간부패 정의 방식) | 16 |
| 〈표 2-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부패 규율 법률체계 | 22 |
| 〈표 2-4〉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나타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통계 | 23 |
| 〈표 2-5〉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발생 통계 | 25 |
| 〈표 2-6〉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배임수증재죄 처리인원 통계 | 27 |
| 〈표 2-7〉 『범죄분석』과 『검찰연감』의 배임수증재죄 통계 비교 | 28 |
| 〈표 2-8〉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특경법 통계와 대검 통계원자료 중 특경법 내 민간부패 통계 | 30 |
| 〈표 2-9〉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난 특경법 내 민간부패 관련 통계 | 30 |
| 〈표 2-10〉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수재죄 처리인원 통계 | 32 |
| 〈표 2-11〉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증재죄 처리인원 통계 | 33 |
| 〈표 2-12〉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알선수재죄 처리인원 통계 | 34 |
| 〈표 2-13〉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사금융알선죄 처리인원 통계 | 35 |
| 〈표 2-14〉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저축관련부당행위죄 처리인원 통계 | 36 |
| 〈표 2-15〉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통계 | 38 |
| 〈표 3-1〉 UN 반부패협약 규정의 민간부패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 체크 | 47 |
| 〈표 3-2〉 UN 반부패협약상 민간부패 관련 규정의 내용 | 50 |
| 〈표 3-3〉 유럽회의의 협약 관련 국가 현황 | 60 |
| 〈표 3-4〉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규정 중 민간부패 관련 규정 | 63 |
| 〈표 3-5〉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관련 OECD 가입국 및 비가입국 현황 | 72 |

| | |
|--|-----|
| 〈표 3-6〉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중 민간부패 관련 규정 | 73 |
| 〈표 3-7〉 3개 국제협약의 규정사항 비교 | 79 |
| 〈표 3-8〉 미국 FCPA 규정상 형사적 제재 관련 요소 | 84 |
| 〈표 4-1〉 형법 제357조의 개정(2016년) | 107 |
| 〈표 4-2〉 특정경제범죄법상의 민간부패 처벌내용 | 108 |
| 〈표 4-3〉 상법상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 111 |
| 〈표 4-4〉 국가전문자격과 관련 법령 | 113 |
| 〈표 4-5〉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상의 부패행위와 처벌규정 | 114 |
| 〈표 4-6〉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과 보수 관련 규정 | 117 |
| 〈표 4-7〉 국가전문자격 관련 부당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 120 |
| 〈표 4-8〉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련 처벌규정 | 122 |
| 〈표 4-9〉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비교 | 124 |
| 〈표 4-10〉 선거관련 금품수수 관련 처벌규정 | 125 |
| 〈표 4-11〉 선거관련 금품수수 관련 법정형 비교 | 129 |
| 〈표 4-12〉 선거관련 금품수수 관련 실행행위 등 비교 | 130 |
| 〈표 4-13〉 국민투표법 및 도시환경정비법 비교 | 130 |
| 〈표 4-14〉 사법분야 등에서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131 |
| 〈표 4-15〉 건설, 제조업 등에서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134 |
| 〈표 4-16〉 스포츠, 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137 |
| 〈표 4-17〉 스포츠, 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 법정형 | 139 |
| 〈표 4-18〉 금융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 140 |
| 〈표 4-19〉 보험업법상의 부패행위와 처벌규정 | 141 |
| 〈표 4-20〉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142 |
| 〈표 4-21〉 보험업법상의 금지규정과 처벌규정 | 142 |
| 〈표 4-22〉 담합행위와 처벌규정 | 143 |
| 〈표 4-23〉 교통관련 사업자 등의 부패행위와 처벌규정 | 144 |
| 〈표 4-24〉 교통관련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46 |
| 〈표 4-25〉 선박사고 관련 법령의 부패행위와 처벌 | 147 |
| 〈표 4-26〉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149 |
| 〈표 4-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과 주요내용 | 150 |
| 〈표 4-28〉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변화 | 152 |
| 〈표 4-29〉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 153 |

| | |
|--------------------------------------|-----|
| 〈표 4-30〉 포괄주의방식 개정법률안 비교 | 154 |
| 〈표 4-31〉 공익신고기관 | 156 |
| 〈표 4-32〉 일본의 공익신고기관 | 156 |
| 〈표 4-33〉 일본의 공익신고기관과 보호요건 | 157 |
| 〈표 4-34〉 공익신고기관 확대 개정법률안 비교 | 159 |
| 〈표 4-35〉 형의 필요적 감면제도 도입 | 160 |
| 〈표 4-36〉 행정처분의 감면 | 161 |
| 〈표 4-37〉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행정처분의 감면규정 | 162 |
| 〈표 4-38〉 공익신고기관과 처리절차 | 163 |
| 〈표 4-39〉 비밀누설과 제재 | 164 |
| 〈표 4-40〉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법정형 비교 | 165 |
| 〈표 4-41〉 비밀누설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 166 |
| 〈표 4-42〉 불이익조치와 제재 | 167 |

국문요약

1. 연구 개요

- 1) 민간부패는 갈수록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공직부패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는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 2) 본고는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의 문제를 다루었고,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추세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 1)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민간부패와 관련된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단일한 법률체제로 통합해 내는 것이나,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단기간에 이루어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 2) 대신, 형법상의 민간부패 조항, 형사 특별법상의 민간부패 조항들 뿐만 아니라 50여 가지가 넘는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들을 따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담당 책임부서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 가장 단기적으로는, 배임수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민간부패 등 가장 핵심적인 통계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외국 공무원 관련 입법

- 1)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자국의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법 논리상으로 민간부패에 속하게 된다. 최근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중인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 OECD 협약, 유럽회의 협약, UN 반부패협약, 영국의 실정법인 The Bribery Act 2010 제6조(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 제공) 제3항 등에서 외국 공무원 관련,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났다.
- 3) 우리 국회에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즉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의 뇌물을 제공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공무원에게의 증뢰와 관련하여서도, 제3자에게의 뇌물제공의 경우 역시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4. 민간부패 처벌규정 정비방안

- 1) 현행과 같은 민간부패 규율체계 하에서, 각 행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부패 처벌규정들의 최선의 현실적인 정비방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처벌되는 행위태양, 행위 객체, 징역·벌금의 병과규정, 몰수·추징규정, 양벌규정 등에 대한 통일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할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 2) 그리고 의료, 민간선거, 사법, 건설·제조, 체육, 금융, 교통 등 각 분야별로 각 관련 또는 유사한 법령 간의 정합성·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입법의 흠결이 있는 법령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아울러, 민간부패신고자 보호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책 강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조치 마련, 실질적인 보상금·구조금 지원방안 마련, 실용적인 통합신고 체계 구축 등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1 장



서 론

황 지 태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핵심 화두에는 '고위권력층의 부패 문제'와 함께 '민간부패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부패척결을 위한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가 10여 년 간 제자리걸음에 머물거나 최근 들어 후퇴하지까지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고위 권력층의 부패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던 권력형 비리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오랜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등 반부패에 대한 관심의 핵심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해 '민간부패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고 그만큼 그에 관한 연구결과도 많지는 않은 편이다.

민간부패는 갈수록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공직부패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 각종 통계에서도 민간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징표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민간부패는 공공지출의 방비를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표의 표출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에 기존 공직부패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영역을 포함한 종합적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민간부패에 관한 연구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보고, 그 일환으로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제2절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 지표

본문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민간부패를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종합하여 추정해 본다면, 민간부패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공직부패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거나 혹은 사실상 능가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이 존재한다.

지금보다 10여 년 전의 과거 선행연구들을 보거나 과거의 민간부패 통계치들을 공직부패 통계치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직부패 위반 건수가 민간부패 위반 건수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2005년도에 수행된 이천현·홍승희·황지태의 연구를 참조해 보면,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공직부패의 합(형법상의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와 특가법상의 뇌물, 특가법 알선수재)와 이들 공직부패 행위와 거의 유사한 행위에 해당되는 민간부패의 합(형법상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경법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을 비교하면, 당시 공직부패(처리인원 기준 10년간 28,192명, 기소 6,348명)와 민간부패(처리인원 기준 10년간 10,786명, 기소 21,979명)의 비율이 거의 3대1 수준으로 공직부패의 비중이 민간부패의 비중보다 매우 높았으며, 기소인원은 공직부패가 민간부패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기도 하였다(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 113).

2005년도의 연구에서와 같이 복잡한 방식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이, 대표적 공직부패 규제 법률인 증수뢰죄(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합)와 대표적 민간부패라고 할 수 있는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합) 통계를 10년 전의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 각각 비교¹⁾해 봐도 10년 사이에 명백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 엄밀히 말하면, 증수뢰죄를 배임수증재죄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당한 비교는 아니다. 증수뢰죄에 해당되는 죄를 금융인이 저지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수재와 증재도 포함되고, 그 외 제4장에서 언급할 여러 행정법규상의 증수뢰성 범죄들도 비슷한 종류의 민간부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증수뢰죄의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뇌물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긴 하다. 그래도 여전히 배임수증재와 증수뢰죄만을 비교할 경우, 민간부패가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감안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주 간단하게만 비교해 본 것이다.

다음 <표 1-1>의 윗줄부터 보자면, 『검찰연감』에 나타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접수인원의 합은 대표적 민간부패인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4,938명²⁾이었던 비해 대표적 공직부패인 증수뢰죄는 6,217명³⁾으로 10년 전에는 확실히 적발된 공직부패의 양이 적발된 민간부패의 양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 시점(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접수인원의 합)에서는 배임수증재죄 접수인원이 9,610명⁴⁾으로 증수뢰죄 접수인원 9,422명⁵⁾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10년 사이에 전체 부패사건에서 민간부패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해주는 증거자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1>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나타난 과거 및 현재의 배임수증재죄와 증수뢰죄 접수인원 비교

(단위: 명)

| 연도 \ 죄명 | 배임수증재(대표적 민간부패) | 증수뢰(대표적 공직부패) |
|-----------|-----------------|---------------|
| 2002-2006 | 4,938 | 6,217 |
| 2012-2016 | 9,610 | 9,422 |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03-2007, 2013-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자료 재구성.

현재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종류의 지표로 다음의 표를 인용해 볼 수도 있다.

다음에 제시한 <표 1-2>는 홍콩의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2) 2002년 721명, 2003년 846명, 2004년 914명, 2005년 1,254명, 2006년 1,203명으로 해당 5년의 합은 4,938명이었다(대검찰청, 『검찰연감』 2003-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3) 2002년 수뢰 414명, 증뢰 700명, 2003년 수뢰 397명, 증뢰 696명, 2004년 수뢰 417명, 증뢰 970명, 2005년 수뢰 538명, 증뢰 857명, 2006년 수뢰 540명, 증뢰 688명을 모두 합치면 6,217명이 된다(대검찰청, 『검찰연감』 2003-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4) 2012년 1,397명, 2013년 1,754명, 2014년 2,428명, 2015년 1,950명, 2016년 1,631명으로 해당 5년의 합은 9,610명이었다(대검찰청, 『검찰연감』 2013-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5) 2012년 1,679명, 2013년 1,546명, 2014년 1,989명, 2015년 2,151명, 2016년 2,057명으로 해당 5년의 합은 9,422명이었다(대검찰청, 『검찰연감』 2013-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부패지수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이천현, 2015: 277). 이 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자료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구성하는 원천자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황지태·강태경·이정주, 2017: 124-125; 강신욱, 2000: 48). PERC는 매년 아시아 16-17개국에 거주하는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정치 부문, 민간부문 등 16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이천현, 2015: 276), <표 1-2>는 그에 관한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자료인 것이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16개 혹은 17개 국 중에서 거의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부패가 특히 심각하다는 인상을 주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표 1-2>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전체 및 민간부문)

| 구분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종합 | 점수 | 4.88 | 5.90 | 6.90 | 9.98 | 7.05 |
| | 순위/전체대상국 | 6/16 | 9/16 | 11/16 | 10/17 | 9/17 |
| 민간부문 | 점수 | 7.55 | 8.95 | 7.57 | 8.76 | 8.56 |
| | 순위/전체대상국 | 14/16 | 16/16 | 14/16 | 16/17 | 17/17 |

- ※ 1. 0-10점: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 2. 자료: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http://www.asiarisk.com>)
- 3. 재인용: 이천현, 2015,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277.

물론 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다. PERC에서 민간 부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명한 원천자료들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지표가 과연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료인지를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포함해 앞서 제시한 자료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적어도 현재 시기가 우리나라의 민간부패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3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모두 제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현재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심각성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지적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국의 민간부패를 정의하는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논한 후에,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그런 다음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장기적 해결방안과 중·단기적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에 먼저 UN, 유럽회의, OECD 등 국제협약에서의 민간부패 관련 변화추세를 살펴본 후에,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의 뇌물법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며, 각 내용들의 의의, 구성,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의 최근 경향에 대해 논하고, 그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와 형사특별법(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그리고 각종 행정법령상의 처벌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시점의 쟁점 중의 하나로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제5장은 요약 및 결론 부분으로 앞 장들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약적으로 방안책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제 2 장

○ —————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 문제

황 지 태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 문제

제1절 한국의 민간부패 정의와 분류

1. 민간부패의 정의 및 집계·처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 민간부패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어떤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처리되고 있고, 어떠한 지표에 의해 그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그 자체가 조건적인 질문들이다. 가령, 최근 영국의 경우나 유엔 범죄분류의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위와 같은 질문들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응답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4월에 제정되어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에서는 어떤 종류의 부패이든, 즉 그것이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이든, 민간인들 사이의 뇌물수수 행위이든, 국내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행위이든 해외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행위이든 동일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이천현, 2015: 298). 즉 영국에서의 민간부패는 뇌물법에 의해 규정되고 처리되며 뇌물법 위반 통계 지표로 파악이 되는 부패의 한 세부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낸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2016)상의 부패 및 사기범죄 부문 중 뇌물공여범죄(active bribery)와 뇌물수수범죄(passive bribery)에는 공무원(public official), 외국 공무원(foreign public official)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official of a public international

14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organization), 그리고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의 반부패 협약에 규정된 바와 동일하다⁶⁾. 이러한 분류 방식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표 2-1〉 UNODC의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상의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범죄 정의

| 분류번호 범죄명 | 범죄 행위 정의 | 비고 |
|--------------------------------------|--|---|
| 070311 Active bribery 뇌물공여 | Promising, offering or giving, to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 private sector entity, directly or indirectly, an undue advantage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 종사자가 그들의 직무 중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안, 제공하는 행위 | Inclusions: Active bribery of a public official(공무원); activ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외국공무원) and of an official of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공적 국제기구 직원); active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민간 부문) |
| 070312 Passive bribery 뇌물수수 | Solicitation or acceptance by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 private sector entity,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 종사자가 그들의 직무 중에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하여,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 Inclusions: Passive bribery of a public official(공무원); passive bribery of a foreign(외국공무원) public official and of an official of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ssive(공적 국제기구 직원) bribery of an official in the private sector(민간부문) |

※ 출처: UNODC, 2016,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ICCS), Version 1.0』 p71. 전체 도표 중 일부 발췌 및 번역문 추가

영국이나 유엔의 경우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경우 이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공직부패와 민간부패를 아우르는 단일 법률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각각을 포괄하는 각각의 통일된 법률체계도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간부패의 경우엔, 형법과 특별법,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법

6)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ICCS/ICCS_English_2016_web.pdf (71쪽) 최종확인일자 : 2018년 11월 26일. 혹은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ICCS, Version 1.0)』 : 71.
 7) 유엔 반부패 협약 제3장 제15조에서는 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 제16조에는 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제21조 민간부문의 뇌물수수가 포함되어 있다(유엔, 2003, 『반부패 협약(한글본)』 : 24-28).

규상에 그 처벌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 부패범죄의 전체 윤곽을 보려면 뇌물법 위반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이지만, 한국의 부패범죄를 영국의 부패범죄와 비교하려면 일차적으로 공직부패와 민간부패를 합산해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개념이 현재까지는 공직부패 위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민간부패에 비해서는 그 범위를 산정하고 그 범위에 따른 통계측정치를 얻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한다⁸⁾. 문제는 민간부패이다. 한국의 민간부패에 관한 규율 법률들은 앞서 말했듯이, 형법상의 몇 가지 조항들(배임죄의 일부 유형들)에 덧붙여 다양한 법률조항들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눈에 그 현황을 통계치로 파악해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민간부패범죄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민간부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민간부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야만 민간부패 관련 법률들과 관련 법조항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민간부패에 대한 통계치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부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합의된 적이 없기는 하나, 적어도 앞에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본적으로 민간부패는 공직부패로 정의된 행위들과 내용상으로는 같으면서도 동시에 공직부패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가장 간단한 구별 기준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하는 것과 민간인이 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공직부패에 대한 공식통계 작성과 관련해서는’ 민간인의 행위도 적지 않은 경우에 공직부패에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뇌물거래에 있어 형법상의 공직부패로 정의되는 조건을 보면, 뇌물을 수수하는 주체가 공직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고, 뇌물을 주는 사람은 공직자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뇌물공여자가 민간인이고 뇌물수수자가 공무원(공무수행 민간인 포함)인 경우 및 뇌물공여자도 공무원이고 뇌물수수자도 공무원인 경우는 모두 공직부패에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전자(민간인공여자-공무원수

8)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본고에서는 민간부패 문제에 집중하여 공직부패 통계 집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고자 한다.

수자 조합)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공직부패라 할 수 있겠다.

학자에 따라 정의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간부패의 개념을 비교적 좁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학자들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철저하게 민간부패에 범주에서 제외한다. 가령, 이천현의 연구논문에서는 민간부패를 공직자가 아예 관련되지 않은, 즉 순수하게 “민간부문(private sector) 내의 개별 주체 간에 발생하는 부패행위” 혹은 더 구체적으로 “사인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인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표 2-2〉의 IV 영역)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천현, 2015: 270).

〈표 2-2〉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협의를 민간부패 정의 방식)

| 뇌물제공 \ 뇌물수수 | Public Sector | Private Sector |
|----------------|---------------|----------------|
| Public Sector | I (공직부패) | II (공직부패) |
| Private Sector | III (공직부패) | IV (민간부패) |

※ 출처: 이천현, 2015,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p270.

이러한 좁은 범위의 민간부패 정의 방식을 꼭 고집해야 할 절대적 철칙은 없으나, 이러한 방식의 정의에는 공직부패에 대한 현행 공식통계 집계치와 겹치지 않는 민간부패 통계치를 상대적으로 쉽게 따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즉 민간인이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공식통계 집계상 공직부패에 포함되고 있는 행위는 철저하게 민간부패 범주에서 제외하는 정의 방식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그래야 공직부패 통계와 겹치지 않는 민간부패만으로 구성된 통계치 작성이 원론적으로 가능해져서 민간부패만의 실태를 양적으로 가늠해 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민간부패 규제의 단적인 사례

그런데, 위와 같은 민간부패 개념을 정의하여 민간부패 관련 범위만 행위 발생의 기본적 현황을 공식적인 범죄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에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서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왜 그런지를 구체적인 감이 오도록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끌어 나가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규율방식이 영국에 비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다음은 2018년 10월 14일 이후 한 동안 국내 주요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어떤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들 중 하나이다.

“(서울=연합뉴스) 은퇴 선수 A모씨(37)가 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했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A모씨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K리그2(2부리그) 아산 무궁화 소속 B모 선수를 만나 다음날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에서 전반 20분 이내에 퇴장을 당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라며 ‘B모 선수는 A모씨의 제의를 거부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구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B모 선수의 발 빠른 조치로 경찰은 A모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을 덮쳐 긴급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사실을 공개하려 했지만, 공범 검거를 위한 경찰의 비공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년 10월 14일자⁹⁾)

극히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은 앞서 언급한 민간부패 정의, 즉 “사인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인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천현, 2015: 270)에 포함되며, 민간부패의 유형 중 체육관련 비리에 해당된다¹⁰⁾. 이 경우 A모씨는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A모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①항, 즉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9) 연합뉴스, 2018년 10월 14일자 기사, “전 축구국가대표 A모씨, 승부조작 제안했다가 긴급체포”,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4051200007?input=1195m>; 최종확인검색일 2018.11.26. 원래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 모두에서 영문이니셜 A모씨, B모씨 등으로 바꾸었다.

10) 참고로, 선행연구인 이천현·홍승희·황지태(2005)의 연구에서는 민간부패의 기본유형을 ‘금융관련 비리’, ‘기업/상거래관련비리’, ‘의료/계약관련비리’, ‘언론관련비리’, ‘체육관련비리’, ‘교육관련비리’, ‘노조관련비리’, ‘문화/예술관련비리’ 등으로 나눈 바 있다(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127-128).

‘뇌물 제공 의사 표시자’가 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에 규정된 처벌, 즉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받게 되었다¹¹⁾.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그리고 만약 위 기사에서 언급된 B모 선수가 A모씨의 제의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5천만원을 받거나 5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일부러 퇴장을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을 경우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된 처벌, 즉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B모 선수는 ‘부당행위’ 대신 ‘신고’를 선택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7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¹²⁾.

11)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미만 벌금의 벌칙은 법정형 규정이고, 실제로 받은 1심 형량은 징역 10월이었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14일자 기사, “돈다발 보여주며 후배에 승부조작 제안 A모씨 징역 10월”,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3148600051?input=1179m>: 최종확인검색일 2018.11.27. 원래 기사의 제목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영문이니셜 A모씨로 바꾸었다.

12) 연합뉴스, 2018년 10월 17일자 기사, “승부조작 제안 뿌리친 프로축구 B모씨, 포상금 7천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7080800007?input=1179m> : 최종확인검색일 2018.12.05. 원래 기사의 제목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영문이니셜 B모씨로 바꾸었다. 참고로, 이 포상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규정(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B모 선수가 제안 받은 5천만원보다 큰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알린 것이라고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그런데, 위에 예시한 사건은 그보다 앞서 제시했던 <표 2-1> UNODC 국제표준범죄분류 체계(ICC)에서라면, 뇌물공여(active bribery)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 경우엔 뇌물수수의 주체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없이 뇌물공여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뇌물을 받는 주체가 공무원일 경우엔 형법상 수뢰죄(뇌물수수죄)나 증뢰죄(뇌물공여죄)가 되고(증뢰죄[형법 133조]와 수뢰죄[129조], 그리고 제삼자뇌물제공[130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131조], 알선수뢰[132조] 등), 그 주체가 민간인일 경우엔 뇌물죄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형법분류 범주상 배임죄(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가 된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규정된 형량과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에 규정된 형량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뇌물수수의 주체가 공무원일 때, 그 주체가 민간인인 경우보다 법정 형량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제시했던 A모씨 사건의 경우, 재물을 공여하고자 했던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¹³⁾,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가 스포츠선수들일 경우(학생선수는 제외),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사정이다. 그리하여 앞의 예시 사건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법정 형량 규정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체육진흥법의 해당 조항에서의 형량은 배임수증재죄의 법정 형량은 물론이고, 공무원범죄로서의 증수죄 법정 형량보다도 높다. 그리고 배임수증재죄에서는 뇌물 약속, 공여의 의사 표시 규정이 없는 데 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의 ①호와 제48조 1호에는 뇌물 약속 및 뇌물 제공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도 하다. A모씨는 실제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지만, B모씨가 부정한 청탁을 수락할 경우 5천만원을 공여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뇌물공여의 의사 표시행위도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에 규정된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내에서 민간부패를 규제하는 조항(제47조 혹은 제48조 등)에서의 예외, 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들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닌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된다. 과거 선형연구(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에서 제시했던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된 고등학교 야구부의 비리 사건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체육관련비리 배임수증 사건, 수원지검안산지청, 2005년도 사건): “A고교 야구부 감독인 L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 3인의 보호자 C씨, P씨, O씨로부터 이들 각각의 피보호인들이 전국 야구대회 등에서 주전으로 출전하게 하여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고 C씨로부터 50만원, P씨로부터 300만원, O씨로부터 200만원씩 총 55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함.”(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 307-308)

13) 프로축구팀인 아산 무궁화 팀이 경찰청 소속팀이라, 5천만원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던 B모씨를 공무원으로 간주할 여지도 있기는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프로축구선수는 민간인이다.

이처럼 체육관련비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교육관련비리이기도 한 이 같은 형태의 민간부패 사건들의 경우엔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닌 배임수재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3.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법률체계

한국에서 앞서 언급한 정의에 따른 민간부패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 절에 이어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집계 문제에 주로 국한하여 아주 간단히 언급하기로만 한다.

앞서 언급한 사건사례에 적용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민간부패 행위 유형 중 일부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민간부패를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민간부패 규율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된다.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이 민간부패에 대한 규율 내용이 일부의 내용으로 담긴 법률은, 제4장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경륜·경정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마사회법, 보험업법, 약사법 등 50여 가지가 넘는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들에 대한 위반 통계치가 모두 민간부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패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조항은 앞 소절에서도 언급했던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죄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알선수재(제7조), 사금융알선(제8조), 저축관련부당행위(제9조)가 포함될 수 있다. 민간부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이들 법률조항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 105-107).

〈표 2-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부패 규율 법률체계

| | |
|-----------|---|
| 배임수재 | 형법 제 357조 제 1항 배임수재 형법 제 359조 (형법 제357조 제1항)미수 |
| 배임증재 | 형법 제 357조 제2항 배임증재 형법 제 359조 (형법 제357조 제2항)미수 |
| 특경법(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 |
| 특경법(증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
| 특경법(알선수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
| 사금융알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8조 |
| 저축관련부당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

이러한 대표적인 법률조항들에다가 앞서 언급했던 50여개가 넘는 여러 종류의 법률들에서 민간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조항들만 뽑아내어 합치면 우리나라 민간부패 범죄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의 문제

1. 배임수증재죄 통계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통계

가장 대표적인 민간부패 관련 법규라 할 수 있으며, 공직부패범죄인 수뢰죄와 증뢰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형법상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위반에 대한 통계치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적인 범죄발생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발견할 수조차 없었다. 1964년부터 작성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는 1971년부터 공직부패범죄인 증뢰규정 위반 통계와 수뢰규정 위반 통계가 나타나고 있으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 관한 통계치는 201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집계되기 시작하였다¹⁴⁾. 2014년 이후의 『범죄분석』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의 협업으

14) 그 이전까지, 즉 1964년부터(증뢰죄와 수뢰죄는 1971년부터인 것과는 다름) 2013년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는 배임죄 통계만 수록되었고, 배임수재죄 통계와 배임증재죄 통계를 별도로 공표되지 않아왔다.

로 『범죄분석』의 공표형식을 수정한 이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발생 통계를 수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다.

다음 <표 2-4>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2014년에 들어서야 수록되기 시작한 배임수재죄 발생 및 검거 통계와 배임증재죄 발생 및 검거 통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뒤에 나올 경찰청 『범죄통계』와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 이 표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표를 보면, 먼저 배임수재죄는 2014년에 575건, 2015년에 606건, 2016년에 602건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대략 600건 내외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약 1.1건 내지 1.2건(발생비 참조)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임증재죄는 2014년에 249건, 2015년에 253건, 2016년에 222건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대략 220건-250건 정도가 발생(엄밀히 말하면, 해당 법조항 위반건수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로 따지면, 인구 10만명당 약 0.4건에서 0.5건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범죄의 검거율은 대략 85%에서 95% 사이이고 매년 두 범죄의 검거율은 대체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치가 최근 3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어떤 추세, 즉 증가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를 언급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아무튼 배임수증재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통계가 그동안 별도의 범주로 집계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민간부패에 대한 기본적인 과거의 발생추세를 언급하는 것에서부터 차질이 있는 것이다.

<표 2-4>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나타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통계

(단위: 건, %)

| 연도 | 죄명 | 배임수재 | | | | 배임증재 | | | |
|------|----|------|-------------------|------|--------|------|-------------------|------|--------|
| | | 발생 | | 검거 | | 발생 | | 검거 | |
| | | 발생건수 | 발생비 ¹⁾ | 검거건수 | 검거율(%) | 발생건수 | 발생비 ¹⁾ | 검거건수 | 검거율(%) |
| 2014 | | 575 | 1.13 | 487 | 84.70 | 249 | 0.49 | 215 | 86.35 |
| 2015 | | 606 | 1.19 | 565 | 93.23 | 253 | 0.50 | 239 | 94.47 |
| 2016 | | 602 | 1.17 | 562 | 93.36 | 222 | 0.43 | 204 | 91.89 |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1) 발생비: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

2013년 이전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사건 통계는 『범죄분석』이라는 책자(연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집계된 자료의 원천, 즉 원자료(raw data)에서는 재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료만 있으면, 1971년부터 지금까지의 배임수증재 사건 발생통계를 산출해 낼 수 있다. 다만, 그 원자료는 대검찰청의 내부자료로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범죄분석』에 의존해야 한다.

나. 경찰청 『범죄통계』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통계

한편, 경찰청에서 집계는 『범죄통계』에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인 2011년도부터 배임수재죄 통계와 배임증재죄 통계가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의 협업으로 『범죄통계』의 공표형식을 수정한 이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발생 통계를 수록하기 시작하였던 것의 결과이며, 그 협업이 대검찰청과의 협업보다 조금 앞섰기 때문에 그 수록 연도도 몇 년 조금 앞서게 된 것이다.

다음 <표 2-5>는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2011년-2016년 기간의 배임수재죄 발생 및 검거 통계와 배임증재죄 발생 및 검거 통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이 통계를 언뜻 보면, 통계 수록 기간이 3년 앞서기 때문에 앞의 『범죄분석』 자료의 보충 자료가 될 듯해 보이지만, 표를 잘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앞의 통계치와 겹치는 부분, 즉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통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통계(경찰청 『범죄통계』)에서 배임수재는 2014년에 195건, 2015년에 155건, 2016년에 181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표 2-4>에 나타난 결과, 즉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는 2014년에 575건, 2015년에 606건, 2016년에 60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배임증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2014년에 60건, 2015년에 33건, 2016년에 3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앞의 <표 2-4>에 나타난 결과, 즉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는 2014년에 249건, 2015년에 253건, 2016년에 22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달라도 너무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5〉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발생 통계

(단위: 건)

| 죄명 | 연도 | | | | |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배임수재 | 466 | 147 | 344 | 195 | 155 | 181 |
| 배임증재 | 48 | 37 | 195 | 60 | 33 | 36 |

※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11-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그렇다면, 두 가지 통계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일까? 그 이유는 두 통계사의 관련성, 그리고 두 통계가 집계되는 과정과 특성 등을 알고 나면 어느 정도 풀린다.

먼저 두 통계의 관련성부터 살펴보자. 경찰청 『범죄통계』와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계로, 경찰의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통계인 『범죄통계』에다가 검찰에서 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하여 처리한 사건통계를 추가한 것이 『범죄분석』이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분석』이 『범죄통계』보다 완결된 형태의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범죄 수준에서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은 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의 사건이 경찰청 『범죄통계』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5% 정도의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추가된다. 그 때문에, 강도범죄와 같이 경찰에서 주로 수사하는 사건들의 경우엔 『범죄통계』와 『범죄분석』 모두에서 비슷한 발생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은 범죄분류와 공표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범죄통계를 연구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범죄통계』를 참조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한 참조는 두 통계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범죄들에서는 수치상 아주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경찰 단계의 통계인 『범죄통계』에 95% 이상의 사건이 담겨있고, 대검찰청 『범죄분석』에는 5% 미만의 사건들만이 추가될 뿐인데, 그렇다면 어쩌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의 경우에는 〈표 2-4〉와 〈표 2-5〉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칠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배임수재나 배임증재죄(그리고 더 나아가 수뢰죄나 증뢰죄 등까지도)는, 강도죄와 절도죄 등과는 달리, 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통계인 『범죄통계』를 가지고 배임수증재죄 발생 추세를 가늠하는 것은 심각하게 왜곡된 판단을 초래하게 된다. 다만, 그것은 경찰 단계를 거쳐서 처리한 배임수증재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긴 할 것이다.

다.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배임수증재 통계

앞서 보았듯이, 2013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공식적인 범죄발생통계라 할 수 있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통계가 없었고, 경찰에서 발간하는 통계 역시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배임수증재죄에 대한 관련 통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범죄분석』을 집계하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또 다른 통계연보인 『검찰연감』에 관련 통계가 집계되어 왔던 것이다.

『검찰연감』은 민간부패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민간부패 통계들의 기본적인 출처이기도 했다. 이 통계가 전형적인 공식범죄발생통계인 『범죄분석』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범죄분석』이 기본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집계되는 통계인데 비해¹⁵⁾, 『검찰연감』은 검찰에서 처리된 ‘인원’을 중심으로 집계되는 통계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수를 집계하는 것과 인원수를 집계하는 것은 서로 비례와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집계되는 절대 수치에 있어서는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통계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을 들자면, 죄명별 사건처리에 있어 『검찰연감』의 죄명분류가 『범죄분석』보다 상세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범죄분석』에 배임수증재에 관한 통계가 없던 시절에도, 『검찰연감』에는 그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연감』에서 배임수증재에 대한 처리인원 통계는 『검찰연감』 통계가 시작된 연도인 1985년부터 상당기간 동안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로 나누어진 통계가 제시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두 범죄를 합친 통계치(배임수증재 통합 카테고리)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검찰연감』 통계에서는 배임수증재죄와 배임증재죄 처리 인원 각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15) 물론 인원 중심의 통계치들도 많다. 하지만, 범죄발생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집계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2-6>은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배임수증재죄 처리인원 통계이다. 이를 보면, 2007년에는 894명이 배임수증재죄로 처리되었는데, 2016년에는 1,354명이 처리되어 10년 동안 처리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처리 인원이 1,733명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배임수증재죄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 10년간 대략 40% 정도에서 50% 사이에 있었고, 2015년에만 유독 기소율(28.2%)이 낮게 나타나긴 하였다. 한편, 기소처리된 인원 중에서 구속기소된 인원의 비율은 그 최저가가 9.0%(2011년)였고, 최대는 20.8%(2013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대략 15% 내외의 수준이었다.

<표 2-6>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배임수증재죄 처리인원 통계

(단위: 명(%))

| 연도 | 접수 | 처리 | 기소여부 | | | 구속기소여부 | | |
|------|-------|------------------|---------------|-----------------|---------------|---------------|---------------|---------------|
| | | | 기소 | 불기소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약식 |
| 2007 | 989 | 894 (100.0) | 401 (44.9) | 422 (47.2) | 71 (7.9) | 64 (16.0) | 163 (40.6) | 174 (43.4) |
| 2008 | 1,049 | 949 (100.0) | 470 (49.5) | 363 (38.3) | 116 (12.2) | 69 (14.7) | 235 (50.0) | 166 (35.3) |
| 2009 | 1,494 | 1,309 (100.0) | 575 (43.9) | 530 (40.5) | 204 (15.6) | 88 (15.3) | 274 (47.7) | 213 (37.0) |
| 2010 | 1,589 | 1,296 (100.0) | 543 (41.9) | 643 (49.6) | 110 (8.5) | 86 (15.8) | 258 (47.5) | 199 (36.6) |
| 2011 | 1,683 | 1,494 (100.0) | 754 (50.5) | 602 (40.3) | 138 (9.2) | 68 (9.0) | 410 (54.4) | 276 (36.6) |
| 2012 | 1,397 | 1,080 (100.0) | 430 (39.8) | 482 (44.6) | 168 (15.6) | 68 (15.8) | 219 (50.9) | 143 (33.3) |
| 2013 | 1,754 | 1,566 (100.0) | 799 (51.0) | 598 (38.2) | 169 (10.8) | 166 (20.8) | 388 (48.6) | 245 (30.7) |
| 2014 | 2,428 | 1,733 (100.0) | 703 (40.6) | 878 (50.7) | 152 (8.8) | 118 (16.8) | 384 (54.6) | 201 (28.6) |
| 2015 | 1,950 | 1,733 (100.0) | 488 (28.2) | 1,151 (66.4) | 94 (5.4) | 68 (13.9) | 257 (52.7) | 163 (33.4) |
| 2016 | 1,631 | 1,354 (100.0) | 571 (42.2) | 586 (43.3) | 197 (14.5) | 83 (14.5) | 336 (58.8) | 152 (26.6) |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08-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이러한 『검찰연감』의 배임수증재죄 처리인원 통계를 앞서 살펴보았던 『범죄분석』의 배임수증재죄 사건 발생 통계(〈표 2-4〉 참조)와 비교해 보자.

〈표 2-7〉 『범죄분석』과 『검찰연감』의 배임수증재죄 통계 비교

| 연도 | 발생건수(범죄분석) | 처리인원(검찰연감) | 처리인원/발생건수 |
|------|------------|------------|-----------|
| 2014 | 824건 | 1,733명 | 2.1(명/건) |
| 2015 | 859건 | 1,733명 | 2.0(명/건) |
| 2016 | 824건 | 1,345명 | 1.6(명/건) |

먼저 『범죄분석』의 2014년 배임수재는 575건, 배임증재는 249건으로 그 합은 824건인데, 이는 『검찰연감』의 2014년 처리인원 1,733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건 당 2.1명 수준인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분석』의 2015년 배임수재는 606건, 배임증재는 253건으로 그 합은 859건인데, 이 역시도 『검찰연감』의 2015년 처리인원 1,733명의 절반 수준(사건 당 2.02명)이다. 끝으로 『범죄분석』의 2016년 배임수재는 602건, 배임증재는 222건으로 그 합은 824건인데, 이 경우에는 『검찰연감』 2016년 처리인원 1,354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즉 사건 당 1.6명이었다.

이를 통해 『검찰연감』에 나타난 배임수증재 관련 처리 인원 수치의 대략 절반 정도가 대략적인 배임수증재 사건 발생건수가 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긴 하다. 따라서 『검찰연감』 통계를 가지고 『범죄분석』에 미수록된 사건발생 통계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볼 수도 있다. 단, 사건 당 처리 인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민간부패 통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부패 관련 법규로 소개한 〈표 2-3〉의 내용 중에서 형법상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를 제외하면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가중처벌법의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에 관한 조항들이 남는다. 이번 소절에서는 그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경찰청 『범죄통계』의 관련 통계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발생통계연보인 『범죄분석』의 경우부터 말해보자면, 『범죄분석』에 해당 통계치들, 즉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가중처벌법 중 민간부패 관련 조항 위반사건들이 공표된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는 실정이다¹⁶⁾. 단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전체 위반 사건 통계가 『범죄분석』에 수록되었던 적은 있다. 하지만, 전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 민간부패와 관련된 조항들의 위반 건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에 정리한 <표 2-8>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2-8>의 윗줄은 『범죄분석』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약칭 특경법) 통계가 수록되었던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밑의 줄은 2005년도에 수행된 이천현 등의 연구(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15: 109-110)에서 대검찰청의 통계 원자료 재구성을 통해 산출한 특경법 내 민간부패 관련 통계치, 즉 특경법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 위반 통계치들의 합산 값을 정리한 것이다¹⁷⁾. 다시 말해, 윗줄은 특경법 위반 사건 전체 통계이고, 밑줄은 특경법 중에서도 민간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의 통계인 것이다. 윗줄과 아랫줄의 수치를 비교하면, 대강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특경법 내에서 민간부패 관련 사건이 발생한 비율도 해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경법 전체 통계를 가지고 관련 민간부패 통계치를 추정하기도 쉽지 않다. 요컨대, 대검찰청의 범죄발생통계 원자료로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공표된 통계연보인 『범죄분석』에서는 관련 통계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16)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경우엔 2014년 통계치부터 『범죄분석』에 공표되기 시작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내 민간부패 관련 통계치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17) 이는 대검찰청이 마음만 먹으면 원자료를 가지고 관련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와 관련된 계산 통계치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을 뿐인 것이다.

〈표 2-8〉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특경법 통계와 대검 통계원자료 중 특경법 내 민간부패 통계

(단위: 건)

| 죄명 | 연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1 | 2001 |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 653 | 697 | 725 | 696 | 924 | 1,144 | 1,526 |
| 수재+증재+알선수재 +사금융알선+저축 | | 192 | 222 | 252 | 147 | 302 | 422 | 268 | 275 |

※ 출처: 윗줄, 대검찰청, 『범죄분석』(1995-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아랫줄, 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 : 109-110 (대검찰청 통계 원자료 재산출값)

이와 같이 대검찰청 『범죄분석』에는 관련 통계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지만, 경찰청의 『범죄통계』연보에는 최근에 관련 통계의 일부가 집계 및 공표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통계가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2011년치부터 출현하고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 〈표 2-9〉는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내 민간부패 관련 통계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범죄통계』에는 특경법 수재와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은 수록되어 있지만 저축관련부당행위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 2-9〉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난 특경법 내 민간부패 관련 통계

(단위: 건)

| 죄명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 특경법 수재등 | | 12 | 16 | 20 | 14 | 14 |
| 특경법 증재등 | | 2 | 2 | 1 | 4 | 2 | 2 |
| 특경법 알선수재 | | 73 | 20 | 24 | 15 | 32 | 18 |
| 특경법 사금융알선 | | 9 | 10 | 13 | 9 | 8 | 11 |

※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11-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하지만, 이러한 통계치는 앞서 경찰청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통계와 마찬가지로 함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경법 내 민간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보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찰통계에는 그 수치가 지나칠 정도로 과소보고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그 함정이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한 관련 통계를 아는 것 외에 이 통계의 가치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다.

나.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관련 통계

2011년 이후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나기 시작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내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통계(저축관련부당행위는 2011년 이후에도 빠져있음)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례들이 빠져있고, 설상가상으로 이들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제대로 된 민간부패 범죄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많은 통계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배임수증재 통계의 경우와 유사하게도,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에는 1995년¹⁸⁾부터 현재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내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알선수재(제7조), 사금융알선(제8조), 저축관련부당행위(제9조) 위반 범죄들에 대한 통계가 수록되어 공표되고 있다. 『검찰연감』이 『범죄분석』과 다른 점 중의 하나로, 『범죄분석』이 기본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집계되는 통계인 데 비해, 『검찰연감』은 검찰에서 처리된 ‘인원’을 중심으로 집계되는 통계라는 점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검찰연감』에 나타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 위반 범죄도 처리 인원 통계일 수밖에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표 2-10>은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수재죄 처리인원 통계이다,

18) 1985년부터 수록되었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통계의 경우보다는 다소 늦다.

〈표 2-10〉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수재죄 처리인원 통계

(단위: 명(%))

| 연도 | 접수 | 처리 | 기소여부 | | | 구속기소여부 | | |
|------|-----|----------------|--------------|--------------|--------------|--------------|--------------|------------|
| | | | 기소 | 불기소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약식 |
| 2007 | 127 | 121 (100.0) | 51 (42.1) | 53 (43.8) | 17 (14.0) | 23 (45.1) | 28 (54.9) | 0 (0.0) |
| 2008 | 88 | 79 (100.0) | 34 (43.0) | 26 (32.9) | 19 (24.1) | 14 (41.2) | 20 (58.8) | 0 (0.0) |
| 2009 | 112 | 99 (100.0) | 57 (57.6) | 34 (34.3) | 8 (8.1) | 28 (49.1) | 29 (50.9) | 0 (0.0) |
| 2010 | 132 | 128 (100.0) | 60 (46.9) | 60 (46.9) | 8 (6.3) | 21 (35.0) | 38 (63.3) | 1 (1.7) |
| 2011 | 96 | 80 (100.0) | 51 (63.8) | 21 (26.3) | 8 (10.0) | 26 (51.0) | 25 (49.0) | 0 (0.0) |
| 2012 | 106 | 88 (100.0) | 45 (51.1) | 26 (29.5) | 17 (19.3) | 23 (51.1) | 22 (48.9) | 0 (0.0) |
| 2013 | 105 | 89 (100.0) | 39 (43.8) | 43 (48.3) | 7 (7.9) | 13 (33.3) | 26 (66.7) | 0 (0.0) |
| 2014 | 82 | 78 (100.0) | 34 (43.6) | 41 (52.6) | 3 (3.8) | 12 (35.3) | 22 (64.7) | 0 (0.0) |
| 2015 | 115 | 98 (100.0) | 54 (55.1) | 26 (26.5) | 18 (18.4) | 23 (42.6) | 31 (57.4) | 0 (0.0) |
| 2016 | 142 | 117 (100.0) | 61 (52.1) | 38 (32.5) | 18 (15.4) | 36 (59.0) | 25 (41.0) | 0 (0.0) |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08-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이를 보면, 특경법 수재죄는 2007년에는 121명이 처리된 이래, 2016년에는 117명이 처리되어 10년 동안 처리 인원의 변동량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79명으로 10년 기간 중 최저였고, 2010년에는 128명으로 10년 기간 중 최대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재죄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 10년간 대략 40%(최소 42.1% 2007년) 정도에서 60%(최대 63.8% 2011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배임수증재죄의 경우(40%-50% 박스권, <표 2-6> 참조)보다는 변동폭이 약간 더 큰 편에 속한다. 한편, 기소처리된 인원 중에서 구속기소된 인원의 비율은 그 최저가가 33.3%(2013년)였고, 최대는 59.0%(2016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다음 <표 2-11>은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증재죄 처리인원 통계이다. 증재죄는 수재죄와 양상이 조금 다르다.

〈표 2-11〉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증재죄 처리인원 통계

(단위: 명(%))

| 연도 | 접수 | 처리 | 기소여부 | | | 구속기소여부 | | |
|------|----|---------------|--------------|--------------|--------------|-------------|--------------|--------------|
| | | | 기소 | 불기소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약식 |
| 2007 | 61 | 55 (100.0) | 31 (56.4) | 15 (27.3) | 9 (16.4) | 5 (16.1) | 19 (61.3) | 7 (22.6) |
| 2008 | 72 | 67 (100.0) | 28 (41.8) | 12 (17.9) | 27 (40.3) | - | 20 (71.4) | 8 (28.6) |
| 2009 | 60 | 56 (100.0) | 36 (64.3) | 14 (25.0) | 6 (10.7) | 4 (11.1) | 18 (50.0) | 14 (38.9) |
| 2010 | 71 | 69 (100.0) | 41 (59.4) | 26 (37.7) | 2 (2.9) | 1 (2.4) | 34 (82.9) | 6 (14.6) |
| 2011 | 73 | 66 (100.0) | 47 (71.2) | 16 (24.2) | 3 (4.5) | 7 (14.9) | 35 (74.5) | 5 (10.6) |
| 2012 | 49 | 47 (100.0) | 34 (72.3) | 11 (23.4) | 2 (4.3) | 4 (11.8) | 28 (82.4) | 2 (5.9) |
| 2013 | 66 | 59 (100.0) | 24 (40.7) | 34 (57.6) | 1 (1.7) | 3 (12.5) | 21 (87.5) | 0 (0.0) |
| 2014 | 45 | 41 (100.0) | 26 (63.4) | 14 (34.1) | 1 (2.4) | 3 (11.5) | 20 (76.9) | 3 (11.5) |
| 2015 | 62 | 53 (100.0) | 31 (58.5) | 13 (24.5) | 9 (17.0) | 6 (19.4) | 25 (80.6) | 0 (0.0) |
| 2016 | 74 | 68 (100.0) | 34 (50.0) | 19 (27.9) | 15 (22.1) | 6 (17.6) | 21 (61.8) | 7 (20.6) |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08-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표를 보면, 2007년에는 55명이 특경법 증재죄로 처리되었는데, 2016년에는 68명이 처리되어 10년 동안 처리 인원이 40명 정도(최소 41명, 2014년)에서 70명 정도(최대 69명 2010년)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특경법 수재와 비교하면, 대략 수재죄 처리인원의 50-60% 정도의 수치라고 할 만하다. 증재죄 그 자체만으로 변동폭이 크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수재죄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조금은 큰 편이다.

기소율은 지난 10년간 대략 40% 정도에서 70% 사이에 있었는데, 이 변동폭은 배임 수증재나 특경법 수재보다 더 큰 폭의 변동폭이다. 한편, 기소처리된 인원 중에서 구속기소된 인원의 비율은 그 최저가가 0%(2008년)였고, 최대는 19.4%(2015년)였던 것으로 나타나 구속률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략적인 평균 구속률(대략 10%대)은 수재죄(대략 40%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표 2-12>는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알선수재죄 처리인원 통계이다.

<표 2-12>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알선수재죄 처리인원 통계

(단위: 명(%))

| 연도 | 접수 | 처리 | 기소여부 | | | 구속기소여부 | | |
|------|-----|----------------|---------------|--------------|--------------|--------------|--------------|--------------|
| | | | 기소 | 불기소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약식 |
| 2007 | 186 | 171 (100.0) | 111 (64.9) | 46 (26.9) | 14 (8.2) | 23 (20.7) | 67 (60.4) | 21 (18.9) |
| 2008 | 218 | 200 (100.0) | 133 (66.5) | 48 (24.0) | 19 (9.5) | 42 (31.6) | 72 (54.1) | 19 (14.3) |
| 2009 | 215 | 193 (100.0) | 127 (65.8) | 48 (24.9) | 18 (9.3) | 46 (36.2) | 63 (49.6) | 18 (14.2) |
| 2010 | 260 | 238 (100.0) | 175 (73.5) | 49 (20.6) | 14 (5.9) | 56 (32.0) | 71 (40.6) | 48 (27.4) |
| 2011 | 237 | 219 (100.0) | 126 (57.5) | 88 (40.2) | 5 (2.3) | 55 (43.7) | 44 (34.9) | 27 (21.4) |
| 2012 | 192 | 175 (100.0) | 117 (66.9) | 41 (23.4) | 17 (9.7) | 31 (26.5) | 52 (44.4) | 34 (29.1) |
| 2013 | 221 | 199 (100.0) | 121 (60.8) | 42 (21.1) | 36 (18.1) | 26 (21.5) | 74 (61.2) | 21 (17.4) |
| 2014 | 182 | 169 (100.0) | 84 (49.7) | 63 (37.3) | 22 (13.0) | 29 (34.5) | 46 (54.8) | 9 (10.7) |
| 2015 | 250 | 215 (100.0) | 125 (58.1) | 59 (27.4) | 31 (14.4) | 51 (40.8) | 45 (36.0) | 29 (23.2) |
| 2016 | 217 | 188 (100.0) | 124 (66.0) | 44 (23.4) | 20 (10.6) | 56 (45.2) | 51 (41.1) | 17 (13.7) |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08-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이를 보면, 특경법 알선수재죄는 2007년에는 171명이 처리된 이래, 2016년에는 188명이 처리되어 10년 동안 처리 인원의 변동량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는 169명으로 10년 기간 중 최저였고, 2010년에는 238명으로 10년 기간 중 최대였다. 특경법 수재와 비교하면, 수재죄 처리인원보다 매년 더 많은 수치이며, 그 정도는 매년 그 비율이 다르긴 하나 수재죄의 두 배 내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소율은 지난 10년간 대략 50%(최소 49.7%, 2014년) 정도에서 70%(최대 73.5% 2010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검찰연감』 내 어떤 범죄에 비해서도

높은 기소율이다. 기소처리된 인원 중에서 구속기소된 인원의 비율은 그 최저가가 20.7%(2007년)였고, 최대는 45.2%(2016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략 중재죄보다는 높고 수재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표 2-13>은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자금용알선죄 처리인원 통계이다,

<표 2-13>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자금용알선죄 처리인원 통계

(단위: 명(%))

| 연도 | 접수 | 처리 | 기소여부 | | | 구속기소여부 | | |
|------|----|---------------|--------------|--------------|--------------|-------------|--------------|-------------|
| | | | 기소 | 불기소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약식 |
| 2007 | 32 | 30 (100.0) | 12 (40.0) | 18 (60.0) | 0 (0.0) | 2 (16.7) | 6 (50.0) | 4 (33.3) |
| 2008 | 16 | 12 (100.0) | 2 (16.7) | 8 (66.7) | 2 (16.7) | - | 2 (100.0) | - |
| 2009 | 22 | 21 (100.0) | 10 (47.6) | 10 (47.6) | 1 (4.8) | - | 4 (40.0) | 6 (60.0) |
| 2010 | 13 | 12 (100.0) | 7 (58.3) | 5 (41.7) | - | - | 6 (85.7) | 1 (14.3) |
| 2011 | 21 | 17 (100.0) | 12 (70.6) | 5 (29.4) | - | 2 (16.7) | 6 (50.0) | 4 (33.3) |
| 2012 | 29 | 23 (100.0) | 9 (39.1) | 13 (56.5) | 11 (47.8) | - | 4 (44.4) | 5 (55.6) |
| 2013 | 42 | 39 (100.0) | 13 (33.3) | 23 (59.0) | 3 (7.7) | - | 6 (46.2) | 7 (53.8) |
| 2014 | 28 | 26 (100.0) | 11 (42.3) | 15 (57.7) | - | - | 6 (54.5) | 5 (45.5) |
| 2015 | 24 | 13 (100.0) | 6 (46.2) | 6 (46.2) | 1 (7.7) | - | 5 (83.3) | 1 (16.7) |
| 2016 | 48 | 42 (100.0) | 19 (45.2) | 21 (50.0) | 2 (4.8) | 1 (5.3) | 17 (89.5) | 1 (5.3) |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08-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이를 보면, 2007년에는 30명이 특경법 자금용알선죄로 처리되었고, 2016년에는 42명이 처리되는 등 10년 동안 처리 인원이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범죄들에 비해 적었다. 변동 비율로만 따지면 변동폭이 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폭이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저 처리 인원은 2008년

과 2010년의 12명이었고, 최대 처리 인원은 2013년의 39명이었다.

특경법 사금용알선죄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 10년간 최저 16.7%에서 최대 70.6%로 그 변동폭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처리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나타난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소처리된 인원 중에서 구속기소된 인원의 비율은 그 최저가 0%에서 최대가 16.7%였다. 처리 인원의 절대수가 적다보니 구속률이 0%가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저축관련부당행위죄 처리 인원 통계를 요약한 것이 다음 <표 2-14>이다.

<표 2-14> 『검찰연감』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특경법 저축관련부당행위죄 처리인원 통계

(단위: 명(%))

| 연도 | 접수 | 처리 | 기소여부 | | | 구속기소여부 | | |
|------|----|---------------|---------------|--------------|----|-------------|--------------|---------------|
| | | | 기소 | 불기소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약식 |
| 2007 | - | - | - | - | - | - | - | - |
| 2008 | 20 | 20 (100.0) | 20 (100.0) | - | - | - | - | 20 (100.0) |
| 2009 | 3 | 3 (100.0) | 3 (100.0) | - | - | - | 1 (33.3) | 2 (66.7) |
| 2010 | 10 | 10 (100.0) | 3 (30.0) | 7 (70.0) | - | - | - | 3 (100.0) |
| 2011 | 10 | 10 (100.0) | 10 (100.0) | - | - | 2 (20.0) | 8 (80.0) | - |
| 2012 | - | - | - | - | - | - | - | - |
| 2013 | - | - | - | - | - | - | - | - |
| 2014 | 2 | 2 (100.0) | 2 (100.0) | - | - | - | 2 (100.0) | - |
| 2015 | - | - | - | - | - | - | - | - |
| 2016 | 1 | 1 (100.0) | - | 1 (100.0) | - | - | - | - |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08-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이를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2012년, 2013년, 2015년에는 단 한 건의 사건 접수조차 없었고, 가장 많았던 해인 2008년에도 20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절대 수치가 매우 적다보니 관련

통계들, 즉 기소율이나 구속률 등에 이야기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3. 기타 여러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통계

우리나라 민간부패를 규율하는 일곱 가지 법률조항 즉 형법 357조 1항 배임수재, 형법 357조 2항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수재, 특경법 6조의 증재, 특경법 7조 알선수재, 특경법 8조 사금융알선, 특경법 9조 저축관련부당행위에 대한 ‘사건통계’(『범죄분석』)는 그동안 제대로 집계되어 본 적이 없다가 최근 일부 사건통계만이, 그것도 그 중 많은 부분은 불완전하게, 집계되기 시작했다. 다만 앞 소절들에서 확인했듯이, 사건통계가 아닌 검찰의 ‘처리인원 통계’(『검찰연감』)에서는 위 일곱 가지 죄목에 대한 통계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였다. 그 통계들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일곱 가지 범죄에 대한 처리인원수는 도합 2,113명이고, 그 중 형법상 배임수증재가 1,631명(77.2%)이고 특경법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의 합이 482명(22.8%)으로, 형법상의 민간부패 범죄와 특경법상의 민간부패 범죄의 비율이 대략 7대3에서 8대2 정도의 비중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민간부패를 아무리 좁은 범위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곱 가지 죄목이 우리나라 민간부패의 전부는 아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고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여러 가지 행정법규상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부패 관련 규제 조항들이 수십여 개나 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이 장의 제1절에서는 프로축구계에서 벌어진 승부조작용 뇌물공여 시도 사건 사례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 하나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내에서 민간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수십여 개나 되는 여러 법률들의 통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대신, 국민체육진흥법 통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민간부패를 포함하는 여러 행정법규상 조항들의 집계에 얽혀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관련해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통계인 『범죄분석』을 볼 경우, 2013년까지는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다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그에 관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표를 보면, 이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2014년에 1,895건, 2015년에 776건, 2016년에 869건으로 들쭉날쭉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 발생건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2-4>에서 살펴보았던 『범죄분석』의 배임수재 발생 통계와 배임증배 발생 통계를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치이다.

<표 2-15>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통계

(단위: 건, %)

| 연도 | 죄명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 | |
|------|----|------------|-------------------|-------|--------|
| | | 발생 | | 검거 | |
| | | 발생건수 | 발생비 ¹⁾ | 검거건수 | 검거율(%) |
| 2014 | | 1,895 | 3.73 | 1,477 | 77.94 |
| 2015 | | 776 | 1.52 | 735 | 94.72 |
| 2016 | | 869 | 1.70 | 835 | 96.09 |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1) 발생비: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

하지만, 이 수치가 모두 민간부패 관련 사건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뇌물거래와 같은 형태의 범죄보다는 도박이나 도박개장 등에 관한 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례 중 어느 정도까지가 민간부패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뇌물 거래가 개입되지 않은) 도박 관련 범죄인지를, 적어도 공표된 통계수치들만으로는, 도저히 판별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률들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십여 개나 되는 실정이다. 즉 그 수십여 개 각각의 법률들은 민간부패 행위를 포함하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조항들이 뒤섞여 있는 법률들이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통계에서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제3절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집계·측정 문제 해결방안 모색

1.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 요약

앞의 절들에서 언급한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다. 여기서 언급하는 문제는 민간부패에 대한 통계산출을 용이하기 위해 민간부패 개념을 최대한 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첫째, 민간부패를 포함하는 부패범죄와 관련된 통일된 법규가 부재하고 여러 가지 법률에 산재되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패 관련 법률 위반 통계 역시 수십여 가지 통계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산재된 수십여 개의 법률 위반 통계를 다 모아서 집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각 법률들이 오로지 민간부패 관련 조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두를 합산한다고 해도 민간부패 발생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각 법률들을 모은 뒤에 민간부패 관련 조항들에 관한 통계들을 그 모든 법률들 하나하나에서 따로 분리해서 다시 산출해내야 하는데, 그 작업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업무를 내기도 어렵다.

셋째, 설령 산재된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조항 위반 사건들의 비중이 미미하다고 가정하여(물론 실제 측정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임) 중요 법률에 집중하여 민간부패의 발생량을 추정하는 작업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민간부패 관련 법률 위반 통계들조차도 민간부패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에 여전히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민간부패의 발생 실태를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민간부패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2.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민간부패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는 민간부패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조차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식범죄통계는 그것이 최대한 제대로 집계된다고 하더라도 암수 범죄 문제로 인해 범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부패와 관련된 공식통계는 다른 범죄(가령 공식부패통계)와 비교해 볼 때에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통계는 아예 포기하고, 다른 측정방법으로 민간부패 파악을 시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으나, 공식통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내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의문이다. 특히, 민간부패가 기업부패에만 한정된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종류의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댄다 해서 민간부패 실태와 윤곽이 제대로 잡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다.

결국 순서는 민간부패에 대한 공식범죄통계를 먼저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개발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민간부패에 대한 공식통계 집계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방안과 함께 중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리적 방안을 모두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장기적 해결방안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민간부패와 관련된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단일한 법률체계로 통합해 내는 것이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민간부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집계 자체가 간단해 질 것이다.

동시에 전체 민간부패 통계의 세부유형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부패통계가 통합적으로 집계될 수 있다는 조건에서, 다시 이를 민간부패와 공직부패로 나눌 수 있고, 또 그 밑의 하위유형과 행위유형 등을 나눌 수 있게 분류체계를 만들면,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중 어떤 유형이 더 심각한지, 어떤 유형의 민간부패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유형의 민간부패는 감소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중·단기적 해결방안

장기적 차원에서 민간부패 및 전체 부패와 관련된 단일체계의 법률을 갖추는 것은 통계산출과 관련해서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에 속하지만, 그와 같은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단기간에 이루어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상당기간 그것은 불가능에 속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날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니, 중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를 해결하는 중기적 혹은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민간부패와 관련된 법률들을 그대로 두되, 관련 통계치들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형법상의 민간부패 조항, 형사 특별법상의 민간부패 조항들 뿐만 아니라 50여 가지가 넘는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들을 따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그러한 집계치를 현재의 통계연보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 분석』과 같은 범죄통계연보는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를 다루는 통계연보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와 같은 어느 한 범죄의 비중만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부패를 포함한 부패 통계 공표방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검찰청 내 부패관련 부서나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패 전문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원자료에서 추출한 관련 통계를 잘 분류하고 관리하며 체계적인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부패, 그리고 민간부패 문제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리고 진정한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체계적인 부패범죄 통계 구축에 일정 정도의 자원을 쏟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가장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는 50여개가 넘는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통계 정리는 뒤로 미루더라도, 배임수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민간부패 등 가장 핵심적인 통계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도 제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역시도 별도의 부패통계 관리와 맞물린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제 3 장

○ —————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 추세

임 정 호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 추세

제1절 UN, European Council, OECD 등 국제협약의 변화추세

1. UN 반부패협약¹⁹⁾²⁰⁾: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가. 의의

UN 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2003년 10월 31일 UN 결의안 58/4에 의하여 UN 총회에서 작성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에 서명된 후, 2005년 12월 14일부로 발효되었다.²¹⁾ 동협약은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부패방지조치,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등 대단히 광범위한 사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²²⁾

19) 동 협약을 이와 같이 UN 반부패협약이라고 번역하는 견해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20) 이와 달리 UN 부패방지협약이라고 번역하는 견해로는 이천현/홍승희/황지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년, 146면.

21)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https://www.unodc.org/unodc/en/corruption/uncac.html> 2018. 9. 11. 최종검색)

22)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https://www.unodc.org/unodc/en/corruption/uncac.html> 2018. 9. 11. 최종검색)

나. 가입 당사자

1) 현황

2015년 12월 14일 발효 당시 이미 140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2018년 9월 현재에는 182개국의 UN 가입국, 그리고 쿡 제도(the Cook Islands), 교황청(the Holy See), 팔레스타인(the State of Palestine), 그리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등 UN 미가입국 등을 포함하여 총 186개 당사자가 서명을 하여 동 협약에 가입한 상태에 이르렀다.²³⁾

2) 최근 가입 당사자

비교적 최근 동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로는 수단(2005. 1. 14.), 체코(Czech Republic 2005. 4. 22.), 라트비아(2005. 5. 19.), 인도(2005. 9. 12.), 부탄(2005. 9. 15.), 에스와티니²⁴⁾(2005. 9. 15.), 유럽연합(2005. 9. 15.), 자메이카(2005. 9. 16.), 스페인(2005. 9. 16.), 이스라엘(2005. 11. 29.), 쿠바(2005. 12. 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²⁵⁾

3) UN 가입국이면서 동 협약 미가입 당사자

2018년 현재, UN 가입국이면서도 동 협약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들로는 안도라, 바베이도스, 에리트레아, 모나코 공국(Monaco), 북한, 세인트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산마리노 공국(San Marino), 소말리아, 수리남, 시리아, 통가 등 총 12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된다.²⁶⁾

23)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VIII-14&chapter=18&lang=en 2018. 9. 11. 최종검색)

24) 에스와티니(Eswatini)는 스와질랜드의 새로운 국명이며, 2018. 4. 19. 국왕에 의하여 국명이 변경되었음이 선포되었다고 함. 강태욱 기자, “[글로벌리포트] 스와질란드가 에스와티니(Eswatini)가 되려는 진짜 이유”, 데일리투머로우, 2018. 4. 27.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7229> 2018. 9. 11. 최종검색)

25)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VIII-14&chapter=18&lang=en 2018. 9. 11. 최종검색)

26)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VIII-14&chapter=18&lang=en 2018. 9. 11. 최종검색)

다. 구성

UN 반부패협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표와 같다.

편의상 전체 협약의 조문들 중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민간부패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조문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아래와 같이 구별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을 먼저 거쳐서, 관련성있는 조문들을 남긴 후,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3-1〉 UN 반부패협약 규정의 민간부패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 체크

| | 민간부패 문제와의 관련성 ²⁷⁾ | 규정의 제목 |
|-----------------------------------|------------------------------|---|
| 제1장 총칙 ²⁸⁾ | (○)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사용)▲ ²⁹⁾ △ ³⁰⁾ : (a) ³¹⁾ 제3조(적용범위) |
| | (×) | 제4조(주권보호) |
| 제2장 예방조치 ³²⁾ | (○) | 제5조(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제6조(부패방지기구) 제12조(민간부문)▲△: (e)(전직 국내공무원) 제13조(사회의 참여) 제14조(자금세탁 방지조치)▲ |
| | (×) | 제7조(공공부문) 제8조(공무원행동강령) 제9조(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제10조(공공보고) 제11조(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
|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³³⁾ | (○) | 제16조(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제18조(영향력에 의한 거래)▲△: (b) 제21조(민간부문의 뇌물수수)▲ 제22조(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제23조(범죄수익의 세탁)▲ 제24조(은닉)▲ 제25조(사법방해) 제26조(법인의 책임)▲ 제27조(참가와 미수)▲ 제28조(범죄의 구성요소로서 인식·고의와 목적)▲ 제29조(공소시효)▲ 제30조(소추·재판과 제재)▲△: 2, 6, 8 제31조(동결·압수와 몰수)▲ 제32조(증인·감정인과 피해자의 보호) 제33조(신고자 보호) |

48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 민간부패 문제와의 관련성 ²⁷⁾ | 규정의 제목 |
|-----------------------------|------------------------------|---|
| | | 제34조(부패행위의 결과) 제35조(손해배상) 제36조(전문기관) 제37조(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제38조(국가기관 간의 협력) 제39조(국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 제40조(금융비밀) 제41조(범죄기록) 제42조(관할권) |
| | (×) | 제15조(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 제17조(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제19조(직권남용) 제20조(부정축재) |
| 제4장 국제협력 34) | (○) | 제43조(국제협력) 제44조(범죄인인도) 제45조(수형자이송) 제46조(사법공조) 제47조(형사절차의 이관) 제48조(법집행 협력) 제49조(합동수사) 제50조(특별수사기법) |
| | (×) | 없음 |
| 제5장 자산회복 35) | (○) | 제51조(총칙) 제52조(범죄의 수익의 이전방지와 탐지)△: 5, 6 제53조(재산의 직접회복을 위한 조치) 제54조(몰수 관련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제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제56조(특별 협력) 제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제58조(금융정보기관) 제59조(양자·다자간 협약과 약정) |
| | (×) | 없음 |
|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36) | (○) | 제60조(훈련과 기술지원) 제61조(부패 관련 정보 수집·교환 및 분석) 제62조(그 밖의 조치: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 |
| | (×) | 없음 |
| 제7장 이행체제 37) | (○) | 없음 |
| | (×) | 제63조(협약 당사국총회) 제64조(사무국) |
| 제8장 최종조항 | (○) | 없음 |

| | 민간부패 문제와의 관련성 ²⁷⁾ | 규정의 제목 |
|-----|------------------------------|---|
| 38) | (×) | 제65조(협약의 이행) 제66조(분쟁의 해결) 제67조(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제68조(발효) 제69조(개정) 제70조(폐기) 제71조(수탁자와 언어) |

- 27) 유엔반부패협약 중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민간부패 관련 규정의 경우 (○) 표기, 유엔반부패협약 중 국내공무원 및 협약 체결 절차 관련 규정의 경우 (×) 표기
- 2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29) UN 반부패협약 중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민간부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규정임을 알려둠.
- 30) UN 반부패협약 중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민간부패 관련 규정이지만, 규정상 국내공무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규정임을 알려둠.
- 31) 전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번역문의 경우 ‘(a)’을 ‘가.’로, ‘(b)’을 ‘나’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문 그대로 (a), (b)로 표기하도록 함을 밝혀둠.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32)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3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3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35)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36)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37)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3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9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라. 내용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 반부패협약은, 이후 살펴볼 다른 협약들에 비하여 그 규정의 수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위 과정을 거쳐 민간부패 문제와 관련성이 없는 규정들을 추려내는 과정이 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협약의 규정과 그 내용은 대단히 많다. 이제 위 표에서 미리 살펴본 민간부패 문제와의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규정들만을 추려내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가급적 최대한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 UN 반부패협약상 민간부패 관련 규정의 내용

| | 내용 |
|-----------------------------|---|
| 제1장 총칙 ³⁹⁾ | 제1조(목적)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⁴⁰⁾ 직접 규정함 제2조(용어의 사용)▲ ⁴¹⁾ △ ⁴²⁾ : (a) ⁴³⁾ ‘외국공무원’,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⁴⁴⁾ 에 대하여 직접 규정함 제3조(적용범위) 부패 방지에 대하여 적용됨 ⁴⁵⁾ 을 직접 규정함 |
| 제2장 예방조치 ⁴⁶⁾ | 제5조(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협약에 참가한 당사자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일반적 노력을 위한 사항 ⁴⁷⁾ 을 규정함 제6조(부패방지기구) 당사자국에 의한 독립성이 보장(제6조 제2항)된 부패방지기구 설립 ⁴⁸⁾ 에 대하여 규정함 제12조(민간부문)▲△: (e)(전직 국내공무원) 기업과 전문직(제12조 제2항 (b)), 법인 등 단체(제12조 제2항 (c)), 보조금(제12조 제2항 (d)), 전직 공무원의 사적 부문에서의 활동(제12조 제2항 (e))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⁴⁹⁾ 을 규정함 제13조(사회의 참여) 부패 관련 정보 접근권을 규정하면서(제13조 제1항 (b)), 동시에 이에 대한 제한 사유로 타인의 권리, 평판과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질서 또는 공공의 보건 및 도덕(제13조 제1항 (d)) 등 ⁵⁰⁾ 을 규정함 제14조(자금세탁 방지조치)▲ 의심스러운 금전거래의 보고(제14조 제1항 (a)), 당사자국간의 금융정보기구의 설립(제14조 제1항(b)),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는 송금에 있어서의 조사의 강화(제14조 제3항 (c))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당사자국의 조치 사항 ⁵¹⁾ 을 규정함 |
|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⁵²⁾ | 제16조(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국제 상거래 관련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에 의한 직접적, 간접적인 증거 및 수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⁵³⁾ 을 규정함(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영향력에 의한 거래)▲△: (b) 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에 의한 영향력의 남용을 위한 직접적, 간접적인 증거 및 수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⁵⁴⁾ 을 규정함(제18조 |

| | 내용 |
|--|---|
| | <p>(a) 및 (b)⁵⁵⁾ 제21조(민간부문의 뇌물수수)▲ 민간단체 종사자의 의무위반을 위한 직접적, 간접적인 증뢰 및 수뢰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⁵⁶⁾을 규정함(제21조 (a) 및 (b)⁵⁷⁾) 제22조(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민간단체 종사자의 횡령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⁵⁸⁾을 규정함 제23조(범죄수익의 세탁)▲ 범죄수익세탁에 대한 공범을 포함하여(제23조 제1항 (b) (ii)) 범죄수익세탁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⁵⁹⁾을 규정함 제24조(은닉)▲ 부패행위 관련 재산을 부패행위와 관련없는 자가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⁶⁰⁾을 규정함 제25조(사법방해) 동 협약상의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사법방해행위(제25조 (b)) 및 동 협약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사법방해행위(제25조 (a))의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⁶¹⁾을 규정함⁶²⁾ 제26조(법인의 책임)▲ 동 협약상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법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 또는 행정상책임의 규정(제26조 제2항) 및 법인책임으로 자연인의 형사책임에 영향이 없음을 규정(제26조 제3항)하는 등⁶³⁾ 법인의 형사책임이 필수적 사항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음 제27조(참가와 미수)▲ 동 협약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 등 각종의 참가행위(제27조 제1항), 미수(제27조 제2항), 예비(제27조 제3항)의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⁶⁴⁾을 규정함 제28조(범죄의 구성요소로서 인식·고의와 목적)▲ 고의는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추정된다는 원칙⁶⁵⁾을 직접 규정함 제29조(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을 장기⁶⁶⁾로 규정할 것⁶⁷⁾을 밝힘 제30조(소추·재판과 제재)▲△: 2, 6, 8 동 협약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재판, 형사적 제재 관련 일반적 사항 및 가석방 관련 사항(제30조 제5항), 당사자국의 고유한 항변사유의 원용가능성(제30조 제9항) 등⁶⁸⁾을 규정함 제31조(동결·압수와 몰수)▲ 몰수(제31조 제1항), 동결 및 압수(제31조 제2항) 관련 일반적 사항 및 이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제31조 제9항) 등⁶⁹⁾을 규정함 제32조(증인·감정인과 피해자의 보호) 증인, 감정인은 물론 증인인 피해자의 보호(제32조 제4항) 등⁷⁰⁾에 대하여 직접 규정함 제33조(신고자 보호) 선의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신고를 행한 신고자 보호⁷¹⁾를 규정함 제34조(부패행위의 결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계약취소 등 원인행위의 해소 전반을 규정한 것⁷²⁾으로 파악됨 제35조(손해배상) 부패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단체, 개인의 배상 등⁷³⁾을 규정함 제36조(전문기관) 부패 척결 목적의 전문기관 설립⁷⁴⁾에 대하여 규정함 제37조(법집행기관과의 협력)</p> |

| | 내용 |
|-------------------------|--|
| | <p>동 협약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소추에 상당한 조력을 제공한 자에 대한 소추의 면제(제37조 제3항) 등⁷⁵⁾을 규정함</p> <p>제38조(국가기관 간의 협력)</p> <p>기관간 협력 사항⁷⁶⁾을 규정함</p> <p>제39조(국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p> <p>수사기관, 소추기관과 금융기관 등 민간단체간 협력⁷⁷⁾을 규정함</p> <p>제40조(금융비밀)</p> <p>동 협약상 범죄행위 수사에 있어서 금융비밀 관련 법률 적용으로 인한 장애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체계의 보장⁷⁸⁾을 규정함</p> <p>제41조(범죄기록)</p> <p>동 협약상 범죄행위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정보사용목적으로 국외에서의 범죄기록의 고려에 필요한 법률적 또는 그 외 조치의 도입⁷⁹⁾을 규정함</p> <p>제42조(관할권)</p> <p>동 협약상 범죄행위 관련 속지주의(제42조 제1항 (a)), 기국주의(제42조 제1항 (b)), 보호주의(제42조 제2항 (a)) 등⁸⁰⁾을 규정함</p> |
| 제4장 국제협력 ⁸¹⁾ | <p>제43조(국제협력)</p> <p>형사, 민사, 행정상 절차에서의 국제적 협력⁸²⁾을 규정함</p> <p>제44조(범죄인인도)</p> <p>동 협약상 범죄자에 대한 당사자국간 범죄인인도(제44조 제1항), 동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성격 배제(제44조 제4항), 인도 거부시에는 인도 청구 당사자국의 요청시 부적절한 지체없이 소추 목적으로 자국 기관에 사건을 제출(제44조 제11항), 당해 범죄행위가 재정적 이유와 관련성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도 거부 불가함(제44조 제16항) 등⁸³⁾을 규정함</p> <p>제45조(수형자이송)</p> <p>동 협약상 범죄에 대한 자유형 등 자유박탈적 제재를 부과받은 자가 자국에서 당해 제재를 마칠 수 있게 자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당사자국간의 협약 등 체결 검토 등⁸⁴⁾을 규정함</p> <p>제46조(사법공조)</p> <p>동 협약상 범죄에 대한 수사, 소추, 사법절차에서의 공조(제46조 제1항), 제26조상 법인책임 관련 수사, 소추, 사법절차에서의 공조(제46조 제2항), 사법공조의 구체적 유형으로 수색, 압수, 동결의 집행(제46조 제3항 (c)), 금융상 비밀을 이유로 한 공조 거절의 금지(제46조 제8항), 이송받은 당사자국에 의한 범죄인의 구금 관련 권한과 의무(제46조 제11항 (a)) 및 형기산입(제46조 제11항 (d)), 사법공조 청구에 포함될 사항(제46조 제15항), 사법공조 청구의 거절사유(제46조 제21항 (a)-(d)), 사법공조 청구가 재정적 이유와도 관련성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 불가함(제46조 제22항), 거부 이유의 제시 필요성(제46조 제23항) 등⁸⁵⁾을 규정함</p> <p>제47조(형사절차의 이관⁸⁶⁾)</p> <p>동 협약상 범죄 관련 특히 복수 관할권 문제의 검토 필요성⁸⁷⁾을 규정함 것으로 파악됨</p> <p>제48조(법집행 협력)</p> <p>법집행 관련 협력 사항(제48조 제1항 (b) (i)-(iii)), 조사 내지 분석 및 수사 목적에 필수적인 품목 또는 물질 제공(제48조 제1항 (c)) 등⁸⁸⁾을 규정함</p> <p>제49조(합동수사)</p> <p>당사자국간 합동수사를 위한 협정 등 체결의 검토 또는 사안별 합동수사의 가능성⁸⁹⁾을 규정함</p> <p>제50조(특별수사기법)</p> <p>전자적 감시 및 기타의 감시방법, 잠입작전⁹⁰⁾ 등 수사기법의 적절한 사용 및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조치 등⁹¹⁾을 규정함</p> |

| | 내용 |
|--------------------------------|--|
| 제5장 자산회복 ⁹²⁾ | <p>제51조(총칙) 자산회복이 동 협약의 기본원칙임⁹³⁾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p> <p>제52조(범죄의 수익의 이전방지와 탐지)△: 5, 6 금융기관 고객의 확인 절차, 고액예금 계좌 자금의 수익자 신원 확인 절차, 현저하게 공적인 기능을 위임받았거나 받았던 자와 그 가족 및 측근인 자의 계좌에 대한 강화된 조사를 위한 조치(제52조 제1항), 물리적 실체없는 은행 또는 규제감독하의 금융그룹소속 아닌 은행 설립의 방지조치(제52조 제3항) 등⁹⁴⁾을 규정함</p> <p>제53조(재산의 직접회복을 위한 조치) 동 협약상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권리 확정 목적의 민사소송을 당사자국이 자국 법원에서 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제53조 (a)⁹⁵⁾), 동 협약상 범죄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제53조 (b)) 등⁹⁶⁾을 규정함</p> <p>제54조(몰수 관련 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체계) 타국 법원의 몰수명령 집행에 실제 효과 부여를 위한 권한의 허용에 필수적 조치(제54조 제1항 (a)), 외국에 근원을 둔 재산의 몰수명령에 필수적 조치(제54조 제1항 (b)), 범죄인 사망, 도주, 또는 부재, 또는 그 외 적절한 때에 유죄판결없이 몰수하는데 필수적 조치의 검토(제54조 제1항 (c)), 재산의 동결, 압수, 보존 등을 위한 조치의 검토(제54조 제2항 (a)-(c)) 등⁹⁷⁾을 규정함</p> <p>제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몰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⁹⁸⁾을 총괄적으로 규정함</p> <p>제56조(특별 협력) 동 협약상 범죄로 인한 수익 관련 정보의 전달을 위한 조치⁹⁹⁾를 규정함</p> <p>제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적법한 소유자에게로의 몰수재산 반환(제57조 제1항), 반환대상 몰수재산에서의 비용 공제(제57조 제4항) 등¹⁰⁰⁾을 규정함</p> <p>제58조(금융정보기관) 의심스러운 재정거래 보고의 접수 등을 관할할 금융정보기관의 설립¹⁰¹⁾을 규정함</p> <p>제59조(양자·다자간 협약과 약정) 국제협력 관련 효율성 증진 목적의 협약 등 체결 검토 등¹⁰²⁾을 규정함</p> |
|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¹⁰³⁾ | <p>제60조(훈련과 기술지원) 민간 영역 등 평가(제60조 제1항 (d)) 등¹⁰⁴⁾ 훈련 및 기술지원 관련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p> <p>제61조(부패 관련 정보 수집·교환 및 분석) 수집 등 정보 관련 전반적 사항¹⁰⁵⁾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p> <p>제62조(그 밖의 조치: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 부패방지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등 지원책 일반¹⁰⁶⁾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p> |

39)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40)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면, 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41) UN 반부패협약 중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민간부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규정임을 알려둠.

42) UN 반부패협약 중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민간부패 관련 규정이지만, 규정상 국내공무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규정임을 알려둠.

43) 전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번역문의 경우 ‘(a)’을 ‘가.’로, ‘(b)’을 ‘나’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문 그대로 (a), (b)로 표기하도록 함을 밝혀둠.

-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4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45)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46)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47)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면, 1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4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1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49)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1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0)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1)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2)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5) 이와 같이 제18조의 경우, 별도의 ‘항’이 없이 곧바로 (a), (b)로 내려감을 밝혀둠.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7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6)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7) 이와 같이 제21조의 경우, 별도의 ‘항’이 없이 곧바로 (a), (b)로 내려감을 밝혀둠.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9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59)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8면, 3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0)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1)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0면, 3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2) 이와 같이 제25조의 경우, 별도의 ‘항’이 없이 곧바로 (a), (b)로 내려감을 밝혀둠.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3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5)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6) 원문은 ‘a long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및 ‘a longer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7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7)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4면, 3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69)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6면, 3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0)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8면, 4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1)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2)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0면, 4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5)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6)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7)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79)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0)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4면, 4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1)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2)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48면, 50면, 5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5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5)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52면, 54면, 56면, 58면, 60면, 6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6) 본래 'Transfer of criminal proceedings'로 이를 형사절차의 이송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번역을 존중한 것임을 밝혀둠.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4~65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7)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4면, 6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89)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6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0) 원문은 'undercover operations'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9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1)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2)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68면, 7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5) 이와 같이 제53조의 경우, 별도의 '항'이 없이 곧바로 (a), (b)로 내려감을 밝혀둠.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73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6)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7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7)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72면, 7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8)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7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99)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78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00)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78면, 8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01)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02)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0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0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마. 소결: 총칙적 규정 및 절차적 규정의 집대성

UN 반부패협약은 다른 협약들에 비하여 범죄와 관련한 총칙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은 물론, 절차법적 문제 및 국제협력과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한 실효성 담보 목적의 다양한 규정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부패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법해석적 문제 및 형사책임의 확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직접 규정하며(제26조), 공범 등 다양한 형태의 참가와 미수에 대하여 규정하고(제27조), 주관적 요소인 범죄의 구성요소로거 인식·고의와 목적 역시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제28조).

한편 소송법적 문제 내지 절차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동협약은 이를 장기로 할 것을 규정(제29조)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이는 후술할 다른 협약들과 구별될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또한 동협약은 특히 범죄인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형사절차의 이관(제47조), 법집행 협력(제48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제5장 자산회복의 장에서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회복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 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04)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2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05)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06)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8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2.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¹⁰⁷⁾¹⁰⁸⁾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가. 의의

유럽회의의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은 1999년 1월 2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서명되어 2002년 7월 1일부로 비준되고 발효되었다.¹⁰⁹⁾ 부패를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당시 유럽회의는, 이와 같은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동협약의 체결을 채택¹¹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회의 참가 당사자국들은, 각각의 개별 국가 수준이 아닌 국가간의 협력 및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을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 과제로 삼았다.¹¹¹⁾

나. 가입 당사자

1) 개관

동 협약과 관련된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이하의 <표 3-3> 유럽회의의 협약 관련 국가 현황¹¹²⁾을 먼저 검토하도록 한다.

107) 네이버 두산백과 “Council of Europe” 검색결과,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하고 있는 Council of Europe을 이와 같이 유럽회의로 번역하고 있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319&cid=40942&categoryId=59585> 2018. 10. 25. 최종검색)

108) 이와 달리 이를 유럽평의회로 번역하는 견해로는 이천현/홍승희/황지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범죄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년, 152면.

109)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 2018. 9. 11. 최종검색)

110)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to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2.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cce44> 2018. 12. 5. 최종검색)

111)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to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2.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cce44> 2018. 12. 5. 최종검색)

112)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표 3-3〉 유럽회의의 협약 관련 국가 현황

|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관련 국가 현황 ¹¹³⁾ | |
|--|--|
| 유럽회의의 회원국 ¹¹⁴⁾ | 비회원국이되 유럽회의의 타협약에 서명 등을 한 전력이 존재하는 국가 등 ¹¹⁵⁾ |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Georgia),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공국(San Marino), 세르비아,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 벨라루스 ¹¹⁶⁾ , 캐나다 ¹¹⁷⁾ , 교황청(Holy See) ¹¹⁸⁾ , 일본 ¹¹⁹⁾ , 멕시코 ¹²⁰⁾ , 미국 ¹²¹⁾ |

- 113)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 114)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 115)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 116) 유럽 문화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Belarus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BEA?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117) 사이버 범죄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Canad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CAN?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118) 고고학 유적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Holy Se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HOL?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119) 형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Japa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JAP?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120) 외국법 정보에 대한 유럽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Mexico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MEX?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121) 조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상호 행정적 지원에 관한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USA?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위와 같이, 동 협약의 경우 유럽회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행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벨라루스¹²²⁾, 캐나다¹²³⁾, 교황청(Holy See)¹²⁴⁾, 일본¹²⁵⁾, 멕시코¹²⁶⁾, 미국¹²⁷⁾ 등 이들 국가들의 경우, 동 협약 이외에도 유럽회의의 다른 협약에 서명을 행한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명, 비준 및 발효가 모두 이루어진 총 48개국

서명과 비준 및 발효가 모두 이루어진 국가에는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Georgia),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공국(San Marino), 세르비아,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슬로비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터키, 우크라이나 등 유럽회의 회원국 47개국 전부 및 비회원국인 벨로루스가 해당된다.¹²⁸⁾

122) 유럽 문화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Belarus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BEA?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123) 사이버 범죄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Canad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CAN?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124) 고고학 유적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Holy Se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HOL?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125) 형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Japa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JAP?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126) 외국법 정보에 대한 유럽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Mexico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MEX?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127) 조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상호 행정적 지원에 관한 협약 등을 발효시킨 바 있음.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USA?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128)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3) 서명만 한 2개국

멕시코, 미국의 경우 서명만 행한 국가들에 해당된다.¹²⁹⁾

4) 다른 유럽회의의 협약 참여국이면서 동 협약에는 서명하지 않은 3개국

전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와 교황청, 일본도 과거 유럽회의의 협약에 참여한 바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동 협약에 대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동 협약에 있어서는 캐나다, 교황청(Holy See), 일본의 경우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¹³⁰⁾ 동 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기타 특별한 입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5) 최근 가입국

가장 최근 동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국가는 유럽회의의 회원국이기도 한 리히텐슈타인이며 2009년 11월 17일 서명 후, 2016년 12월 9일 인준하였고, 2017년 4월 1일부터 동 협약이 발효되었다.¹³¹⁾

다. 개정 연혁

아직까지 협약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개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03년 5월 1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서명되어 2005년 2월 1일 발효된 추가 의정서¹³²⁾에 따르면, 위 협약의 범위를 재판에 있어서의 배심원뿐만 아니라 상사 민사 기타 중재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부패로부터 사법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129)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130)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131)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132)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91 Additional Protocol to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91>) 2018. 9. 28. 최종검색

된 위 협약의 조항들을 보완한다.¹³³⁾ 위 협약의 서명국들은 내국인 및 외국인인 중재인과 배심원들의 적극적·소극적 뇌물 관련 행위를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¹³⁴⁾

라. 구성 및 내용

동협약의 경우, 연구 시점 현재 아직 국내에 협약 전문에 대한 번역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동협약의 경우 전술한 UN 협약에 비해 그 양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동협약의 원문을 대상으로 하되, 동협약 중 민간부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정리한 후, 해당되는 규정 전부를 번역하면 다음 <표 3-4> 유럽회의 협약 규정 중 민간부패 관련 규정¹³⁵⁾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4>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규정 중 민간부패 관련 규정

|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¹³⁶⁾ | | |
|---|--|--|
| 제1장 용어의 사용 | 제1조 용어의 사용 ¹³⁷⁾ | 본협약의 목적상: a “공무원”이란 문제의 개인이 그 기능(“공공”, “공무원”, “시장”, “장관” 또는 “법관”)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국가의 형사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공공”, “공무원”, “시장”, “장관” 또는 “법관”의 국내법에 있는 정의를 참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b 이하의 “법관”에는 검사와 사법부 재직자들을 포함한다; c 타국 공무원이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 기소하는 당사국은 공무원의 정의가 본국의 국내법과 양립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d “법인”이란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그리고 공공 국제기구를 위한 공공 단체를 제외한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이러한 지위를 갖는 존재를 의미한다. |
| 제2장 국가적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 | 제5조 외국공무 원의 뇌물수수 ¹³⁸⁾ | 각 당사국은 외국 공무원과 관련된 제2조 ¹³⁹⁾ 및 제3조 ¹⁴⁰⁾ 의 행위를 자국의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33)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91 Additional Protocol to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91> 2018. 9. 28. 최종검색)

134)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91 Additional Protocol to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91> 2018. 9. 28. 최종검색)

135)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2~12.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¹³⁶⁾ | |
|---|--|
| 제6조 외국 의회 구성원의 뇌물수수 141) | 각 당사국은 타국에서 입법 및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 구성원이 관련된 제2조 및 제3조의 행위를 자국의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7조 민간부문 에서의 적극적 뇌물범죄 142) | 각 당사국은 민간부문의 단체가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사업 활동의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를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자격을 불문하고 상급자 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고의적으로 직·간접적인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것을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8조 민간부문 에서의 소극적 뇌물범죄 143) | 각 당사국은 민간부문의 단체가 고의로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사업 활동의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를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지위를 불문하고 상급자 또는 하급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당한 이익의 제의 또는 약속을 수락하는 것을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9조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144) | 각 당사국은 공공 국제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 또는 당사국이 구성원으로 있는 조직의 직원규정의 의미상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 그리고 파견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직원과 관리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된 제2조 및 제3조의 행위를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10조 국제의회 구성원의 뇌물수수 145) | 각 당사국은 당사국인 구성원으로 있는 국제적인 또는 초국가적인 기구의 의회 구성원이 관련된 제4조 ¹⁴⁶⁾ 의 행위를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11조 국제 재판소 법관 및 직원의 뇌물수수 147) | 각 당사국은 각 당사국에 의해 관할권을 인정받은 국제 재판소의 법관 또는 직원이 관련된 제2조 및 제3조의 행위를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12조 영향력에 의한 거래 ¹⁴⁸⁾ | 각 당사국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 그리고 제9조부터 제11조와 관련된 결정권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여주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의 약속, 제공 또는 제의하는 것을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부당한 이익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의 제의 또는 약속의 요구, 수령 또는 수락여부를 고려하고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 영향이 실제 행사되었는지 또는 이러한 영향이 의도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를 고려한다. |
| 제13조 부패 범죄로 얻은 |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유보 및 선언을 하지 않은 범위까지 당사국의 돈세탁 입법의 목적상 이러한 범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전제범죄가 본 협약의 제2조부터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할 때, 범죄로부터 얻은 물건의 세탁,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유럽 회의의 협약(ETS |

|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¹³⁶⁾ | |
|---|---|
| 수익의 자금세탁 149) | No. 141) ¹⁵⁰⁾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조건에서 언급되는 행위를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14조 회계부정 범죄 ¹⁵¹⁾ | <p>각 당사국은 본협약의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당사국이 유보 또는 선언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숨기기 위해, 위장하기 위해 범하는 고의의 작위·부작위를 당사국의 형사법 또는 다른 제재를 받는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a 거짓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포함하는 송장 또는 다른 회계 자료 및 기록의 생성 또는 사용;</p> <p>b 지불 기록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 누락.</p> |
| 제15조 가담행위 152) | 당사국은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의 방조 또는 교사를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16조 면책 ¹⁵³⁾ | 본협약의 규정은 면책 철회에 관한 어떠한 조약의 규정, 의정서 또는 법규뿐만 아니라 이것의 실행 문서도 침해하지 않는다. |
| 제17조 관할권 154) | <p>1 각 당사국은 본협약의 제2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할권을 규정(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a 범죄 전체 또는 일부가 본국의 영토에서 저질러진 경우;</p> <p>b 범죄자가 본국 국민, 공무원, 또는 국내 의회 구성원인 경우;</p> <p>c 범죄가 본국 공무원, 국내 의회 구성원 또는 제9조부터 11조에서 언급되는 사람인과 동시에 본국의 국민인 경우.</p> <p>2 각 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 서면 제출 시 유럽회의의 사무총장에게 선언함으로써 제17조 관할권 제1항 b 및 c에 규정된 관할권 규정 또는 관할권 규정의 어느 부분이 적용되지 않거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거나 또는 조건부 적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p> <p>3 만약 당사국이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유보권을 사용한 경우, 범죄용의자가 자국 영토에 있고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임을 이유로 타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4 본협약은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p> |
| 제18조 법인책임 155) | <p>1 각 당사국은 법인이 법인 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연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법인 기관의 부분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본 협약에 규정된 적극적인 뇌물수수, 영향력에 의한 거래 및 돈세탁의 범죄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권한; 또는 - 법인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는 - 법인 내에서의 지배권한; <p>또한 위에 언급한 범죄에 있어서 중범 또는 선동자와 같은 자연인의 개입도 포함한다.</p> <p>2 제1항에서 이미 규정된 경우 외에도, 각 당사국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권한 하에 있는 자연인에 의해 행해진 제1항에 언급된 자연인의 감독 또는 지배의 부재로 인해 제1항에서 언급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하의 법인책임은 제1항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법인, 선동자 또는 중범인 자연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배제하지 않는다.</p> |

|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¹³⁶⁾ | |
|---|---|
| 제19조 제재 및 조치 ¹⁵⁶⁾ | <p>1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은 본협약의 제2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자연인에 의한 범죄의 경우, 본국으로의 송환 등 자유박탈적 제재를 포함하는 효과적이고, 균형있고, 억제적인 제재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2 각 당사국은 본협약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포함하는 효과적이고, 균형있고, 억제적인 형사적 또는 비형사적 제재에 의해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3 각 당사국은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수단 및 수익금 또는 이러한 수익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재산을 몰수 또는 박탈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p> |
| 제20조 전문기관 157) | <p>각 당사국은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개인 또는 단체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은 다른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의 법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독립성을 갖는다. 당사국은 이러한 단체의 직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위해 필요한 훈련과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p> |
| 제21조 국가기관 간의 협력 ¹⁵⁸⁾ | <p>각 당사국은 본국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하는 기관과 국내법에 따라 협력하게 해야 한다:</p> <p>a 본협약 제2조부터 제14조의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기관에게 통지 또는</p> <p>b 수사 및 기소 기관의 요청에 따라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p> |
| 제22조 협조자 및 증인보호 159) | <p>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a 본협약 제2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자 또는 수사 및 기소기관에게 협조하는 자</p> <p>b 위 범죄(제2조부터 제14조까지)에 관련해서 증언하는 증인</p> |
| 제23조 증거수집 및 범죄 수익금 몰수의 촉진 조치 ¹⁶⁰⁾ | <p>1 각 당사국은 본협약의 제2조에서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국내법에 따른 특별 조사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협약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패 범죄수단 및 수익금 또는 이러한 수익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재산을 규정, 동결 그리고 압수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2 각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본국의 법원 또는 다른 관계기관이 은행기록, 재무기록 또는 상업기록의 제공(사용) 또는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3 은행의 비밀 유지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공된 조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p> |
| 제3장 실행 모니터링 | <p>제24조 모니터링 161)</p> <p>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국가모임(GRECO)은 그 구성원으로 본 협약의 실행을 모니터링한다.</p> |
| 제4장 국제협력 | <p>제25조 국제 협력을 위한 일반 원칙과 조치¹⁶²⁾</p> <p>1 당사국은 형사문제에 있어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기구의 규정 또는 동일·상호적인 입법에 기초한 합의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 관련 수사 그리고 소송을 위해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로 협력해야 한다.</p> <p>2 각 당사국 간에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현재의 국제기구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본장 제26조부터 31조까지 규정들이 적용된다.</p> <p>3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이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국제기구 규정 또는 합의보다 더 유리한 경우,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들을 적용한다.</p> |

|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¹³⁶⁾ | |
|---|---|
| 제26조 공조 ¹⁶³⁾ | <p>1 당사국들은 본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상호 간 가장 광범위한 공조조치를 취해야 한다.</p> <p>2 본조 제1항의 사법공조는 만약 요청을 받는 당사국이 요청의 응낙이 본국의 근본적인 이익, 국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p> <p>3 당사국은 은행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본장의 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 국내법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국은 은행 비밀 유지 해제와 관련된 협력에 대한 조치를 법관 또는 검사나 범죄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하는 사법기관에 의해 승인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
| 제27조 범죄인 인도 ¹⁶⁴⁾ | <p>1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 간의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 있어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본다. 당사국들은 당사국간 체결될 범죄인인도 조약에 있어 본협약의 범죄들을 인도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p> <p>2 만약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에 있어 범죄인인도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고, 조약체결없는 다른 국가로부터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본협약을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인도의 법적근거로서 고려할 수 있다.</p> <p>3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에 있어 범죄인인도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를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p> <p>4 범죄인인도는 요청받은 당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조건 또는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야 한다.</p> <p>5 만약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오직 용의자의 국적 때문에 또는 요청받은 당사국이 당해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요청하는 국가와 달리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본국의 관계기관에 기소를 목적으로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적절한 때에 요청 국가에게 최종결과를 알려야 한다.</p> |
| 제28조 자발적 정보 ¹⁶⁵⁾ | <p>당사국은 자국의 조사 또는 소송절차에 침해되지 않는 경우, 정보를 받는 국가가 본협약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의 개시 또는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본장의 당사국에 의한 요청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전의 요청이 없더라도, 다른 당사국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다.</p> |
| 제29조 중앙기관 ¹⁶⁶⁾ | <p>1 당사국은 본장에 의한 요청의 발신과 답변, 이러한 요청의 실행 또는 실행을 위한 기관에의 전달을 책임지는 중앙기관 또는 적절하다면 수개의 중앙기관을 지정해야 한다.</p> <p>2 각 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 서면 제출시 유럽회의의 사무총장에게 본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야 한다.</p> |
| 제30조 직접적 의사소통 ¹⁶⁷⁾ | <p>1 중앙기관들 간에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p> <p>2 긴급한 경우, 요청하는 당사국의 검사를 포함하는 사법기관이 요청을 받는 당사국의 이러한 기관에 공조 또는 소통을 위한 요청을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시에 요청하는 당사국의 중앙기관을 통해 요청받은 당사국의 중앙기관에 사본이 보내져야 한다.</p> <p>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 또는 소통은 인터폴을 통하여 할 수 있다.</p> <p>4 본조 제2항에 의한 요청이 있고, 중앙기관이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중앙기관은 해당 요청을 국내의 다른 관계기관에 위탁하고, 요청하는 당사국에게 그렇게 처리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야 한다.</p> <p>5 강제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본조 제2항에 의한 요청 또는 소통은 요청하는 당</p> |

|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협약: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¹³⁶⁾ | |
|---|--|
| | 사국의 관계기관에 의해 요청받은 당사국의 관계기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 서면 제출 시 효율성을 이유로 본 장에 의해 중앙기관으로 보내진 요청을 유럽회의의 사무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제31조 정보 ¹⁶⁸⁾ |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한 당사국에게 본장의 요청에 대해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신속히 알려야 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또한 요청을 한 당사국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또는 상당히 지연시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알려야 한다. |

- 136)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2~12.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37)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2.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38)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3.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39) 누구든지 고의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의, 제공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 140) 공무원이 고의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정한 이익의 제의 또는 약속을 수락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 141)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3.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42)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3.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43)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3.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44)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3.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45)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4.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46) 각 당사국은 입법권 또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내의회의 구성원과 관련된 제2조 및 제3조의 행위를 국내법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47)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4.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48)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4.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 149)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4.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0)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41: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41> 2018. 12. 4. 최종검색)
- 151)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4.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2)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4.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3)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5.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4)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5.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5)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5~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6)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7)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8)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59)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6.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0)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7.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1)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7.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2)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7.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3)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7~8.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4)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8.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마. 소결

동협약의 경우, 법인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8조), 공범 등 가담행위 관련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제15조), 전술한 UN 반부패협약이 규정하는 미수범 관련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의 뇌물범죄를 각각 적극적 뇌물범죄(제7조) 및 소극적 뇌물범죄(제8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또다른 특징이 있다. 전자는 증뢰를, 후자는 수뢰를 의미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뇌물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들 제7조 및 제8조 규정 모두가 작위와 부작위를 그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형사절차법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전술한 UN 반부패협약이나 후술할 OECD 협약과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럽회의 협약인 만큼 당사자국의 지위 및 특성상, 정보교환에 관련된 규정들(제24조 및 제28조~제31조)을 대단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5)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8.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6)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8.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7)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9.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 168)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p.9.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3. OECD 협약: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¹⁶⁹⁾(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가. 의의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은 OECD에 의하여 약칭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¹⁷⁰⁾, 즉 OECD 반부패 협약으로 불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 협약은, 민간부패의 영역 중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라는 한정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차원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후술할 미국의 실정법인 FCPA와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OECD는 2009년 11월 26일에 본 협약과 관련한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Adopted by the Council on 26 November 2009))을 추가하였다.¹⁷¹⁾

나. 가입 당사자

동협약에는 총 44개국이 참여(36개국의 OECD가입국과 8개국의 비가입국)했으며, 국가명은 다음과 같다.¹⁷²⁾¹⁷³⁾

169) 본 협약을 이와 같이 번역하는 견해로는 이천현/홍승희/황지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년, 160면.

170) 본 협약에 대한 이와 같은 약칭은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20에서 사용되고 있음.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171)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22.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172)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atification Status as of May 201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WGBRatificationStatus.pdf> 2018. 9. 19. 최종검색)

〈표 3-5〉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관련 OECD 가입국 및 비가입국 현황

| OECD 가입국 ¹⁷⁴⁾ 175) | OECD 비가입국 ¹⁷⁶⁾ |
|---|--|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2018. 5. 28. 서명) ¹⁷⁷⁾ ,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 중에서 OECD 비가입국인 페루(2018. 5. 28. 서명)가 가장 최근 본 협약에 서명한 국가인 것¹⁷⁸⁾으로 확인된다.

또한 코스타리카(2017년 7. 23. 발효), 라트비아(2014. 5. 30. 발효), 콜롬비아(2013. 1. 19. 발효)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본 협약의 발효가 이루어진 국가들에 해당한다는 점¹⁷⁹⁾이 확인된다.

173) OECD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www.oecd.org/latin-america/countries/peru/> 2018. 9. 19. 최종검색)

174)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IGNATORY COUNTRIES (<http://www.oecd.org/corruption/oecdantibriberyconvention.htm> 2018. 9. 19. 최종검색)

175) OECD Members and partners (<http://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 2018. 9. 19. 최종검색)

176)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IGNATORY COUNTRIES (<http://www.oecd.org/corruption/oecdantibriberyconvention.htm> 2018. 9. 19. 최종검색)

177) 가장 최근 서명한 국가인 관계로, 전술한 자료인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atification Status as of May 201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WGBRatificationStatus.pdf> 2018. 9. 19. 최종검색)에는 페루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OECD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www.oecd.org/latin-america/countries/peru/> 2018. 9. 19. 최종검색)

178) OECD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www.oecd.org/latin-america/countries/peru/> 2018. 9. 19. 최종검색)

179)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atification Status as of May 201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WGBRatificationStatus.pdf> 2018. 9. 19. 최종검색)

다. 구성 및 내용

동협약의 경우, 연구 시점 현재 아직 국내에 협약 전문에 대한 번역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동협약의 경우 전술한 UN 협약에 비해 그 양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동협약의 원문을 대상으로 하되, 동협약 중 민간부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정리한 후, 해당되는 규정 전부를 번역하면 다음 <표 3-6>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¹⁸⁰⁾ 중 민간부패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6>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중 민간부패 관련 규정

|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¹⁸¹⁾ | |
|---|---|
| 제1조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 ¹⁸²⁾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국은, 누구든지 국제상거래에 영업상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공무를 수행함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부정한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제의·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선동, 방조 및 교사, 또는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의 허가를 포함하여 공모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미수와 공모는 당사국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미수와 공모와 같은 정도의 범죄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죄는 이하에서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라고 한다. 4. 본 협약의 목적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외국공무원”이란 외국의 입법·행정·사법부에 직을 갖춘 자로서 임명직 또는 선출직 여부는 불문한다. 즉,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공공 국제기구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b) “외국”이란 국가부터 지방까지 모든 수준과 부분의 정부를 포함한다; c) “공무 수행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란 공무원의 권한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제2조 법인책임 ¹⁸³⁾ | 각 당사국은 각 국의 법 원칙에 따라,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3조 제재 ¹⁸⁴⁾ | 1.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형사처벌로 제재되어야 한다. 처벌의 범위는 당사국의 공무원 뇌물수수에 적용되는 정도와 유사하게 |

180)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7~19.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¹⁸¹⁾ | |
|---|--|
| | <p>하며 자연인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상호 법적 지원과 범죄자 인도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자유박탈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당사국의 법 제도에 따라 법인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금전상의 제재를 포함하여 법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비형사적인 제재를 확보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의 뇌물 그리고 그 수익금, 또는 이러한 수익금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 압수 그리고 몰수 또는 유사한 효과의 금전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제재 대상자에 대해 추가적인 민사·행정적 제재의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 |
| 제4조 관할권 ¹⁸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 자국의 영토 내에서 행해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자국민의 국외범죄를 기소할 관할권을 갖는 각 당사국은 같은 원칙에 따라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 협약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당사국이 1개국 이상인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그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소에 가장 적절한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현재의 관할권을 위한 기초가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와의 대응에 효과적이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5조 집행 ¹⁸⁶⁾ | <p>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각 당사국의 적용법규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 또는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에 대한 고려에 의해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p> |
| 제6조 공소시효 ¹⁸⁷⁾ | <p>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한 적절한 기간¹⁸⁸⁾을 허용해야 한다.</p> |
| 제7조 자금세탁 ¹⁸⁹⁾ | <p>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자국 금전세탁법의 적용 목적을 위한 전제범죄로 규정할 각 당사국은, 뇌물수수의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p> |
| 제8조 회계 ¹⁹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위해 또는 이러한 뇌물을 은닉하기 위해 회사에 의한 장부 외 계좌의 개설, 장부 외 거래 또는 부적절하게 식별된 거래, 부존재 지출의 기록, 허위 서류의 사용뿐만 아니라 책임의 부담을 금지하기 위해 장부 및 기록의 유지, 재무제표 공시, 회계 및 감사 기준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틀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회사의 장부, 기록, 계좌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누락과 왜곡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
| 제9조 사법공조 ¹⁹¹⁾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자는 법률 및 관련 조약 및 약정에 따라 본 협약의 범위에 있는 범죄의 다른 당사국에 의한 형사수사 및 절차를 위해서 그리고 본협약의 범위 내의 법인 대상 비형사절차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 공조를 제공해야 한다. 요청받은 당사국은 공조 요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나 문서 그리고 요청 시 공조 요청의 상태와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

| OECD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¹⁸¹⁾ | |
|---|--|
| | 2. 상호 사법공조를 쌍방가벌성 ¹⁹²⁾ 의 존재를 조건적으로 규정한 경우, 만약 공조가 요구되는 범죄가 본협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쌍방가벌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당사국은 은행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이 협약의 범위 내의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적인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 |
| 제10조 범죄인 인도 ¹⁹³⁾ | 1.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는 당사국간의 법과 조약에 따라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2. 만약 범죄인인도가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본 협약을 외국인 공무원 뇌물수수죄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민을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죄 혐의로 인도 또는 인도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혐의가 있는 자의 인도를 거부한 당사국은 기소를 위해 당사국의 주무관청에 그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4.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범죄인인도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각 당사국간의 조약과 합의에 규정된 조건에 의해 규율된다. 범죄인인도를 쌍방가벌성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범죄인인도가 요구되는 범죄가 본 협약의 제1조의 범위 내에 있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 제11조 책임기관 ¹⁹⁴⁾ | 본협약 제4조 제3항의 협의, 제9조의 상호적 사법공조, 제10조의 범죄인인도의 목적을 위해, 각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수신과 발신에 책임이 있는 OECD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는 당사국 간의 합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 제12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¹⁹⁵⁾ |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완전한 구현을 모니터링하고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당사국들 간에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 상거래의 뇌물수수에 있어 실무협의체 그룹의 틀과 그리고 이의 권한에 따라서 또는 실무협의체 그룹의 기능을 승계하는 자의 틀과 그리고 이의 권한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당사국들은 이러한 조직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181)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7~19.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182)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183)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184)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8.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185)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8.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라. 소결: 한정된 적용대상 중심의 규정체계

요약하자면, OECD의 동협약의 경우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가벌성 확보를 위한 각 당사자국의 입법적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동협약 제2조는 법인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적절한 기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UN 반부패협약이 공소시효 기간을 장기¹⁹⁶⁾로 규정할 것¹⁹⁷⁾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
- 186)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9.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87)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9.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88) ‘an adequate period of time’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9.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89)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9.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90)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9.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91)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10.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92) ‘Dual Criminality’ 또는 ‘Double Criminality’를 이와 같이 번역함. NAVER 영어사전 “Dual Criminality” 검색. (<https://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ae51e1773ad64920966487c9ccaa08b6> 2018. 10. 16. 최종검색)
- 193)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10.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94)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1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95)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p.1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196) 원문은 ‘a long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및 ‘a longer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7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 197)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3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

그리고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동협약 제7조는 자금세탁을, 제9조는 사법 공조를, 제10조는 범죄인인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협약들과 대동 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협약들과 유사하게, 제12조는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 협약의 이행 관련 통계

1) 전반적 상황

OECD는 당해 협약 개별 가입국에서의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통계를 홈페이지¹⁹⁸⁾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하여, 협약이 발효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민간부패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과 관련된 최종적 판결 내지 결정이 수집되고 있는 것¹⁹⁹⁾으로 파악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의 경우,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관련 제재를 새로이 입법한 국가들로 ‘뇌물에 대한 OECD 실무협의체 그룹(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WGB))’ 리스트에 추가되었다고 한다.²⁰⁰⁾

2) 제재 현황

또한 동 협약이 발효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443명의 개인 및 158개의 단체가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인하여 형사제재를 받았으며, 이중 최소 125명의 개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²⁰¹⁾ 또한 4개 가입국

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198)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http://www.oecd.org/daf/anti-bribery/data-on-enforcement-of-the-anti-bribery-convention.htm> 2018. 9. 20. 최종검색)

199)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http://www.oecd.org/daf/anti-bribery/data-on-enforcement-of-the-anti-bribery-convention.htm> 2018. 9. 20. 최종검색)

200)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http://www.oecd.org/daf/anti-bribery/data-on-enforcement-of-the-anti-bribery-convention.htm> 2018. 9. 20. 최종검색)

201)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p.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검색)

의 최소 53명의 개인 및 95개의 단체가 행정적·민사적 제재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²⁰²⁾ 그리고 8개 가입국의 최소 121명의 개인 및 235개 단체가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관련된 돈세탁 또는 회계부정 등 기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를 부과 받았다.²⁰³⁾ 그밖에 29개 가입국에서 500건 이상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11개 가입국에서 125명의 개인 및 19개 단체를 대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다.²⁰⁴⁾

3) 입법적 대응

한편 2016년의 경우, 동 협약의 가입국들 중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에서 해외 뇌물 제공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법률들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중에서도 우선 프랑스의 경우 2016년 12월 반부패청을 설립하고 새로운 범죄유형 및 형사제재를 신설하였다고 한다(Loi Sapin II).²⁰⁵⁾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이른바 내부고발청법(Wet Huis Klokkenluiders)²⁰⁶⁾이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는 기관내 불법행위의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며, 내부고발청을 주무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관련 불법행위 신고의 결과로 내부고발청에 의한 수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²⁰⁷⁾ 또한 슬로바키

202)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p.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 검색)

203)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p.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 검색)

204)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p.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 검색)

205)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p.3.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 검색)

206) Klokkenluiders가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Wet Huis Klokkenluiders를 직역하면 '내부고발자 청법'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지만, 전반적인 의미를 존중하여 '내부고발청법'으로 번역하도록 함. 구글 "Klokkenluiders" 검색. (<https://translate.google.co.kr/?hl=ko&tab=wT#nl/ko/Klokkenluiders> 2018. 11. 26. 최종검색)

아 공화국(Slovak Republic)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에 있어서 법인의 처벌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라는 ‘뇌물에 대한 OECD 실무협약체 그룹(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WGB))’의 권고안을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이 수용한 결과이다.²⁰⁸⁾

4. 검토: 3개 주요 국제협약의 규정사항 비교

전술한 3개 주요 국제협약의 경우, 민간부패와 관련하여 비교적 대등소이한 이름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위 3개 협약의 규정들을 매우 간략히 표로 정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위 3개 협약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협약들에는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지만, 당해 협약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경우 ‘없음’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표 3-7〉 3개 국제협약의 규정사항 비교

| UN | Council of Europe | OECD | 내용 |
|---|--|----------------------------|-------------|
| Article 2 (용어의 사용) | Article 1 (용어의 사용) | Article 1 (용어의 사용) | 용어의 사용 |
| Article 14 (자금세탁 방지조치) Article 23 (범죄수익의 세탁) | Article 13 (부패범죄로 얻은 수익의 자금세탁) | Article 7 (자금세탁) | 자금세탁 |
| Article 16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 Article 5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Article 6 (외국의회 구성원의 뇌물수수) Article 9 | Article 1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

207)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p.3.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 검색)

208)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p.3.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 검색)

| UN | Council of Europe | OECD | 내용 |
|--|--|-----------------------|------------------------|
| |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수수) | | |
| Article 18 (영향력에 의한 거래) | Article 12 (영향력에 의한 거래) | 규정 없음 | 영향력에 의한 거래 |
| Article 21 (민간부분의 뇌물수수) | Article 7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 뇌물수수) Article 8 (민간부문에서의 소극적 뇌물수수) | 규정 없음 | 민간부분의 뇌물수수 |
| Article 26 (법인의 책임) | Article 18 (법인의 책임) | Article 2 (법인의 책임) | 법인의 책임 |
| Article 27 (참가와 미수) | Article 15 (가담행위) | 규정 없음 | 미수 및 공범 등 형태로의 범죄참가 일반 |
| Article 29 (공소시효) | 규정 없음 | Article 6 (공소시효) | 공소시효 |
| Article 30 (소추·재판과 제재) | Article 19 (제재 및 조치) | Article 3 (제재) | 처벌(제재) |
| Article 31 (동결·압수와 몰수) Article 54 (몰수 관련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Article 55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 Article 23 (증거수집 및 범죄수익금 몰수의 촉진조치) | 규정 없음 | 몰수 |
| Article 32 (증인·감정인과 피해자의 보호) Article 33 (신고자 보호) | Article 22 (협조자 및 증인 보호) | 규정 없음 | 증인 보호 |
| Article 36 (전문기관) | Article 20 (전문기관) Article 29 (중앙기관) | Article 11 (책임기관) | 기관 |
| Article 37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²⁰⁹) | Article 16 (면제) | 규정 없음 | 면제 |
| Article 38 (국가기관 간의 협력) | Article 21 (국가기관 간의 협력) | Article 9 (사법공조) | 국가기관 간의 협력 |
| Article 42 (관할권) | Article 17 (관할권) | Article 4 (관할권) | 관할권 |
| Article 43 (국제협력) | Article 25 (국제협역을 위한 일반 원칙과 조치) | Article 9 (사법공조) | 국제협력 |

| UN | Council of Europe | OECD | 내용 |
|--|--|---|------------|
| Article 44 (범죄인인도) | Article 27 (범죄인인도) | Article 10 (범죄인인도) | 범죄인인도 |
| Article 46 (사법공조) | Article 26 (공조) | Article 9 (사법공조) | 사법공조 |
| Article 61 (부패 관련 정보의 수집· 교환 및 분석) | Article 28 (자발적 정보) Article 29 (중앙기관) Article 30 (직접적 의사소통) Article 31 (정보) Article 24 (모니터링) | Article 12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 정보교환; 모니터링 |
| 규정 없음 | Article 14 (회계부정범죄) : 불투명한 회계를 범죄 로 규정 | Article 8 (회계) : 뇌물방지를 위한 투명한 회계 | 회계 |

위와 같이 3개 주요 국제협약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자금세탁,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 법인의 형사책임, 제재 및 처벌, 부패 관련 전문기관, 국가기관 간의 협력, 관할권, 국제협력, 범죄인인도, 사법공조,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들이다.

UN 반부패협약에만 누락되어 있는 것은 회계부정범죄 등 회계 관련 사항이다. 유럽회의 협약에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공소시효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OECD 협약에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적지 않은데, 이는 영향력에 의한 거래,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미수 및 공범 등 형태로의 범죄참가 일반, 몰수, 증인보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면책 내지 면제에 관한 사항들이다. 아무래도 OECD 협약의 경우에는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9) 이를 통한 소추면제에 관한 사항임(제37조).

제2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영국 뇌물법 검토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가. 의의

1977년 제정된 미국의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FCPA), 즉 해외 부패방지법²¹⁰⁾ 중 회계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제외한 규정들(15 U.S.C. § 78dd-1, 15 U.S.C. §78dd-2, 15 U.S.C. §78dd-3, 15 U.S.C. §78ff²¹¹⁾)은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을 매우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동법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다루는 법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법률은 해외에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둘째, 회계부정행위 역시 동법이 규제하는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해외에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차원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한 기회를 얻어내거나 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해외 공무원, 즉 외국공무원의 조력행위를 얻어내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²⁾ 결국 동법은 민간부패 전반을 규율의 대상으로 한 법령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해외부패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범위가 민간부패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동법상의 회계부정행위 관련 규제사항들은 제외하고 대신 해외에서의 부패관련행위,

210) 이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지칭하기 위하여,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칭인 'FCPA'로 표기하도록 함. 예를 들어 김종범/김준기, “부패·무역 연계에 대한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통상법률 제12호, 1996년 12월, 99면; 육태우, “미국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제도적 진화과정 및 최근의 판례법상의 적용-”, 강원법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년 6월, 138면; 윤충원,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6권 제2호, 2011년 4월, 84면.

211)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foreign-corrupt-practices-act> 2018. 10. 25. 최종검색)

212)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foreign-corrupt-practices-act> 2018. 10. 25. 최종검색)

즉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관련 규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나. 구성 및 내용

미국 FCPA 규정들 중 전술한 해외부패방지와 관련된 규정은 총 4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들 4개의 규정이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하는 형사적 제재 규정이라는 점에 있다. 이 4개의 규정이 형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5 U.S.C. §78dd-1. 발행자가 행해선 안 될 국외 무역관행, 15 U.S.C. §78dd-2. 국내업체(Domestic Concern)²¹³⁾가 행해선 안 될 국외 무역관행, 15 U.S.C. §78dd-3. 발행자 및 국내업체 이외의 자가 행해선 안 될 국외 무역관행, 그리고 15 U.S.C. §78ff. 처벌규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규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범죄의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4개의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나치게 방대한 것은 물론, 규정 자체도 매우 길면서 중복적인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제공하는 FCPA에 대한 각 언어별 번역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한다.²¹⁴⁾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²¹⁵⁾의 경우 -다른 번역문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번역문이 전혀 아니고,²¹⁶⁾ 대폭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표현 및 상당한 혼동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문을 다시 번역하고 정리를 하여 다음과 같이 FCPA의 주요 규율 사항들을 범죄의 주체, 대상자,

213) 15 U.S.C. §78dd-2. (h)(1)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214)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 78dd-1, et seq.)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statutes-regulations> 2018. 10. 12. 최종검색)

215)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 78dd-1, et seq.), Korean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2/11/14/fcpa-korean.pdf> 2018. 10. 12. 최종검색)

216) 미연방법무부는 이와 같은 FCPA의 영문 이외의 언어로의 번역문이 공식적인 번역문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오로지 영문 버전만이 공식적인 문서임도 함께 명시하고 있음.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 78dd-1, et seq.)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statutes-regulations> 2018. 10. 12. 최종검색)

주관적 목적, 행위, 예외, 항변사유, 그리고 적용될 형사처벌 등의 각 요소별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였다. 이를 아래와 같이, 3개의 조문(15 U.S.C. §78dd-1. 15 U.S.C. §78dd-2. 15 U.S.C. §78dd-3.²¹⁷⁾)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미국 FCPA 규정상 형사적 제재 관련 요소

| | | | |
|-----|--|---|--|
| 규정 | 15 U.S.C. §78dd-1. ²¹⁸⁾ 발행자가 행해선 안 될 국외 무역관행 | 15 U.S.C. §78dd-2. ²¹⁹⁾ 국내업체 ²²⁰⁾ 가 행해선 안 될 국외 무역관행 | 15 U.S.C. §78dd-3. ²²¹⁾ 발행자 및 국내업체 이외의 자가 행해선 안 될 국외 무역관행 |
| 주체 | 본편 제78i조에 따른 증권등록의 발행자, 본편 제78o (d)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자, 발행자를 대신하는 임원, 이사, 직원, 발행자나 해당 주주 대리인 (15 U.S.C. §78dd-1. (a)) | 15 U.S.C. §78dd-1.의 발행자를 제외한 국내업체, 임원, 이사, 직원 또는 국내업체의 대행사 또는 국내업체를 대신하는 주주(15 U.S.C. §78dd-2. (a)) | 15 U.S.C. §78dd-1.의 발행자, 15 U.S.C. §78dd-2. 국내업체 ²²²⁾ 이외의 자 또는 임원, 이사, 직원, 그러한 자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자를 대표하는 주주(15 U.S.C. §78dd-3. (a)) |
| 대상자 | 외국 공무원(15 U.S.C. §78dd-1. (a) (1)), 외국 정당, 외국 정당 당직자, 외국 정당 후보자 (15 U.S.C. §78dd-1. (a) (2)) | 좌동 (15 U.S.C. §78dd-2. (a) (1), 15 U.S.C. §78dd-2. (a) (2)) | 좌동 (15 U.S.C. §78dd-3. (a) (1), 15 U.S.C. §78dd-3. (a) (2)) |
| 목적 | 발행자의 거래획득 또는 거래유지 목적으로, 또는 그 외에 어느 누구든지 바로 그 자에게로 거래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15 U.S.C. §78dd-1. (a) (1), (2), (3)), 위 대상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며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거나, 부적절 이익을 추구하는 것(15 U.S.C. §78dd-1. (a) (1), (2)), 위 대상자들이 정부, 대행기관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게 위해 영향력 행사를 유도(15 U.S.C. §78dd-1. (a) (1), (2))하거나, 금전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위 대상자들에게 제안하거나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의 목적을 | 국내업체의 거래획득 또는 거래유지 목적으로, 또는 그 외에 어느 누구든지 바로 그 자에게로 거래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15 U.S.C. §78dd-2. (a) (1), (2), (3)), 위 대상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며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거나, 부적절 이익을 추구하는 것(15 U.S.C. §78dd-2. (a) (1), (2)), 위 대상자들이 정부, 대행기관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게 위해 영향력 행사를 유도(15 U.S.C. §78dd-2. (a) (1), (2))하거나, 금전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위 대상자들에게 제안하거나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의 목적을 | 발행자 및 국내업체를 제외한 대상자의 거래획득 또는 거래유지 목적으로, 또는 그 외에 어느 누구든지 바로 그 자에게로 거래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15 U.S.C. §78dd-3. (a) (1), (2), (3)), 위 대상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며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거나, 부적절 이익을 추구하는 것(15 U.S.C. §78dd-3. (a) (1), (2)), 위 대상자들이 정부, 대행기관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게 위해 영향력 행사를 유도(15 U.S.C. §78dd-3. (a) (1), (2))하거나, 금전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위 대상자들에게 제안하거나 공여하거나 |

217) 15 U.S.C. §78ff. 규정은 표를 통하여 후술할 바와 같이, 이들 규정 중 특히 15 U.S.C. § 78dd-1. 의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요약 가능함.

| | | | |
|-------|---|--|--|
| | 갖는 경우(15 U.S.C. §78dd-1. (a) (3)) | 갖는 경우(15 U.S.C. §78dd-2. (a) (3)) | 나 이를 약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의 목적을 갖는 경우(15 U.S.C. §78dd-3. (a) (3)) |
| 행위 | 제의, 지불, 지불약속 또는 금전지불승인 또는 제안, 선물, 선물약속, 또는 가치 있는 물품을 주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편, 기타 수단, 또는 국가 간 또는 주간 통상 ²²³⁾ 을 이용(15 U.S.C. §78dd-1. (a)) | 좌동 ²²⁴⁾ (15 U.S.C. §78dd-2. (a)) | 전술한 주체가 미국 내에 있는 동안에 제의, 지불, 지불약속 또는 금전지불승인 또는 제안, 선물, 선물약속, 또는 가치 있는 물품을 주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편, 기타 수단, 또는 국가 간 또는 주간 통상 ²²⁵⁾ 을 이용(15 U.S.C. §78dd-3. (a)) |
| 예외 | 위 대상자들에 의한 일반적 정부행위 수행의 진척, 보장 목적으로 위 대상자들에 대한 유효성 지불 ²²⁶⁾ (227)(15 U.S.C. §78dd-1. (b)) | 좌동 (15 U.S.C. §78dd-2. (b)) | 좌동 (15 U.S.C. §78dd-3. (b)) |
| 항변 사유 | 위 대상자들에게 지급된 금전, 선물, 제안 또는 가치 있는 물품 등이 위 대상자들의 해당 국가 성문법 등 법령에 의해 합법적인 것이거나, 위 금전 등이 위 대상자들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생산품 또는 서비스 판매촉진, 선전이나 설명, 외국정부나 외국정부의 대리인과의 계약 실행이나 이행과 관련되어 여행경비 또는 숙박경비와 같은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선의에 해당하는 지출(15 U.S.C. §78dd-1. (c)) | 좌동 (15 U.S.C. §78dd-2. (c)) | 좌동 (15 U.S.C. §78dd-3. (c)) |
| 형사 처벌 | 발행자에 대한 2백만 달러 이하 벌금형(15 U.S.C. §78ff. (c) (1) (A)), 임원, 이사, 직원, 발행자 대리인 또는 대표하는 주주에게는 10만 달러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이러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병과(15 U.S.C. §78ff. ²²⁸⁾ (c) (2) (A)) | 자연인 아닌 국내업체에 대하여 2백만 달러 이하 벌금형(15 U.S.C. §78dd-2. (g) (1) (A)), 자연인인 임원, 이사, 직원, 또는 국내업체를 대표하는 주주에게는 10만 달러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이러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병과(15 U.S.C. §78dd-2. (g) (2) (A)) |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백만 달러 이하 벌금형(15 U.S.C. §78dd-3. (e) (1) (A)),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만 달러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이러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병과(15 U.S.C. §78dd-3. (e) (2) (A)) |

218)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p.2.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2/11/14/fcpa-english.pdf> 2018. 12. 3. 최종검색)

다. 소결: 한정된 대상과 광범위한 적용영역의 딜레마

FCPA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문제만을 한정하되, 관련 사항을 불과 4개의 조문안에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각각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15 U.S.C. §78dd-1.과 15 U.S.C. §78dd-2. 및 15 U.S.C. §78dd-3.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체를 제외한 행위태양이나 목적 등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의 예외 및 항변사유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219)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p.6.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2/11/14/fcpa-english.pdf> 2018. 12. 3. 최종검색)
- 220)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 221)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p.11.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2/11/14/fcpa-english.pdf> 2018. 12. 3. 최종검색)
- 222) 미국을 주요한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 223) 동법에서의 'interstate commerce'를 국가 간 또는 주간 통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The Criminal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Enforcement Division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CPA: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12. 11. p.11.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5/01/16/guide.pdf> 2018. 10. 12. 최종검색)
- 224) 동법에서의 'interstate commerce'를 국가 간 또는 주간 통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15 U.S.C. §78dd-2. (h) (5)).
- 225) 동법에서의 'interstate commerce'를 국가 간 또는 주간 통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15 U.S.C. §78dd-3. (f) (5)).
- 226) 'grease payment'에 대한 번역이 일관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편의상 '윤활성 지불'로 표기하기로 함.
- 227) 'facilitating payment'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는 기왕에 존재하는 계약이나 협상을 진척되게 하는 목적의 지불을 말하며,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이나 협상을 만들어 내거나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지불이라면 이는 이미 뇌물이 된다고 요약 가능함. Hurd Baruch,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arvard Business Review, Jan. 1979. (<https://hbr.org/1979/01/the-foreign-corrupt-practices-act> 2018. 12. 4. 최종검색)
- 228) 15 U.S.C. §78ff.규정은 15 U.S.C. §78dd-2. 및 15 U.S.C. §78dd-3.에 대하여 적용되는 처벌규정은 아님.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p.15.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2/11/14/fcpa-english.pdf> 2018. 12. 3. 최종검색)

결론적으로 동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미국과의 관련성있는 모든 해외부패범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법이 해외부패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형사처벌의 실제 실행 가능 여부는, 결국 당해 법령의 제정 당사국이 갖는 국력에 상응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 영국 뇌물법(The Bribery Act 2010)

가. 의의

영국 뇌물법(The Bribery Act 2010)은 기존 보통법상의 뇌물죄, 1889년 공공기관부패관행법(the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 1906년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및 1916년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상의 범죄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익의 제공·약속 등 이른바 증뢰행위에 대한 사항 및 이익의 요구·수락 등 이른바 수뢰행위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²²⁹⁾

특히 동법은 기존 법률들과 달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기업 등) 상업적 목적의 조직 내지 영리단체가 뇌물제공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역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³⁰⁾ 즉 적극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치 내지 방임 등 부작위에 가까운 경우 역시 규정상으로는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내용 및 구성

1) 개관

이러한 영국 뇌물법은 전술한 국제협약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민간에서의 부패로 이해되는 영역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동법의 제정은 전술한 OECD 협약 체결 이후인 2010년에 이루어진 바, -다른

229) legislation.gov.uk, Bribery Act 201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23/notes/division/2> 2018. 10. 25. 최종검색)

230) legislation.gov.uk, Bribery Act 201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23/notes/division/2> 2018. 10. 25. 최종검색)

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국내 및 해외 뇌물죄를 하나의 법령에 규정하는 등 독특한 뇌물법 체계의 구축²³¹⁾은 물론- 명확성 측면에서 동협약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법 규정들 중, 특히 민간부패에 대한 규율사항으로 볼 수 있는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앞서 살펴본 3개 국제협약들 및 미국 FCPA에 대하여 적용한 연구방법과 동일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각의 절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절의 서두에서 총괄하여 요약하여 서술한 후, 다시 당해 절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각 규정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한다. 동법의 경우 전술한 국제협약들 및 미국 FCPA와는 달리, 각각의 절에서 관련성있는 규정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각의 절을 소개하며 해당 절에 속하는 개별 규정들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 후, 관련 규정들을 가급적 각각의 절을 중심으로 함께 소개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국제협약들 및 미국 FCPA와는 달리 표를 사용한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한다.

2) 일반 뇌물범죄의 절

(1) 규정 전반

본절(제1조 내지 제5조)에서는 일반뇌물범죄를 다루고 있다. 후술할 바와 같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공여’와 ‘수수’라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범위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3조에서 ‘뇌물과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면서도 넓게 규정하며, 제4조에서는 무엇이 부적절한 직무의 수행인지 여부를, 제5조에서는 바로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부적절성의 기대기준이란 무엇인지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까지 넓게 뇌물범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본 절의 규정들은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적용됨으로써 법령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231) 오택림, “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FCPA, UK Bribery Act 등 외국 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조 제62권 제10호, 법조협회, 2013년, 160면.

(2) 뇌물공여 및 수수

뇌물을 주는 자에 대한 규율 사항이 가장 먼저 규정되어 있다.

우선 <경우 1> 뇌물을 제공하는 자가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 또는 그 외 기타의 이익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며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타인을 유도” 또는 보상하는 경우를 처벌한다.²³²⁾

다음으로 <경우 2> 뇌물의 제공자가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 또는 그 외 기타의 이익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면서 그러한 “이익의 수수 그자체가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믿는 경우를 처벌한다.²³³⁾

영국뇌물법은 이상과 같이 제1조의 뇌물공여죄가 <경우 1>과 <경우 2>를 규정하고, 이어서 후술할 제2조의 뇌물수수죄가 <경우 3>~<경우 6>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술한 제1조의 뇌물공여죄에 이어, 동규정은 바로 뇌물을 받는 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경우 3> “뇌물수수자가 그 대가로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직접 또는 제3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수행할 의도로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처벌한다.²³⁴⁾ 즉 부적절한 직무의 수행 전 미리 뇌물을 받기로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우 4> “뇌물수수자가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이면서 동시에 “요구, 수수의 동의 또는 수수 그 자체가” 뇌물의 수수자의 관련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232)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4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33)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4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34)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경우를 처벌한다.²³⁵⁾ 즉 뇌물의 수수행위 그 자체가 바로 부적절한 직무의 수행인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경우 5> “뇌물수수자 또는 타인이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한 대가로 뇌물수수자가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처벌한다.²³⁶⁾ 즉 부적절한 직무의 수행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사후수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우 6> “뇌물수수자가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하거나,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또는 그렇게 한 결과로써” 뇌물 수수자 또는 뇌물수수자의 요청이나 동의 혹은 묵인에 따른 타인이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를 역시 처벌한다.²³⁷⁾ 즉 요구·동의·기대의 결과 뇌물의 수수자 또는 제3자가 부적절한 직무의 수행을 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직무·활동 개념 및 기대기준

뇌물 관련 직무·활동의 개념(제3조) 규정은 뇌물제공죄 및 뇌물수수죄 등에서의 뇌물과 관련된 직무와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규정이다. 즉 동법 적용에 있어서 “관련된 직무 및 활동”이란 “(a) 공적인 성질을 갖는 직무 (b) 사업과 관련된 활동 (c)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 (d)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리하여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가 이를 A. “성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B.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C. “고도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235)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36)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37)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²³⁸⁾ 즉, 전술한 A. B. C. 중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뇌물 관련 부적절 수행(제4조)에 관한 규정 중 제1항 (a)는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이 관련된 기대에서 벗어나 수행된 경우”를 규정하며,²³⁹⁾ 이는 후술한 규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작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제4조 제1항 (b)는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부작위가 관련된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를 규정하며,²⁴⁰⁾ 이는 위 작위에 대응하는 부작위를 규정한 것이다.

즉 작위와 부작위의 경우 모두가 동범상의 규율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동범 제3조 및 제4조의 해석과 관련 동범은 기대 수준의 심사(제5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즉 기대 수준이라고 하면 이는 “해당 유형의 직무 또는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영국 내의 합리적인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을 말하며, 특히 관습이나 관행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서²⁴¹⁾ 특정 비즈니스 영역 내지 특정 지역 등에서의 뇌물제공 및 뇌물수수의 관행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38)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8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39)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8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40)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8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41)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0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3)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의 절

동법 이하의 규정들에서 역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어 소개를 피할 수 없다. 즉 일반적인 공직부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에 대응하여, 본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 제공(제6조) 중 제1항 및 제2항은 뇌물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 활동상의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할 목적을 갖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외국 공무원이 담당하는 당해 직무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²⁴²⁾ 즉 우리나라의 형법학에서 말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6조 제3항은 뇌물제공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이익을” “외국 공무원 또는 그의 요청이나 동의 또는 묵인”에 따라 타인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⁴³⁾

4) 영리목적 단체의 뇌물예방 실패의 절

동법 본절(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이른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뇌물범죄를 다루고 있다. 우선 후술할 바와 같이 제7조는 영리단체의 관계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뇌물 제공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에 다시 면책규정(제7조 제2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영리단체가 뇌물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후술할 바와 같이 동법 제8조에서는 영리단체의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본절에 있어서의 뇌물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42)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0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43)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2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동법 제9조에서는 전술한 제7조상 면책규정에서 언급된 영리단체의 뇌물예방절차에 기초가 되는 지침이 무엇인지를 다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본절 또한 각 규정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우선 영리목적 단체의 뇌물예방 실패(제7조) 중 제1항은 관련 영리목적의 단체와 관계있는 자가 이러한 “영리단체의 사업 획득·유지 또는 영리단체를 위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이익의 획득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²⁴⁴⁾

제7조 제2항은 위 제7조 제1항에 대한 단서규정으로 면책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관계자가 뇌물제공의 예방을 위하여 구비된 적절한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입증의 향변을 통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⁴⁵⁾ 뇌물제공 예방을 위한 절차 시행 사실 입증의 향변이므로, 일종의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하는 절차 내지 기구의 구비 여부가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관계자 개념(제8조) 중 제1항은 전술한 동법 제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리단체를 위하여 또는 영리단체를 대리하는 업무수행자를 영리단체와 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는 것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²⁴⁶⁾

제8조 제3항은 이러한 영리단체의 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자회사도 이러한 관계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규정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²⁴⁷⁾라고 규정하

244)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4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45)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4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46)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고 있다는 점²⁴⁸⁾에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관계자를 규정하고 있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관계자에 대하여는 보다 확장적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자에 대한 확장적 해석의 정도에 따라 동법에 따른 가별성의 범위가 종속될 여지를 도외시킬 수 없어 보인다.

제8조 제4항은 이러한 관계자가 영리단체를 위하여 또는 영리단체를 대리하는 업무 수행자인지의 여부는, 모든 관련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²⁴⁹⁾ 관련된 모든 정황의 종합적 고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리목적 단체의 뇌물제공 예방 지침(제9조)에 관한 규정 중 제1항은 관계자의 뇌물제공 예방을 위한 영리단체의 실시 가능한 절차에 대한 지침(guidance)의 발행의무가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²⁵⁰⁾ 전술한 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책가능성의 적용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인다.

5) 기소 및 처벌의 절

제10조에서는 기소에 있어서의 동의 권한을, 제11조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247) 영문규정이 바로 'for example'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7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48)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49)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50)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6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처벌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우선 기소에 대한 동의 권한(제10조) 규정 중 제1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법에 대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송절차가 검찰총장 등²⁵¹⁾ 관련 기관장의 동의없이는 개시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동법상의 기소를 통한 형사소송의 개시에 있어서 전술한 기관장들의 동의는 필요적 요건이다. 이들 기관장에 의한 동의가 필요적 요건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동법상 규정된 부패관련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제11조) 규정 중 제1항은 동법 제1조, 제2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개인에 대한 약식판결의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형, 또는 이러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함을 규정하면서, 정식재판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이러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함²⁵²⁾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3항은 동법 제7조(영리목적 단체의 뇌물예방 실패)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의 경우에 벌금형으로 처벌함²⁵³⁾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6) 범죄행위 관련 기타 조항의 질

동법의 본질(제12조 내지 제15조) 중 특히 제12조는 후술할 바와 같이 본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며, 범죄행위가 영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영국 외에서

251)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8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52)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0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53)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0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일어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도 영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전자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후술할 바와 같이 상당히 넓게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장소적 적용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법 제13조는 정보업무 및 군사 업무와 관련되어 항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정보 및 군사업무에 있어서의 면책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는 동법의 법인책임 관련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 또는 실무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다.

이 중에서도 우선 제12조(동법에 따른 범죄행위: 장소적 적용) 제1항은 동법 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가 영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²⁵⁴⁾ 여기에서도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양자를 당연히 동등하게 보고 있다.

한편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행위가, (a) 비록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b) 만약 당해 작위 또는 부작위가 영국에서 발생했다라면 당해 범죄행위의 일부를 구성하였을 것이면서, 동시에 (c) 행위자 역시 영국과 밀접한 관계(a close connection)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소송절차는 영국 어느 장소에서라도 진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²⁵⁵⁾

제12조 제4항은 특히 동법상 영국과의 밀접한 관계(a close connection)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국민, 영국 해외영토 시민, 영국 국적자(해외), 영국 해외 시민”은 물론 “영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Ordinarily resident) 개인,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 스코틀랜드 합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²⁵⁶⁾하고 있어서,

254)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2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55)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2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그 범위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통상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 등을 포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의 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행위가 영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영국 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는 있으나, 후자의 경우도 영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전자와 동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차이는 없으며, ‘밀접한 관계’의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동법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장된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항변사유(제13조) 규정 중 제1항은 구체적인 항변사유로, 뇌물관련 범죄로 기소된 자가 자신의 행위는 (a) 정보기관의 적절할 기능 수행 또는 (b) 임무 수행 중인 군대의 원활한 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⁷⁾ 국가안보 내지 공공의 안녕 등으로 표현되는, 비교적 추상적인 국법질서의 보장 목적을 보다 상세화·구체화하여 규정한 경우라고 여겨진다. 이를 통하여 부패행위의 처벌 면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법인 등의 범죄행위(제14조) 규정 중 제1항 및 제2항은 “법인 또는 스코틀랜드 합자회사의 고위 경영진 또는 해당 지위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동의 및 묵인에 의해 당해 범죄행위가 범해졌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당해 고위경영진 등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을 규정한다.²⁵⁸⁾ 동의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묵인을 처벌대상 행위로

256)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2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57)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4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58)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8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직접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고위 경영진의 처벌회피에 있어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침묵 내지 묵시적 동의 등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14조 제4항은 특히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경영진'이란, 법인의 이사, 지배인, 총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영진 또는 스코틀랜드 합자회사의 합자회사 파트너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²⁵⁹⁾

제14조 제3항은 동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영국 영토 외에서 발생)에 해당하는 동법 제1조,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경우, 동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되, 다시 동법 단서는 그러한 자가 동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하는 영국과의 밀접한 관계(a close connection)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함을 규정한다.²⁶⁰⁾

즉 동법의 법인책임 관련 규정은 바로 전술한 일정 요건의 충족시,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있는 고위경영진 또는 실무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7) 그 외 민간부패와 관련성이 없는 규정들의 절

한편 그 외 나머지 규정들인 제15조(합자회사에 의한 제7조 위반) 및 보칙 및 최종조항하의 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7조(다른 법률 및 명령관의 관계), 제18조(적용범위), 제19조(시행일 및 경과 규정 등), 제20조(약칭)의 경우, 본 연구의 주제인 민간부패와 직·간접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이들 규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59)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8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60)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28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다. 소결: 유기적 체계의 구비와 광범위한 장소적 적용범위

동법은 전술한 미국 FCPA와 달리, 각각의 규정이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즉 동법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법령으로 통일성 내지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술한 다른 협약이나 미국 FCPA와 달리, 수뢰 및 증뢰의 경우 6가지를 제1조 및 제2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시 및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뇌물 관련 직무·활동의 개념(제3조)을 직접 규정하여 명확성을 추구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 수준의 심사(제5조)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위 직무 내지 활동의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법은 영리목적 단체의 뇌물예방 실패(제7조) 중 제2항에서 증뢰 예방을 위한 절차 구비 여부의 입증을 통해 위 영리목적 단체의 형사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절차 구비 여부를 통해 법인 등의 형사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제12조에서 '밀접한 관계'를 규정함을 통해 장소적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에 있다. 결국 동법 역시 전술한 미국 FCPA가 갖는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의 무한정적인 확장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동법상 항변사유(제13조)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 등 추상적인 법익 보호 목적의 적용 예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제3절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의 최근 경향: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있어서 제3자(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최근 개정)

1. 의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의 경우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개정 노력이 있어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2. 국제협약으로부터의 시사점

먼저 전술한 국제협약들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우선 OECD 협약은 외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의 경우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즉 동협약 제1조 제1항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기 위한 논거 내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유럽회의 협약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제5조에서 각 당사국은 타국의 공무원에 관련된 제2조²⁶¹⁾ 및 제3조²⁶²⁾의 행위를 자국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따르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동 협약 제2조 및 제3조). 결국 뇌물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논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61) 누구든지 고의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의, 제공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임(제2조).

262) 공무원이 고의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정한 이익의 제의 또는 약속을 수락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임(제3조).

또한 UN 반부패협약의 경우에도, 제16조에서 “직·간접적으로”²⁶³⁾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술한 유럽회의의 협약과 같이, 그 뇌물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다음으로 전술한 영국의 실정법인 The Bribery Act 2010 제6조(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 제공) 제3항은 뇌물제공자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요청이나 외국공무원의 동의 또는 묵인에 따른 타인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²⁶⁴⁾이 명확한 만큼, 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결어

우리 국회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즉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의 뇌물을 제공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²⁶⁵⁾

동개정안은 2018. 11. 29.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되며,²⁶⁶⁾ 이에

263)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4면.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2018. 9. 28. 최종검색)

264)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12~13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8. 9. 28. 최종검색)

26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530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W8U0R9W0Y4G1M4X5E6F5D0E9I1R2 2018. 12. 5. 최종검색)

26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530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따라 외국공무원에게의 증뢰와 관련하여서도, 제3자에게의 뇌물제공의 경우 역시 이 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 4 장

○ —————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이 천 현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

제1절 민간부패 처벌규정

우리나라에는 민간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단행법률 또는 통합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 각 영역별 관련 행정법령에서 부분적이고 개별적으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형사처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에는 총 372개 조문 가운데 1개 조문(제357조, 배임수증재)만이 민간부패를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상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에서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에 대한 특별(가중)규정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행정 영역에서 규제 등을 위하여 제정되어 있는 현행 총 1,500 여개의 행정법령 가운데 약 50여개의 법령에만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형법을 포함하여 약 1,500 여개의 현행 행정법령 가운데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만을 모두 검색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분류·검토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⁶⁷⁾

26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제2절 민간부패 처벌규정과 정비방안

1. 형법과 형사특별법 등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처벌규정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법 제357조)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약함)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증재죄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등에 대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

1) 배임수증재죄와 개정(2016년)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증재죄는 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57조 제2항).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배임수증재죄에서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법 제357조 제3항). 그리고 배임수증재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법 제358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법 제359조).

〈표 4-1〉 형법 제357조의 개정(2016년)

| 형법 [법률 제5057호, 1995.12.29, 일부개정] | 형법 [법률 제14178호, 2016.5.29, 일부개정] |
|--|--|
|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배임수증죄(제357조) 규정은 - 1953년 형법 제정(법률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10.3. 시행)시 규정되어 그대로 유지되다가 - 2016년에 개정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할 있도록 하였다. 즉 “(종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증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배임수증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그 제3자가 배임수증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⁶⁸⁾

이러한 개정을 통해 - 독일형법 제299조와 유사하게 - 이익귀속의 주체가 제3자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 한계와 개정방안

2016년의 위에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배임수증죄 규정에는 ① 행위의 객체가 “재산 또는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뢰죄에서의 “뇌물”보

268) 형법 개정(법률 제14178호, 2016.5.29. 개정, 2016.5.29. 시행) 이유 참조.

다는 혐의개념이라 할 수 있고, ② 재산 또는 재산적 이익의 ‘취득’ 및 ‘공여’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 및 ‘공여’ 이외에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 등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미수범 성립은 논외로 함), ③ 배임증재(제357조 2항)의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④ 배임수증재죄의 경우는 단순히 배임수증재죄와 배임증재죄 2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 행위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²⁶⁹⁾²⁷⁰⁾

형법상의 제357조가 민간부패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법률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히 행위의 태양을 확대하여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 등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상의 배임수증재죄(제630조)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한 가중 처벌

1) 내용

특정경제범죄법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 의한 부패행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²⁷¹⁾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4-2〉 특정경제범죄법상의 민간부패 처벌내용

| 조문 | 구분 | 내용 | 법정형 |
|-----|--------------------|--|--|
| 제5조 | 수재죄 (제1항)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이 경우 수수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제4항) |
| | 제3자 뇌물제공죄 (제2항)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 |

269) 예를 들어, 형법상의 공직부패와 관련한 수뢰죄(제129조 제1항) 및 증뢰죄(제133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사전수뢰죄(제129조 2항), 제3자 뇌물제공죄(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1항), 사후수뢰죄(제131조 제2·3항), 알선수뢰죄(제132조), 제3자 증뇌물전달죄(제133조 2항) 등 다양한 형태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7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천현·홍승희·황지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05, 240~248면; 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2015·여름), 283면 참조 바람.

271) 제정 이유(법률 제3693호, 1983.12.31. 제정, 1984.1.1. 시행) 참조.

| 조문 | 구분 | 내용 | 법정형 |
|-----|---------------------|--|--|
| | 알선수뢰죄 (제3항) |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제5항) |
| 제6조 | 증재죄 (제1항) |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제3자 증뇌물교부죄 (제2항) |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 | |
| 제7조 | 알선수뢰의 죄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8조 | 사금융 알선죄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9조 | 저축관련 부당행위죄 |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제4항)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부과(제5항) |
| | |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한 경우(제2항) | |
| |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한 경우(제3항) | |

*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법 제10조 제2항),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동조 제3항).

2.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9조를 재구성함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 그 행위주체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 공무원의 뇌물죄와 유사하게 다양한 처벌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수수 이외에 “요구” 및 “약속”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점은 법 제6조도 마찬가지이다. 법 제8조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행위 주체에 제한이 없는 알선수재죄(제7조)와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는 자 등이 행위주체인 저축관련부당행위(제9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2) 한계와 개정방안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장 주요한 한계는 - 동법에 의한 가중처벌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 그 처벌규정(법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즉 동법 규정의 적용범위가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행위주체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²⁷²⁾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법 제8조 제5항은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법 제9조 제5항 제1항 및 제2항)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²⁷³⁾ 이것은 일종의 양벌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벌규정(양벌규정)이 법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제5조 내지 제8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72) 그 밖의 문제점 검토에 관한 것은 이천현·황지태·홍승희, 위의 글, 262면 이하 참조 바람.

273) 다만, 소속 금융회사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조 제5항 단서).

2. 상법

가. 내용

상법에서는 동법의 주요 적용대상자인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4-3〉 상법상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 조문 | 구분 | 내용 | 법정형 |
|---------|--------------------------|--|--|
| 제630조 | 배임수재죄 (제1항) | 제622조 ²⁷⁴⁾ 와 제623조 ²⁷⁵⁾ 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법 제632조) * 제630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 또는 가액추징 (법 제633조) |
| | 배임증재죄 (제2항) |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 | |
| 제631조 | 권리행사방해수뢰죄 (제1항) |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등 의사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법 제632조) |
| | 권리행사방해증뢰죄 (제2항) |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 | *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 또는 가액추징(법 제633조) |
| 제634조의2 | 주주권리행사증재죄 (제1항) |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주주권리행사수뢰죄 (제2항) |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한 경우 | |
| | 주주권리행사제3자 뇌물제공죄 (제3항) | 제1항의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 | |

상법상의 배임수증재죄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수뢰와 증뢰의 행위유형만을 처벌하고 있고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수 이외에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 등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나. 한계와 개정방안

상법 제630조의 경우 그 행위객체가 -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와는 달리 -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그 법정형은 신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와 차이가 없으며, 양벌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631조와 제634조의2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그 법정형이 과도하게 약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양벌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²⁷⁶⁾

상법상의 뇌물죄 처벌규정이 그 독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법 제630조의 경우 현재 행위 태양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는 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3. 행정법령상의 처벌규정

현행 행정법령에는 각 법률의 규제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현행 총 약 1,500 여개의 행정법령 가운데 약 50여개). 이러한 처벌규정들을 유형화하여 현황, 문제점 및 그 정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4)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

275)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

276) 그 밖의 문제점 검토에 관한 것은 이천현·홍승희·황지태, 위의 글, 268면 이하 참조 바람.

가.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한 민간부패

1) 국가전문자격과 관련 법령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기술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고(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말한다. 국가전문자격은 통상적으로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²⁷⁷⁾ 가운데 개별 법률로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4〉 국가전문자격과 관련 법령

| 구분 | 국가전문자격 | | 관련 법령 | |
|----|--------|---------|---------------------|-----------------------------|
| | 자격명 | 소관부처 | 법령명 | 제정 |
| 1 | 감정평가사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2016.01.19. ²⁷⁸⁾ |
| 2 | 건축사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 1963.12.16. |
| 3 | 공인노무사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 1984.12.31. |
| 4 | 공인중개사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 1983.12.30. ²⁷⁹⁾ |
| 5 | 공인회계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 1966.07.15. |
| 6 | 관세사 | 관세청 | 관세사법 | 1995.12.06. |
| 7 | 법무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법 | 1954.04.03. ²⁸⁰⁾ |
| 8 | 변리사 | 특허청 | 변리사법 | 1961.12.23. |
| 9 | 변호사 | 법무부 | 변호사법 | 1949.11.07. |
| 10 | 세무사 | 국세청 | 세무사법 | 1961.09.09. |
| 11 | 수의사 | 농림축산식품부 | 수의사법 | 1956.12.26. |
| 12 | 약사 | 보건복지부 | 약사법 | 1953.12.18. |
| 13 | 의사 | 보건복지부 | 의료법 | 1951.09.25. ²⁸¹⁾ |
| 14 | 행정사 | 행정안전부 | 행정사법 | 1961.09.23. ²⁸²⁾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검색

277) 국가전문자격 현황에 대한 상세한 것은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2&gSite=Q&gId=>> 참조 바람(2018.12.06. 검색)

278) 동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법률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었다(법률 제12018호, 2013.8.6. 개정, 2014.2.7. 시행). 동 법률은 2016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2016.9.1. 시행)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 제정, 2016.9.1. 시행) 2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79) “공인중개사법”은 제정 당시에는 법률명이 “부동산중개업법”이었으나(법률 제3676호, 1983.12.30. 제정, 1984.4.1. 시행), 이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2) 민간부패 관련 규정 현황

이상의 총 14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처벌규정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약사법, 감정평가 및 변리사법 등 6개의 법령에는 -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 부당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변리사법은 2000년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표 4-5〉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상의 부패행위와 처벌규정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기타 |
|----|--------|---|--|---|
| 1 | 건축사법 | |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1984년 신설(법률 제3767호, 1984.1.23. 개정, 1985.1.1. 시행) - 2015년 법정형 상향 조정(1년/1천만원 → 2년/2천만원)(법률 제12969호, 2015.1.6. 개정·시행) |
| 2 | 공인회계사법 |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③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997년 신설(법률 제5255호, 1997.1.13. 개정, 1997.3.1. 시행) |

- 변경되었고(법률 제7638호, 2005.7.29. 전부개정, 2006.1.30. 시행), 다시 2014년에 현행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었다(법률 제12374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 280) 동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법률명이 “사법서사법”이었으나(법률 제317호, 1954.4.3. 제정, 1954.4.3. 시행), 1990년 개정 시에 법률명이 현행과 같이 “법무사법”으로 변경되었다(법률 제4200호, 1990.1.13. 전부개정, 1990.3.1. 시행).
- 281) 동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법률명이 “국민의료법”이었으나(법률 제221호, 1951.9.25. 제정, 1951.12.25. 시행), 1962년 법 개정 시에 법률명이 현행과 같이 “의료법”으로 변경되었다(법률 제1035호, 1962.3.20. 전부개정, 1962.3.20. 시행).
- 282) 동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법률명이 “행정서사법”이었으나(법률 제727호, 1961.9.23. 제정, 1961.9.23. 시행), 1995년 법 개정 시에 법률명이 현행과 같이 “행정사법”으로 변경되었다(법률 제4874호, 1995.1.5. 전부개정, 1995.2.5. 시행).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기타 |
|----|------|--|--|--|
| | |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22조제3항(제40조의 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 |
| 3 | 변리사법 |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24조(벌칙) ①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000년 신설(법률 제6225호, 2000.1.28. 개정, 2000.7.1. 시행) |
| 4 | 변호사법 |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 | - 1982년 도입(법률 제3594호, 1982.12.31. 개정·시행)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기타 |
|----|-----|---|--|---|
| | | <p>구하는 행위</p> <p>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p> | |
| 5 | 약사법 | <p>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p> <p>① (생략)</p> <p>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p>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p> | <p>- 2007년 시설(법률 제8365호, 2007.4.11. 개정, 2007.7.4. 시행)</p> |
| 6 | 의료법 | <p>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p> <p>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p> | <p>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 <p>- 1987년 신설(법률 제3948호, 1987.11.28. 개정, 1988.3.29. 시행)</p>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기타 |
|----|----|---|---|----|
| | |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2. (생략) | 제3항·제4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

반면에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약함),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중개사법, 행정사법, 수의사법 등 8개의 법령에는 부패 행위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 이들 법령 가운데는 보수 이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조차도 없는 법령도 있다(공인노무사법, 세무사법, 수의사법). 그 밖에 법무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의뢰유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표 4-6〉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과 보수 관련 규정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기타 |
|----|-------|---|---|---|
| 1 | 감정평가법 | 제25조(성실의무 등) ④ 감정평가업자는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 2013년 신설(법률 제12018호, 2013. 8.6. 개정, 2014.2. 7. 시행) |
| 2 | 법무사법 | 제19조(보수)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 * 해당 처벌규정 없음 | - 1973년 신설(법률 제2551호, 1973.2.24. 개정, 1973.2.24. 시행)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기타 |
|----|------------|--|---|---|
| | |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 - 1973년 신설(법률 제2551호, 1973.2.24. 개정, 1973.2.24. 시행) |
| 3 | 공인 노무사법 | x | x | |
| | | 제13조(금지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 - 제정시 도입(법률 제3771호, 1984.12.31. 제정, 1985.7.1. 시행) |
| 4 | 세무사법 | x | x | |
| 5 | 관세사법 | 제11조(보수)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해당 처벌규정 없음 | - 2017년 신설(법률 제15329호, 2017.12.30. 개정, 2018.1.1. 시행) |
| | | x | x | |
| 6 | 공인 중개사법 |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1983년 제정시 (법률 제3676호, 1983.12.30. 제정, 1984.4.1. 시행) |
| | | x | x | |
| 7 | 행정사법 | 제19조(보수)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 제3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 - 1961년 제정시 (법률 제727호, 1961.9.23. 제정, 1961.9.23. 시행) |
| | | x | x | |
| 8 | 수의사법 | x | x | |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4개의 국가전문자격 법령 가운데 부당한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6개의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각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의 경우가 위의 6개 법령에 한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 6개 이외의 법령에도 위와 같은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세무사법이나 수의사법의 경우에는 심지어 보수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수수 금지 및 그에 관한 처벌규정 조차도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수수 금지 규정이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법무사법 및 관세사법).²⁸³⁾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사법의 경우 보수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수수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하게 경미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형벌규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다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당한 금품수수에 관한 법정형이 법률마다 차이가 있다. 최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²⁸⁴⁾ 자격이 갖는 각각의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법정형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양벌규정과 몰수·추징규정이 흠결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283) 참고로,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은 각각 2016년에 법 개정시에 다음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금품 등 제공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세무사법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016년 신설(법률 제14045호, 2016.3.2. 개정, 2016.3.2. 시행)

관세사법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016년 신설(법률 제14036호, 2016.3. 2. 개정, 2016.4.1. 시행)

284) 건축사법은 종래 부당한 금품수수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법 개정(법률 제12969호, 2015.1.6. 개정·시행)을 통해 그 법정형이 현재와 같이 상향조정되었다.

〈표 4-7〉 국가전문자격 관련 부당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 법령명 | 행위내용 | 처벌 | | 양벌규정 | 몰수·추징 |
|--------|--|-------------|-------|------|----------|
| | | 법정형 | 법조 | | |
| 건축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 2년/ 2천만원 | 제39조 | 제40조 | × |
| 공인회계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 | 5년/ 5천만원 | 제53조 | × | 제55조 |
| 변리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 5년/ 5천만원 | 제24조 | 제26조 | 제26조의2 |
| 변호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 7년/ 5천만원 | 제109조 | × | 제116조 |
| 의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 3년/ 3천만원 | 제88조 | 제91조 | 제88조 제2호 |
| 약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 3년/ 3천만원 | 제94조 | 제97조 | 제94조 제1항 |

요컨대, 국가전문자격 관련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통한 금품 등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20여개의 법령에 통일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²⁸⁵⁾

나. 의료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2010년에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3개의 법률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85)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는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경우, 그 관련 법령인 기상산업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904호, 2010.03.19. 제안)에서는 동 규정 신설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²⁸⁶⁾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代價)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시장 역시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이 아닌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의료기기가 납품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존재함.

이러한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가격인하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를 불필요한 영업 경쟁으로 내몰고,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값 및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당시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죄되는 공무원 신분인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된 것이다.²⁸⁷⁾

제정 당시(2010년)에는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모두 관련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각 법률 개정시 그 법정형이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²⁸⁸⁾

286)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손숙미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2010.3.19. 제안)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당시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으로는 최영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7549호, 2010.02.04. 제안), 전해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7680호, 2010.02.23. 제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8043호, 2010.04.01. 제안) 등이 있었다.

287) 의료법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개정, 2010.11.28. 시행) 이유 참조.

288) 의료법 개정(법률 제14438호, 2016.12.20. 개정, 2017.9.21. 시행); 약사법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12.2. 개정, 2017.12.3. 시행);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 개정, 시행 미정).

〈표 4-8〉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련 처벌규정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1 | 의료법 | <p>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p> <p>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p> | <p>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23조의3을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 2010년 신설(법률 제10325호, 2010.5.27. 개정, 2010.11.28. 시행)</p> |
| 2 | 약사법 | <p>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p> <p>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p> <p>③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p> | <p>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5의2.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 2010년 신설(법률 제10324호, 2010.5.27. 개정, 2010.11.28. 시행)</p>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 | 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
| 3 | 의료기기법 |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③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제53조(벌칙)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0년 신설(법률 제10326호, 2010. 5.27. 개정, 2010.11.28. 시행) |
| | |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판매업자·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내용을 비교·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개의 법령에서는 ① 의료인 등, ② 약사 등, ③ 의료기기 제조업자, 그리고 ④ 의약품공급자 등 4자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들 가운데 금품 등 수수자는 ①과 ②이며, 금품 등 제공자는 ③과 ④이다. 제공자 가운데 ④는 ①과 ② 모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고, ③은 ①에게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행위 구조 속에서 처벌규정을 보면, 의료법의 경우에는 제공자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의 경우에는 수술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의 관계에서 보면 금품 등 수술자와 공급자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의 몰수·추징규정이 금품 등 수술자에게 적용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의 경우 수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니 이에 대한 몰수·추징규정도 없다(수술자의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 몰수·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 4-9〉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비교

| 구분 | 의 료 법 | 약 사 법 | 의료기기법 | |
|--------------|--|--|---|-----------------------------|
| 금품등 수술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 • 한약사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 종사자 | |
| 금품등 제공자 | • 의약품공급자 | • 의약품공급자 | • 의료기기 제조업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제조업자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판매업자 • 의료기기 임대업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판매업자 • 의료기기 임대업자 | |
| 금품 등 실행행위 |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취득 또는 제공 | | | |
| 처 벌 | 금품등 수술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없음) |
| | 금품등 제공자 | (없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추징·몰수 |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없음) |
| 근거조문 | 제2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88조 제2호 |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제94조 제5호의2 | 제13조 제3항, 제18조 제 2항, 제53조 | |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수범주체는 기본적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처벌규정의 완결성 및 예방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 수술자 및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몰수·추징 규정 포함)을 각 법률에서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실행행위는 ‘취득’과 ‘제공’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약속, 요구, 공여의 의사표시 등도 처벌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유형도 처벌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자에게 한하여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몰수·추징규정의 내용도 수수자 및 제공자 양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민간영역에서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민간영역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농협협동조합법 등 9개가 있다.²⁸⁹⁾

이들 법령들은 자기나 특정인을 일정 단체의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10〉 선거관련 금품수수 관련 처벌규정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1 | 농업협동조합법 | <p>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p> | <p>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p> |

28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등은 - 상술한 -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수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처벌된다.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 | <p>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p> <p>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p> | |
| 2 | 산림조합법 | <p>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p> <p>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p> | <p>제1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p> |
| 3 | 새마을금고법 | <p>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p> | <p>제85조(벌칙) ③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 | <p>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p> | |
| 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p>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생략)</p> <p>* 농업협동조합법과 유사</p> | <p>제8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33조제1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p> |
| 5 | 수산업협동조합법 | <p>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생략)</p> <p>* 농업협동조합법과 유사</p> | <p>제1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p> |
| 6 | 신용협동조합법 | <p>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p> | <p>제99조(벌칙)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 | <p>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p> <p>2.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p> | |
| 7 | <p>영업조합법</p> | <p>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생략)</p> <p>* 산림조합법과 유사</p> | <p>제59조(벌칙)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8 | <p>중소기업협동조합법</p> | <p>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p> <p>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p> <p>③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 <p>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p> |
| 9 | <p>협동조합기본법</p> | <p>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생략)</p> <p>* 농업협동조합법과 유사</p> | <p>제11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p> |

그러나 이들 법령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즉 신용협동조합법에서만 유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4-11〉 선거관련 금품수수 관련 법정형 비교

| 구분 | 법령 | 관련조문 | 법정형 | |
|----|-----------|---------------|---------------------------------|---------------|
| | | | 법정형 | 규정 |
| 1 | 농협협동조합법 | 제50조 제1항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 제172조 제1항 제2호 |
| 2 | 산림조합법 | 제40조 제1항 제1호 | | 제132조 제1항 제2호 |
| 3 | 새마을금고법 | 제22조 제2항 | | 제85조 제3항 |
| 4 | 소비자생활조합법 | 제33조 제1항 제1호 | | 제86조 제1항 제2호 |
| 5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7조의2 제1항 | | 제178조 제1항 제2호 |
| 6 | 신용협동조합법 | 제5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 | 제99조 제3항 |
| 7 | 염업조합법 | 제28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 제59조 제1항 |
| 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3조 제2항, 제3항 | | 제137조 제1항 |
| 9 | 협동조합기본법 | 제37조 제1항 | | 제117조 제3항 제2호 |

그리고, 실행행위가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처벌이 대상이 되는 실행행위 형태는 ①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의 약속, ② 위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③ 위의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9개 가운데 7개 법률이 ①·②·③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단지 2개 법률(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만이 ①·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경우에도 타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등 제공 요구자와 알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2〉 선거관련 금품수수 관련 실행행위 등 비교

| 구분 | 법령 | 실행행위 | 자수감경규정 |
|----|--|---|---|
| 1 | 농협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의 약속 • 위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 의의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 | 제177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없음) 제183조 제1항 (없음) (없음) |
| 2 |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의 약속 • 위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 (없음) (없음) |

한편, 적발의 용의성 및 행위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범죄행위 자수자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표 4-12 참조).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법은 금품 등을 제공, 수수, 또는 알선자에 대하여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7조 제1호). 이러한 규정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민투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환경정비법”이라 약함)의 경우에도 금품 등 제공 요구자와 알선자모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환경정비법에서는 금품 등 제공자 및 수수자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2017년에 신설하였다.

〈표 4-13〉 국민투표법 및 도시환경정비법 비교

| 구분 | 법령 | 실행행위 | 관련조문 |
|----|---------|---|-----------------|
| 1 | 국민투표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의 약속 • 위의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 • 위의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 제99조 |
| 2 | 도시환경정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 위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 • 제3자를 통하여 위의 행위를 하는 행위 | 제132조, 제135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17.8.9. 신설) | 제141조 |

라. 사법분야 등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특정의 사법절차에서 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역할을 하는 자, 예를 들어 가족폭력사건에서의 보조인,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종사자 등이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

이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에 비하여 경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제60조) 및 배임증재(제61조)의 규정은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처벌규정(제5조 등)보다 더 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약함)상의 처벌규정(제645조 등)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특징은 처벌 행위태양이 취득이나 제공 이외에도 약속, 의사표시, 요구 등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14〉 사법분야 등에서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관련규정 |
|----|----------------------------|--|------------------------------------|----------------|
| 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인(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이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 | * 별칙규정 없음 | 제28조 제3항 |
| 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6조 |
| 3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 제16조 제1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 |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관련규정 |
|----|------------|---|---|----------------------|
| 4 | 범죄피해자 보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자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2호 |
| 5 | 병역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제92조 제3항~제5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양벌규정 (제96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몰수·추징규정 (제92조 제6항) |
| 6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병과가능) | 제60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 |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병과가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위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 |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관련규정 |
|----|--------|---|--------------------------|------------------------------|
| 7 | 채무자회생법 | • 관리위원·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보전관리인·관리인,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5조, * 몰수·추징규정 (제645조 제3항) |
| | | • 위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 | | 제646조 |
| | | •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55조 * 몰수·추징규정 (제655조 제2항) |
| | | • 파산관재인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56조 |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약함)상에는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의 금품 등 취득, 약속, 제3자에 대한 제공·제공약속에 대하여 금지규정(제28조)을 규정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약함)상의 처벌규정(제59조) 정도의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과 무관하게 ‘청탁’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단지 ‘청탁’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형사범죄법”이라 약함)에서는 - 매우 독특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를 규정하여 -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증권집단소송법 제60조 제1호 내지 제3호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형사범죄법상의 병과규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익 박탈을 위해서는 - 병과정보다는 - 몰수·추징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병역법(제92조 제6항)과 채무자회생법(제645조 제3항, 제655조 제2항)에서와 같이 몰수·추징규정을 다른 법률에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의 사법분야 등에서의 부패행위 처벌과 관련한 7개 법률 가운데 2개 법률을 제외하고는 몰수·추징규정이 없다.

마. 건설, 제조업 등 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건설, 제조업 등 분야에서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다음과 같이 5개가 있다.

〈표 4-15〉 건설, 제조업 등에서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1 | 건설산업 기본법 |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 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자,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2 | 건축사법 | |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3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 * 처벌규정 없음 |
| 4 | 담배사업법 |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5 | 직업안정법 |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해관계인이 -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제공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한 참여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제공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다만, 금품 등의 '취득 및 '제공'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행위태양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등이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약속이나 제공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행위태양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참조). 동법에서는 제조업자,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7조, 제27조, 제45).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는 입법의 불비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행위태양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담배사업법상의 금품제공 등의 금지행위, 즉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동법사행령 제10조 참조), 그 금품 등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비교하면 직업안전법상의 금품 등 수령 금지 위반행위(제32조)에 대한 법정형

은 다소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47조 제5호가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제공자나 그 밖의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위의 모든 법률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계량에 관한 법률은 - 상술한 바와 같이 -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양벌규정의 적용도 불가능하다(법 제75조 참조).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경우에는 몰수·추징규정이 있고(제30조), 그 밖의 경우에는 몰수·추징규정이 없다. 이익박탈을 위해서는 몰수·추징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바. 스포츠·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스포츠·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 즉 승부조작 등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대표적으로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이 있다.

이 3개의 법률에서는 뇌물의 수수·요구·약속행위, 뇌물의 제공·제공요구·약속행위, 제3자에 대한 뇌물 제공·요구·약속행위, 수뢰후 부정처사행위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규정과 몰수·추징규정을 모두 두고 있다.

〈표 4-16〉 스포츠, 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구분 | 법령 | 금지내용 | 처벌 | 관련규정 |
|----|--------|---|-----------------------------|----------|
| 1 | 경륜·경정법 |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9조 제1항 |
| | | 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9조 제2항 |
| | |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 |
| | | 위에 규정한(제29조 및 제30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

| 구분 | 법령 | 금지내용 | 처벌 | 관련규정 |
|----|---------|--|--------------------------|--------------------------|
| | 국민체육진흥법 |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 3 제1항, 제48조 제2호 |
| | |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 3 제1항, 제47조 제1호 |
| | |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 3 제2항, 제48조 제2호 |
| | | 위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 3 제1항, 제48조 제1호 |
| | 한국마사회법 |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 제1호 |
| | |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 제1호 및 제2호, 제50조 제1항 |
| | |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 | |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 제2호 |
| | | 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 제3호 |

그러나 세 개의 법률은 동일한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륜·경정법의 경우 그 법정형에 있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한국마사회법과 차이가 있다. 그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표 4-17〉 스포프, 체육 분야에서의 부패행위 법정형

| | 경륜·경정법 | 국민체육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
|------------------------|--------------------------------|-----------------------------|-----------------------------|
| 뇌물의 수수·요구·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뇌물의 제공·제공요구·약속 | | | |
| 제3자에 대한 뇌물 제공·요구·약속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수뢰후 부정처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격정지 병과 | 10년 이하 자격정지(제33조) | 10년 이하 자격정지(제52조) | 10년 이하 자격정지(제57조) |
| 몰수·추징규정 | 제32조 | 제51조 | 제56조 |
| 징역·벌금 병과 | × | 제53조 | × |

한편, 수뢰후 부정처사행위와 관련하여,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한국마사회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 있다. 즉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2호). 한국마사회법상의 이러한 규정도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규정하여 입법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은 부패행위 처벌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의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다(제53조). 경륜·경정법과 한국마사회법에서도 징역·벌금 병과규정의 신설도 검토해 볼만하다.

사. 금융·보험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 금융관련

상술한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에 속하는 경우

를 제외하면, 금융관련 분야에서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이 2개의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⁹⁰⁾

〈표 4-18〉 금융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 구분 | 법령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관련규정 |
|----|--------------------|--|---|--------------------------|
| 1 | 금융지주회사법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48조의3 제1항, 제70조 제2항 제2호 |
| 2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 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제40조 제1항 |
| | | 위의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 | | 제40조 제2항 |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법정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이 “2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제3자 뇌물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은 입법의 불비로 생각된다.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약함)의 경우에는

290) 특정경제범죄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정형으로 규정된 벌금형과 관련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은 매우 독특한 입법례라 생각된다. 부패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벌금을 통해 박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외부감사법에서는 - 금융지주회사법에서와는 달리 - 몰수·추징규정이 있다(제45조). 다만,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보험관련

보험업법에서는 행위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패행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²⁹¹⁾ 즉 보험계리사 등의 뇌물 수수·요구·약속행위와 그 공여·공여의사표시행위(제201조), 보험계약 체결자 등의 금품 등 제공행위와 그 금품 등의 수수행위(제202조), 보험계약자총회 등 관련 뇌물 수수·요구·약속행위와 그 공여·공여의사표시행위(제203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표 4-19〉 보험업법상의 부패행위와 처벌규정

| 행위유형 | 처벌 | 관련 규정 |
|---|--------------------------|-------------------|
| 보험계리사 등(제197조 제1항에 열거된 자), 상호회사의 청산인 등(제197조 제2항에 열거된 자),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을 구성하는 자 등(제198조에 열거된 자), 상호회사의 감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01조 제1항 |
| 위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 | | 제201조 제2항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8조, 제202조 제3호 |
| 위의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 |
|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03조 제1항 제1호·제2호 |
| 위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 | | 제203조 제1항 |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업법 등은 보험업법 제98조를 원용하면서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9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 상술한 -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수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처벌된다.

〈표 4-20〉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부패행위 처벌규정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보험법 | 풍수해보험법 |
|------|--|---|--|
| 관련규정 | 제23조(벌칙)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벌칙)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보험업법은 금지규정(제98조)에 대한 처벌규정(제202조 제3호)의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그 처벌의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보험업법 제98조는 ‘제공’ 및 ‘제공 약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02조 제3호는 ‘제공’과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²⁹²⁾

따라서 보험업법 등을 비롯하여 위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상의 벌칙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1〉 보험업법상의 금지규정과 처벌규정

| 금지규정(현행) | 처벌규정(현행) | 처벌규정(개정 사안) |
|--|--|---|
|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292) 다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의 경우에만 그 행위의 특성상 ‘약속’을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보험업법 제98조 제3호, 제202조 제3호).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위의 부패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제208조), 징역·벌금병과규정(제206조), 몰수·추징규정(제207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의 벌칙규정을 원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상에는 - 양벌규정만을 규정하고 있고(각각 제24조, 제31조, 제37조) - 징역·벌금병과규정과 몰수·추징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

아. 담합행위와 처벌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5조). 그러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약함),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약함) 등에서는 각 해당 영역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 가중처벌의 형태로 - 두고 있다.

〈표 4-22〉 담합행위와 처벌규정

| 구분 | 형법 | 공정거래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관리법 |
|----------|--------------------------|-------------------------|---|------------------------------|
| 행위주체 | 제한 없음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건설공사 입찰자 |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 |
| 행위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 계약·협정·결의 기타의 방법으로 |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
| 성립 |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침해 |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 |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징역·벌금 병과 | × | 제66조 제2항 | × | × |
| 양벌규정 | × | 제70조 | 제98조 제2항 | 제110조 |
| 근거조문 | 제315조 | 제19조 및 제26조 | 제95조 제1호 | 제107조 |

※ 이천현·홍승희·황지태, 위의 글, 252면 참조

가장 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이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면 - 입찰의 공정성 침해와는 상관없이 - 바로 범죄가 성립되고,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에 비해 중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입법자의 의사가 구현된 것으로 생각된다.²⁹³⁾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징역·벌금 병과규정의 신설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공정거래법 제66조 제2항 참조).

한편 공간정보관리법상의 담합행위 처벌규정(제107조)은 동법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충분히 규율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특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 교통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처벌

1) 교통관련 사업자 등의 처벌

교통과 관련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각 관련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표 4-23〉 교통관련 사업자 등의 부패행위와 처벌규정

| 구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 행위주체 |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업자 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자동차대여사업자 | 자동차관리사업자 |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
| 금지행위 규정 |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금지 (제27조 제1항 제2호) |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 수수금지 (제34조의2 제1항) | 업무의 수행과 부정한 금품을 수수금지 (제57조 제1항 제3호) | 업무의 수행과 부정한 금품을 수수금지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4호) |
| 위반에 대한 처벌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0조 제5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7조 제4호 및 제5호) |
| 몰수·추징 | × | × | × | × |
| 양벌규정 | × | 제93조 | 제83조 | 제69조 |

293)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도2309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준수사항으로서 “...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없다.²⁹⁴⁾ 위의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양벌규정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의 금품수수의 주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이고, 그 상대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이다(제34조의2).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이들²⁹⁵⁾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만 처벌을 받게 되고, 그 금품수수의 상대방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제80조 제5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 사이에 부정한 금품을 수수가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도 처벌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자동차관리사업자와의 부정한 금품 수수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67조 제2호 및 제3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사이에 부정한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예를 들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 사이에 부정한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94) 다만, 이러한 준수사항(제27조 제1항 제2호)을 위반한 경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29조 제1항 제7호).

29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표 4-24〉 교통관련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구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 준수사항 |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 처벌규정 |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

그리고 이익박탈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위의 4개 법률(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부패행위와 관련한 몰수·추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선박사고 관련

선박사고와 관련한 법률로서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소유자책임법”이라 약함)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오염배상법”이라 약함)이 있다.

2개 법률상의 뇌물 수수행위는 - 유류오염배상법의 준용에 따라 - 처벌의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법정형에 있어서 벌금형에는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책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²⁹⁶⁾ 유류오염배상법은 2014년 법 개정(법률 제12829호, 2014.10.15. 개정, 2014.10.15. 시행)을 통해 종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표 4-25〉 선박사고 관련 법령의 부패행위와 처벌

| 구분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
| 수뢰 |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증뢰 |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물수·추징 | 제93조 제2항 | 제58조 제2항 |

4. 소결

약 50여개의 (행정)법령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민간부패 처벌규정은 - 그 소관부처가 각각 다르고 입법목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상호간에 유기적, 체계적, 통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

296) 이 법률의 최종개정일은 2009년이다(법률 제9833호, 2009.12.29. 개정, 2009.12.29. 시행).

공직부패 영역과는 달리 민간부패 영역에서는 민간의 거래의 자율성이라는 특성과 공적 규제 개입의 한계로 인하여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일적이고 엄격한 국가 형벌권의 발동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을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키지 못한 점은 민간부패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를 규율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행과 같은 민간부패 규율체계 하에서, 각 행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부패 처벌규정들의 최선의 현실적인 정비방안은 - 각 행정법률의 서로 다른 특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처벌되는 행위태양, 행위객체, 징역·벌금의 병과규정, 몰수·추징규정, 양벌규정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라 생각된다.²⁹⁷⁾ 그리고 의료, 민간선거, 사법, 건설·제조, 체육, 금융, 교통 등 각 분야별로 관련 또는 유사한 법령 간의 정합성·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입법의 흠결이 있는 법령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방안

1. 민간부패와 공익신고자보호법

가. 민간부패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사적인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 사정활동이나 국민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부패에 비해 - 상대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민간영역의 관련 내부자의 공익 신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⁹⁸⁾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주로 기업, 법인, 단체 등 민간분야에서의 부패행위

297) 이에 관하여는 또한 이천현·홍승희·황지태, 위의 글, 277면 이하 참조 바람.

298) 이천현, 위의 논문, 295면.

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공공분야 부패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는 -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법률 제10472호, 2011.3.29. 제정, 2011.9.30. 시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법 제1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⁹⁹⁾

〈표 4-26〉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신고절차 | 신고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6)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7) |
| |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2 Nr.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에 현재 총 284개 법률이 규정되어 있음 |
| |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제출 원칙 (§8) • 비실명 대리신고 (§8의2) |
| | 신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 등의 대표자나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조사기관) • 수사기관 • 위원회 • 국회의원 • 신고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 법 §6, 동법시행령 §5 Nr.1.2) |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기재 생략 (§11) • 비밀보장의무 (§12) |
| | 신변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조치 (§13) |
| | 책임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의 감면 (§14) |
| | 불이익조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조치 금지 (§15) •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 (§16) |
| |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17) • 특별보호조치 (§20의2)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22) • 정치운동 등 신고의 특례 (§25의2) |

299) 법률 제15022호 기준(2017.10.31. 개정, 2018.11.1. 시행)

| 구 분 | | 내 용 |
|-------------|-------------|---|
| 신고 보상금 등 | 보상금 | • 보상금 (§26) |
| | 포상금 | • 포상금 (§26의2) |
| | 구조금 | • 구조금 (§27) |
| 제재 | 징벌적 손해배상 | • 손해배상책임 (§29의2) |
| | 이행강제금 |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천만원(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21의2) |
| | 벌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공개, 비밀보장의무 위반: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30①) • 불이익 조치(가목),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0②) • 불이익 조치(나목~사목), 공익신고 방해등: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0②) • 자료제출 거부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31①) • 특별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31②) |

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 이후에 -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하여 - 5차 개정(타법개정에 의한 개정 제외)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과 주요내용

| 개 정 | 일자(시행) | 내 용 |
|-----|-------------------------------------|--|
| 제 정 | 2011.3.29. 제정 (2011.9.30. 시행) | - |
| 제1차 | 2014.1.14. 일부개정 (2014.1.14. 시행) | •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관여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 시 비밀엄수 의무 적용의 배제(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27조) 및 불이익조치금지를 규정(제25조의2) |
| 제2차 | 2015.7.24. 일부개정 (2016.1.25.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등 총 99개의 법률을 새로이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총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모두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별표) •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함(제2조제7호, 제20조의2)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제14조제2항, 동조 제6항)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제21조의2) |
| 제3차 | 2017.4.18. 일부개정 (2017.10.19. 시행) | •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규정(제9조의2) |

| 개정 | 일자(시행) | 내용 |
|-----|-------------------------------------|--|
| 제4차 | 2017.10.31. 일부개정 (2018.5.1.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함(제2조제1호). •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제17조). •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 발생여부에 대한 점검의무를 부과함(제20조제5항). •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제23조제4호 신설)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제1항). •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구조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 벌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전 피신고내용 공개(3년·3천만원→5년·5천만원) -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2년·2천만원→3년·3천만원) - 신고자 징계 등,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1년·1천만원→2년·2천만원) |
| 제5차 | 2018.4.17. 일부개정 (2018.10.18.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제8조의2) •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제21조의2제1항) |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한편, 법제정 이후에 국회에 총 56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³⁰⁰⁾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공익신고 대상과 공익신고 기관, 인센티브 부여의 한계, 제재규정의 불합리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³⁰¹⁾

2.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방안

가. 공익신고 대상 확대

1) 공익신고 대상의 변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에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180개에 불과하였다. 당시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률에 11개 법률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169개 법률은 동법시행령에 규정하였다.

300)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참조.

3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2018.10.5.), 12면 이하 참조.

이후 2014년 동법시행령 개정(2014.4.8. 개정)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³⁰²⁾이 추가되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총 181개가 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총 279개로 확대되었다. 이 때 종래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모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되었다.

한편, 2017년 법개정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법 제2조 제1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등 5개의 법률이 추가되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총 284개로 확대되었다. 이 수치는 현행 우리나라의 총 약 1,500개 법률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4-28〉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변화

| | 2011.3.29.제정법률(2011.9.30.시행) | | 2015.7.24.개정법률 (2016.1.25.시행) | 2017.10.31.개정법률 (2018.5.1.시행) |
|----------|--|---|--|--|
| | 2011.9.30.제정시행령 | 2014.4.8.개정시행령 | | |
| 대상 영역 | (4대 영역)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2. 환경 3. 소비자의 이익 4. 공정한 경쟁 | (4대 영역)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2. 환경 3. 소비자의 이익 4. 공정한 경쟁 | (4대 영역)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2. 환경 3. 소비자의 이익 4. 공정한 경쟁 | (5대 영역)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2. 환경 3. 소비자의 이익 4. 공정한 경쟁 5. 공공의 이익 |
| 대상 법률 | 180개 - 법률: 11개 - 시행령: 169개 | 181개 - 법률: 11개 - 시행령: 170개 (* 170. 「식물신품 종 보호법」 추가) | 279개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대상 법 률을 상항하여 규정 | 284개 |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2) 공익신고 대상법률 규정방식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규정방식은 열거주의방식과 포괄주의방식이 있다. 전자에는 우리나라와 일본(공익통보자보호법)의 규정방식이 속하고, 후자에는 영국(공익신고법)의 규정방식에 속한다. 열거주의 방식은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판단에 용이하다는

302) 2012.6.1. 제정(법률 제11457호)되어 2013.6.2.에 시행됨.

큰 장점이 있고(법적 안정성), 포괄주의 방식은 공익침해행위 유형 및 신고자 보호의 탄력성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표 4-29〉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 방식 | 열거주의 | 포괄주의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판단의 용이성 • 법적 안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유형 및 신고자 보호의 탄력성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개정절차의 어려움 • 공익침해행위 유형 및 신고자 보호의 제한성 • 신고자가 적용 법률의 특정 등 부담이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판단의 어려움 • 법적 불명확성 |
| 입법례 | <p>일본(公益通報者保護法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7개 - 정령(시행령): 467개 (2018.06.18.현재) *公益通報者保護法別表第八号の法律を定める政令 | <p>영국(공익신고법 제43B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섯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행위(criminal offence)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일정한 사람이 지는 법률상 의무 이행에 실패(fail to comply with legal obligation)했거나,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재판의 오심(miscarriage of justice)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행위(endangered health or safety of individual)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환경이 파괴(damaged environment)되었거나, 파괴되고 있거나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위의 행위와 관계되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거나(information deliberately concealed),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 권수진·윤성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108면 이하, 200면 이하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3) 공익신고대상 확대: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1호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향후 공익침해행위(현재 5대 영역) 및 신고대상법률(현재 284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에 정부가 제안한 동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3902호, 2018.06.08. 제안)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6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지속적인 법률 제정 및 개정으로 새로 증가하는 대상을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2018.3.20.에 제정(법률 제 15511호)되어 2019.1.1.에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 상술한 - 2018년에 정부가 제안한 동법개정법률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2014.12.30.에 제정(법률 제12932호)되어 2015.7.1.에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인 2014.1.28.에 제정(법률 제12341호)되어 2014.9.29.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비로소 - 상술한 - 2018년에서야 정부가 제안한 동법개정법률안에 추가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그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증가에 따른 수사 법개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종래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을 열거주의방식에서 포괄주의방식으로 규정하는 개정법률안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³⁰³⁾

〈표 4-30〉 포괄주의방식 개정법률안 비교

| 구분 | 소병훈 대표발의안 (2017.06.27.) | 노회찬 대표발의안 (2017.03.09.) | 박찬대/민병두 대표발의안 (2017.04.11./02.20) | 권은희 대표발의안 (2014.11.14.) |
|------------|---|---|---|--|
|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과 관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음 각 목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 |

303) 예를 들어, 2017.03.09.에 제안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006086호) 등 참조 바람.

| 구분 | 소병훈 대표발의안 (2017.06.27.) | 노회찬 대표발의안 (2017.03.09.) | 박찬대/민병두 대표발의안 (2017.04.11./02.20) | 권은희 대표발의안 (2014.11.14.) |
|------------------|----------------------------|---|---|----------------------------|
|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는 행위를 말한다. |
| 제2조 제1호 각목 | 삭제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판단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삭제 | 삭제 |
| 별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포괄주의방식을 규정한 이러한 개정법률안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 용이하게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충적 규정 방식은, 예전과 같이(공익신고자보호법의 2015년 개정 이전의 규정방식) - 그리고 일본의 규율방식과 같이 - 법률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지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법시행령에서 그 세부적인 법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의 회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개정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익 신고기관 확대

1) 공익신고기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에 따르면 공익신고기관은 다음과 같이 5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6조 제5호의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① 국회의원과 ②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대상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표 4-31〉 공익신고기관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
|--|--|
| <p>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p>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 ③ (생략) |

2) 일본 「公益通報者保護法」상의 공익신고기관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제2조 제1항)은 공익신고 대상을 다음과 같이 내부신고, 행정기관신고, 외부신고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표 4-32〉 일본의 공익신고기관

| 구분 | 구분 | 내용 |
|-------------|---|---|
| 1 (내부신고) |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방 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미리 정한 자(법 제2조 제1항) | 법 제2조 제1항 |
| 2 (행정신고) | 당해 공익통보대상사실에 대해서 처분 ³⁰⁴ ·권고 ³⁰⁵ 등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법 제2조 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부, 공내청, 내각설치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각의 소관 하에 있는 기관, 이들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의 직원으로서 법률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 직원(법 제2조 제4항 제1호), • 지방의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법 제2조 제4항 제2호) |

| 구분 | 구분 | 내용 |
|-------------|--|--|
| 3 (외부신고) | 그 사람에게 당해 통보대상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그 발생 또는 그것에 의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³⁰⁶⁾ (법 제2조 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입자 •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 주민 • 소비자 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사업자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 회원사업자의 공정한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통보자 지원단체 •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는 보도기관 |

* 권수진·윤성현, 위의 글, 141면 이하, 201면 및 일본 「公益通報者保護法」 참조하여 재구성함.

외부신고에서 “그 사람에게 당해 통보대상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그 발생 혹은 그것에 의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소비자단체나 언론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³⁰⁷⁾

다만, 내부신고, 행정기관신고, 외부신고 등 신고기관에 따라 - 다음과 같이 - 보호요건에 차이를 두어 운용하고 있다.

〈표 4-33〉 일본의 공익신고기관과 보호요건

| 신고기관 | 보호요건 | | |
|------------------|---|--|---|
| 내부신고 (사업자 내부) |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기타 부정한 목적 | 통보 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바로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법 제3조 제1호) | - |
| 행정신고 (행정기관) | 타 부정한 목적이 없을 것 | 통보 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바로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법 제3조 제2호) | - |
| 외부신고 (사업자 외부) | | 통보 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바로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 • 공익통보를 하면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04) 명령, 취소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305) 권고, 기타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306) 당해 통보대상사실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만 당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방의 경쟁상의 지위에 있거나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307) 消費者庁 消費者制度課, 逐條解説 公益通報者保護法, 2016, 65면 (권수진·윤성현, 위의 글, 142면 재인용).

| 신고기관 | 보호요건 | |
|------|----------------------|---|
| | 이유가 있는 경우(법 제3조 제3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통보를 하면 당해 통보대상사실에 관한 증거가 은폐·위조·변조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익통보를 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받은 경우 • 공익통보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통보대상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방 등으로부터 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는 경우 •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권수진·윤성현, 위의 글, 135면 이하 및 일본 「公益通報者保護法」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3) 공익신고기관 확대

조직 내부자는 그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고 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속하는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조직의 내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익신고자 의견조사”(2016)에 따르면, 다수의 공익신고자들은 언론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위원회 신고와 함께 별도로 언론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하였고, 또한 국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시민단체에 공익침해행위를 알리고 공익신고 과정 중 상담 및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⁸⁾

이에 따라 그 동안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언론기관 또는 시민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안도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³⁰⁹⁾³¹⁰⁾

308) 권수진·윤성현, 위의 글, 201면.

309) 예를 들어, 2017.7.12.에 제안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007944호) 참조.

310)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 등에서는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①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추가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이 이미 공익신고 기관이라는 점, 신고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실확인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권익위), ② 언론 추가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및 접수사건의 조사·수사기관 ‘송부의무’와 언론의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언론자유 침해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권익위), 공익신고사건의 조사·수사기관 송부가 취재원 보호원칙 및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한국신문협회 및 한국방송협회), ③ 시민사회단체 추가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무가 여론형성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공익신고 처리

〈표 4-34〉 공익신고기관 확대 개정법률안 비교

| | 현행법 | 노회찬 위원안 (2017.03.09.) | 박범계 위원안 (2017.06.09) | 신동근 위원안 (2017.06.12.) |
|--------|------------|--------------------------|-------------------------|--------------------------|
| 국회의원 | ○(시행령에 규정) | ○(법률로 규정) | ○(법률로 규정) | ○(현행 유지) |
| 소속정당 | × | × | ○ | × |
| 언론 | × | ○ | × | ○ |
| 시민사회단체 | × | ○ | × | × |

※ 정무위원회(오창석),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208호 외 14개 법률안) 검토보고, 2017.9., 36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면서 그 보호요건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도입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인센티브 강화

1) 형의 필요적 감면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임의적 형감면).

임의적 형감면 규정(법 제14조 제1항)은 신고자에게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동 규정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동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감면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자 면책조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고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을 “필요적” 형의 감면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18.6.8.에 정부가 제안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3902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과 정무위 의결안(2018.11.)은 다음과 같다.

및 신고자 비밀보장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민간사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가 있다(권익위).(정무위원회(오창석),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208호 외 14개 법률안) 검토보고, 2017.9., 36면 이하 참조).

〈표 4-35〉 형의 필요적 감면제도 도입

| 형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권익위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안 (2018.6.8.) | 정무위 의견 ³¹¹⁾ (2018.11) |
|---|---|---|--|--|
|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⑥ (생략) |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2. 공익신고자들이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②~⑥(현재와 동일)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 또는 증언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②~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에 관한 공익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형의 감경·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311) 정무위원회(오창석),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3902호) 검토의견, 2018.11., 3면 참조.

2) 행정처분의 감면제도 강화

형벌에 관하여는 - 상술한 바와 같이 - 법 제14조 제1항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징계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제2항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³¹²⁾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제2문).

〈표 4-36〉 행정처분의 감면

| 행정처분 등 | | 형벌 | |
|---------|---|----------------------|-----------|
| 효과 | 위원회 권한·의무 | 효과 | 위원회 권한·의무 |
| (규정 없음) | 징계 또는 행정처분의 감면 요구권 (임의적)(제14조 제2항) *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임의적 감면 (제14조 제1항) | (규정 없음) |

징계 또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만약 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익신고자등은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³¹³⁾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12) 이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6항)

313) 2017.7.12.에 제안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007944호)은 법 제14조 제2항을 “...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제안하고 있다.

〈표 4-37〉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행정처분의 감면규정

| 행정처분 등 | | 형벌 | |
|---|---------|---|---------|
| 효과 | 위원회 | 효과 | 위원회 |
| 제6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66②) | (규정 없음) |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66①) | (규정 없음) |

3)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형벌 감면에 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요구권(법 제14조 제2항) 인정과 같이 -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형의 감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³¹⁴⁾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죄행위의 사실인정 여부나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은 사법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인권위의 위의 법 제28조 제2항에서의 의견 제출권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것이다). 둘째, 인권위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의견표명과 관련한 권한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징”으로 제한되어 있다(법 제46조, 제47 등 참조). 셋째, 인권위와 권익위는 그 법률상의 지위, 기능,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권한을

314) 위의 [표 10] 참조 바람(정무위원회(오창석),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 번호: 13902호) 검토의견, 2018.11., 4면).

부여할 수 없다. 넷째,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타 영역에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라. 공익신고 처리방식 규율방식 개선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받은 기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

〈표 4-38〉 공익신고기관과 처리절차

| 신고기관 | 처리 | 근거규정 |
|---------------------------------|---|----------|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 등의 대표 자나 사용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확인,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방안 마련·시행 • (신고자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 어느 1개 기관에 송부 | 법시행령 제6조 |
| 소관 행정·감독기관 (조사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착수 | 법 제10조 |
| 수사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착수 | 형사소송법 |
|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확인 →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이첩 | 법 제9조 |
| 국회의원 신고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 어느 1개 기관에 송부 | 법시행령 제5조 |

(1)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① 먼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②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법 제9조).

(2)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① 공익신고를 받은 때 및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하고,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법 제10조).

(3)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①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②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며, ③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 어느 하나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법시행령 제6조).

(4) 국회의원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①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 어느 하나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하고, ②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5조).

위의 (1)과 (2)의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3) 및 (4)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4)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관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기관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3)의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의문이다. (3)의 경우에도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제재 보완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를 비롯한 공익신고에 관한 사정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된다.

〈표 4-39〉 비밀누설과 제재

| 행 위 | | 제 재 | |
|---|-------------------|--|---------------------------------|
| 행위 | 주체 | 징계 등 | 형벌 |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와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공개(§10⑤)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0①) |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12①) | 누구든지 (제한 없음) | 그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12④) | |

1) 형사처벌 관련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에 대하여는 - 그 비밀보호 강화를 위하여 - 2017년 법 개정시(법률 제15023호, 2017.10.31. 개정, 2018.5.1. 시행)에 법정형이 상향되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동 법정형은 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표 4-40〉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법정형 비교

| 형법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업무상비밀누설 | | |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127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31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 제1항) |

오히려 위의 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판기록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 실수로 한 곳의 실명을 노출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³¹⁵⁾ 현행 법률상의 규정(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3조)이 알려줌, 공개, 보도 등 적극적 실행행위(고의범)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벌 강화보다는 특히 신고관련 업무종사들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공익신고자 신분노출에 대한 처벌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315) 국민권익위원회, 위의 토론회 자료집, 15면 참조.

〈표 4-41〉 비밀누설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 금지규정 | 처벌규정 |
|---|---|
|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 한 자 |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한 자 |

2)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그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한편, 위의 [표 4-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10조 제5항의 위반의 경우, 징계조치 요구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바.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제재 보완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제15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가 부과된다.

즉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되고(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41호), 이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제29조의2, 2017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그리고, 위원회는 - 공익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해 -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17조, 제20조, 제21조의2),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이후 이를 불이행 하는 경우 형벌이 부과된다(제21조, 제30조 제2항 제2호).

〈표 4-42〉 불이익조치와 제재

| | | | |
|-----------|---|------------------|--|
| 불이익 조치 | 형벌 부과 - 법 제2조 제6호 가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조 제6호 나~사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 | 징벌적 손해배상 | (불이행) 이행강제금 | |
| | 보호조치결정 (30일 이내) | (행정소송) 보호조치결정 확정 | (불이행) 형벌 부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징계요구(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 | - | - |

한편,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20조 제4항). 그런데 - 위의 제12조 제1항에서와 마찬가지로 -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소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7년이 지났고, 그 동안 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현행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62명 중 40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79%).³¹⁶⁾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책 강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조치 마련, 실질적인 보상금·구조금 지원방안 마련, 실용적인 통합신고 체계 구축 등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17, 128면 참조.

제 5 장



요약 및 결론

황지태·이천현·임정호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민간부패는 갈수록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공직부패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 각종 통계에서도 민간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징표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민간부패는 공공지출의 방비를 유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표의 표출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에 기존 공직부패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영역을 포함한 종합적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민간부패에 관한 연구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보고, 그 일환으로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부패 문제의 현황 및 실태측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국의 민간부패를 정의하는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논한 후에,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 및 실태측정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그런 다음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장기적 해결방안과 중·단기적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보았다.

다음으로는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에 먼저 UN, 유럽회의, OECD 등 국제협약에서의 민간부패 관련 변화추세를 살펴본 후에,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의 뇌물법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며, 각 내용들의 의의, 구성,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의 최근 경향에 대해 논하고, 그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와 형사특별법(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그리고 각종 행정법령상의 처벌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시점의 쟁점 중의 하나로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제2절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민간부패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는 민간부패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조차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민간부패와 관련된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단일한 법률체계로 통합해 내는 것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민간부패 및 전체 부패와 관련된 단일체계의 법률을 갖추는 것은 통계산출과 관련해서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에 속하지만, 그와 같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단기간에 이루어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민간부패 관련 통계 문제를 해결하는 중기적 혹은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민간부패와 관련된 법률들을 그대로 두되, 관련 통계치들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형법상의 민간부패 조항, 형사 특별법상의 민간부패 조항들 뿐만 아니라 50여 가지가 넘는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관련 통계들을 따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간부패를 포함한 부패 통계 공표방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검찰청 내 부패관련 부서나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패 전문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원자료에서 추출한 관련 통계를 잘 분류하고 관리하며

체계적인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는 50여개가 넘는 행정법규상의 민간부패 통계 정리는 뒤로 미루더라도, 배임수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민간부패 등 가장 핵심적인 통계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도 제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역시도 별도의 부패통계 관리와 맞물린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2.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외국공무원 관련 입법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자국의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법논리상으로 민간부패에 속하게 된다. 최근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OECD 협약은 외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의 경우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즉 동협약 제1조 제1항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기 위한 논거 내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유럽회의 협약의 경우에도 제5조에서 각 당사국은 타국의 공무원에 관련된 제2조 및 제3조의 행위를 자국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따르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동 협약 제2조 및 제3조). 결국 뇌물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논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UN 반부패협약의 경우에도, 제16조에서 “직·간접적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술한 유럽회의 협약과 같이, 그 뇌물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영국의 실정법인 The Bribery Act 2010 제6조(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 제공) 제3항은 뇌물제공자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요청이나 외국공무원의 동의 또는 묵인에 따른 타인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이 명확한 만큼, 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국회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즉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의 뇌물을 제공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동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동개정안은 2018. 11. 29.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외국공무원에게의 증뢰와 관련하여서도, 제3자에게의 뇌물제공의 경우 역시 이 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3. 민간부패 처벌규정 정비방안 및 민간부패 신고자 보호강화 방안

약 50여개의 (행정)법령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민간부패 처벌규정은 - 그 소관부처가 각각 다르고 입법목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상호간에 유기적, 체계적, 통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

공직부패 영역과는 달리 민간부패 영역에서는 민간의 거래의 자율성이라는 특성과 공적 규제 개입의 한계로 인하여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일적이고 엄격한 국가 형벌권의 발동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을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키지 못한 점은 민간부패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민간부패를 규율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행과 같은 민간부패 규율체계 하에서, 각 행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부패 처벌규정들의 최선의 현실적인 정비방안은 - 각 행정법률의 서로 다른 특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처벌되는 행위태양, 행위객체, 징역·벌금의 병과규정, 몰수·추징규정, 양벌규정 등에 대한 통일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할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의료, 민간선거, 사법, 건설·제조, 체육, 금융, 교통 등 각 분야별로 각 관련 또는 유사한 법령 간의 정합성·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입법의 흠결이 있는 법령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간부패신고자 보호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7년이 지났고, 그 동안 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현행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62명 중 49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79%).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책 강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조치 마련, 실질적인 보상금·구조금 지원방안 마련, 실용적인 통합신고 체계 구축 등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논문·자료집·연보 등]

- 강신욱 (2000), 『부패지수 어떻게 만드는가 : 부패지수의 방법론 비교와 평가』,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국민권익위원회 (2018),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권수진 (2016),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종범·김준기 (1996), “부패·무역 연계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법무부 국제법무과, 1996. 12.
- 반부패국민연대 (2001), 『반부패지도 1』, 사람생각.
- 오택림 (2013), “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FCPA, UK Bribery Act 등 외국 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조』 제62권 제10호, 법조협회, 2013. 10.
- 유엔(UN) (2003), 『반부패 협약(한글판)』.
- 유일준 (1999), “부정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과 그 동향”, 『해외연수검사연구 논문집, 제15집』.
- 육태우 (2013), “미국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제도적 진화과정 및 최근의 판례법상의 적용-”, 『강원법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6.
- 윤충원 (2011),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무역학회지』 제36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1. 4.
- 윤동호 (2002),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이기현 (1995), “동종의 범죄를 가액에 따라 차등 처벌하는 특별형법규정”, 『형사판례연구』 제3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5. 7.
- 이문조·박광국·김지수·배병일 (1996), 『부패의 현상과 진단』, 집문당.
- 이재상 (2004), 『형법각론』, 박영사.
- 이천현 (2015),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6.
- 이천현·홍승희·황지태 (2005),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부패방지위

원회의뢰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형국 (1997), 『형법각론연구 I』, 법문사.

임용 (2003), 『형법각론』, 법문사.

장준오 (2001), 『부패: 1980~90년대 정경유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장호익 (19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령②”, 『순간법제』, 통권 제81호, 한국법제연구원.

정성근 (1996), 『형법각론』, 법지사.

정성근·박광민 (2002), 『형법각론』, 삼영사.

정영석 (1985), 『형법각론』, 법문사.

진계호 (1985), 『형법각론』, 대왕사.

심준섭·김광구·정홍상(2017),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 방안 연구』,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황성돈·황승흠 (2001),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 국무조정실.

황지태·김지영·박희정 (201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대검찰청.

황지태·강태경·이정주 (2017),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연구』,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윤해성·김철·김혁·장진희·이선중·권우덕 (2017),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내정보 신문기사·인터넷 자료]

구글 “Klokkenluiders” 검색, (<https://translate.google.co.kr/?hl=ko&tab=wT#nl/ko/Klokkenluiders>), 최종검색 2018. 11. 26.

국민권익위원회, 영국뇌물법(2010),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1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7648&currPageNo=2&confId=1006&conConfId=1006&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

- DESC%2C+BOARD_NUM+DESC), 최종검색 2018. 9. 28.
- 국민권익위원회, 유엔반부패협약(2008년),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110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255>), 최종검색 2018. 9. 28.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W8U0R9W0Y4G1M4X5E6F5D0E9I1R2), 최종검색 2018. 12. 5.
- 네이버 두산백과 “Council of Europe”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319&cid=40942&categoryId=59585>), 최종검색 2018. 10. 25.
- 네이버 영어사전 “Dual Criminality” 검색, (<https://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ae51e1773ad64920966487c9ccaa08b6>), 최종검색 2018. 10. 16.
- 데일리투데이, 2018년 4월 27일자, “[글로벌리포트] 스와질란드가 에스와티니(Eswatini)가 되려는 진짜 이유”,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7229>), 최종검색 2018. 9. 11.
- 연합뉴스, 2018년 10월 14일자, “전 축구국가대표 장학영, 승부조작 제안했다가 긴급체포”,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4051200007?input=1195m>), 최종검색 2018. 12. 05.
- 연합뉴스, 2018년 10월 17일자, “승부조작 제안 뿌리친 프로축구 이한샘, 포상금 7천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7080800007?input=1179m>), 최종검색 2018. 12. 05.
- 연합뉴스, 2018년 11월 14일자, “돈다발 보여주며 후배에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징역 10월”,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3148600051?input=1179m>), 최종검색 2018. 12. 05.
-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ICCS, Version 1.0),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ICCS/ICCS_English_2016_web.pdf), 최종검색 2018. 11. 26.

[외국문헌·인터넷 자료]

Antonio Argandoña, Private-to-Private Corruption, Working Paper(2003. 11), IEDE Business School.

Bernasconi Paolo, Die Bestechung von ausländischen Beamten nach schweizerischem Straf- und Rechtshilferecht zwischen EG-Rcht und neuen Antikorruptions-Staatsverträgen, SchwZStrR 109, 383-416 (1992).

Bernasconi Paolo, Korruption: Neue Normen, neue Verantwortlichkeiten im schweizerischen Industrie-, Handels-, Banken- und Revisionsbereich, Schweiz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 118 (1999).

Blessing, Schmiergeldzahlungen, in Müller-Gugenberger/Bieneck(Hrsg.), Wirtschaftsstrafrecht, 3. Aufl. (2000).

Council of Europe,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signatures?p_auth=0W42mmXF 2018. 9. 11. 최종검색)

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7f3f5> 2018. 10. 25. 최종검색)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41: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41> 2018. 12. 4. 최종검색)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73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73> 2018. 9. 11. 최종검색)

Council of Europe, Details of Treaty No.191 Additional Protocol to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91> 2018. 9. 28. 최종검색)

-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to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European Treaty Series - No. 173, Strasbourg, 27.I.1999.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cce44> 2018. 12. 5. 최종검색)
-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Belarus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BEA?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Canad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CAN?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Holly Se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HOL?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Japan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JAP?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Mexico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MEX?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Council of Europe, Treaty list for a specific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country/USA?p_auth=ac32TKLy 2018. 9. 11. 최종검색)
-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http://www.oecd.org/daf/anti-bribery/data-on-enforcement-of-the-anti-bribery-convention.htm> 2018. 9. 20. 최종검색)
- Dölling, Die Neuregelung der Strafvorschriften gegen Korruption, ZStW 112, S. 334ff (2000).
- Dölling, Empfehlen sich Änderungen des Straf- und Strafprozessrechts, um der Gefahr von Korruption in Staat, Wirtschaft und Gesellschaft wirksam zu begegnen?, (DJT-Gutachten) (1996).

- Hurd Baruch,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arvard Business Review, Jan. 1979. (<https://hbr.org/1979/01/the-foreign-corrupt-practices-act> 2018. 12. 4. 최종검색)
- legislation.gov.uk, Bribery Act 201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23/notes/division/2> 2018. 10. 25. 최종검색)
- OECD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www.oecd.org/latin-america/countries/peru/> 2018. 9. 19. 최종검색)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y_ENG.pdf 2018. 9. 20. 최종검색)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atification Status as of May 201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WGBRatificationStatus.pdf> 2018. 9. 19. 최종검색)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IGNATORY COUNTRIES (<http://www.oecd.org/corruption/oecdantibriberyconvention.htm> 2018. 9. 19. 최종검색)
- OECD Members and partners (<http://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 2018. 9. 19. 최종검색)
-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6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Special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 11.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Enforcement-Data-2016.pdf> 2018. 10. 22. 최종검색)
- The Criminal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Enforcement Division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CPA: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12. 11.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5/01/16/guide.pdf> 2018. 10. 12. 최종검색)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

- egacy/2012/11/14/fcpa-english.pdf 2018. 12. 3. 최종검색)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 78dd-1, et seq.)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statutes-regulations> 2018. 10. 12. 최종검색)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Statute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 78dd-1, et seq.), Korean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iminal-fraud/legacy/2012/11/14/fcpa-korean.pdf> 2018. 10. 12. 최종검색)
-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foreign-corrupt-practices-act> 2018. 10. 25. 최종검색)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VIII-14&chapter=18&lang=en 2018. 9. 11. 최종검색)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https://www.unodc.org/unodc/en/corruption/uncac.html> 2018. 9. 11. 최종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vention System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Hwang, Ji-tae · Lee, Cheon-hyeon · Lim, Jung-ho

1. Overview

- 1)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s now surpassing corruption of officialdom in its scale and influence. Henc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at this time.
- 2) This study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and the measurement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Also, it discusses about the trends of international society chang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Moreover, it focuses on the Korean criminal penalties for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2. Issues of Statistics Related to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its Solution

- 1) The long-term solution is to systematically reform laws related to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integrate them into a single legal system. However, it will be not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 2) Instead, it is needed to establish a proper system and depart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statistics regarding offences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e Special Criminal Acts and the Korean Administrative Acts related to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 3) In the short term, maintenance of the most critical statistics related to 'Article

357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of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should be carried out.

3. Im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Legislation on Foreign Public Officials

- 1) Because foreign officials are not public officials in their own countries,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stitutes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legislations have implications for the amendment of anti-bribery laws for foreign public officials in Korea.
- 2) There are grounds for criminalization bribery against third parties in connection with foreign public officials in OECD Convention, European Council Convention, UN Convention and UK Bribery Act of 2010.
- 3)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passed amendment(Article 3, Section 2) to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ence, there is a ground for criminalization bribery against third parties in connection with foreign public officials.

4. Modification of Criminal Penalties for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 1)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best practical measure for penalties for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prescribed in administrative laws is a unified arrangement of the most basic elements of penalties; acts, objects, sentencing of both imprisonment and fine,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and joint penal provisions. It is considered to be a feasible work.
- 2) Moreover, modification of statutory penalty should be carried out to ensure consistency and uniformity amo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similar laws such as medical, election, judicial,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athletic, finance, and traffic. And, it should be supplemented with legislations which has defects.
- 3) In addition, the measures for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are as follows: In order to protect whistleblowers, it is important to improv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fidentiality guarantee for whistleblowers,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disadvantages, establishing sufficient compensation and support plan, and structuring practical integrated reporting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negative social perceptions of whistleblowers.

연구총서 18-BB-01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발행 | 2018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한인섭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I S B N | 979-11-89908-12-6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